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연구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건축공간연구원

원 장 박 소 현

과제발주기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과제수행기관 건축공간연구원

! 연구책임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엄운진 부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최가윤 연구원
 김수빈 연구원

! 연구자문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김제형 이가건축 부사장
 김지영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변나향 충북대학교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유나경 PMA 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유웅상 사회적 협동조합 등지 소장
 윤경아 YMCA 서울아가야 대표
 윤여갑 지역도시건축연구소 리플래폼 소장
 이양재 엘리펀츠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이철재 호서대학교 교수
 임현성 공간연구소 올림 소장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대표
 정기정 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소장
 정유석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한영숙 사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대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1.1 과업의 배경	3
1.2 과업의 목적	4
2. 과업의 주요내용	5
3.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6
3.1 과업의 수행 방법	6
3.2 과업 추진체계	7
4.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요	8

제2장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분석

1.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분석	13
1.1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추진체계	13
1.2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검토	19
2. 2021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23
2.1 사업 추진체계	23
2.2 사업 추진일정	25
2.3 사업 평가기준	27

제3장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체계	33
1.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방식 검토	33
1.2 사업현황 카드 작성	35

2. 20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	37
2.1 제1차 모니터링 결과	37
2.2 제2차 모니터링 결과	39
2.3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 결과 분석	41
2.4 현황 파악 및 분석결과 종합	44
3. 2020년도 복합화사업 컨설팅	46
3.1 컨설팅 개요	46
3.2 1차 컨설팅 결과	49
3.3 2차 컨설팅 결과	53

제4장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평가 및 선정 지원

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지원	57
1.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체계	57
1.2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현황 및 특성	60
1.3 분석 종합	66
2. 20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지원	68
2.1 종합검토 개요	68
2.2 부처별 검토결과	71
2.3 균형위 검토결과	73
2.4 종합검토회의	75
2.5 쟁점사업별 보완사항	77
2.6 검토결과 종합	78
3.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및 시사점	81
3.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81
3.2 2021년도 선정 복합화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85
4. 21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87
4.1 2020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방식	87
4.2 2021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방식 검토	91

제5장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1.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97
1.1 조사의 개요	97
1.2 지자체 복합화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99
1.3 전문가 서면자문	105
1.4 주민참여 및 운영계획 관련 전문가 추가 심층 자문	110

2. 2022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112
2.1 사업 추진체계	112
2.2 사업 신청 및 평가체계	113
2.3 중점정책 반영	117
2.4 선정 후 사후관리체계	118
2.5 사업신청서 및 자체검토서 개정방안	119
2.6 중장기 추진방안	121

제6장 연구결과 및 향후과제

1. 주요 연구 결과	125
1.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125
1.2 2021년도 복합화사업 평가 및 선정 지원	127
1.3 2022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제시	130
2. 향후 과제	133

참고문헌

부 록

1. 2020년도 선정 사업의 사전검토 의견서 경향 분석	141
2.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서식	149
3.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165
4. 2021년도 선정 생활SOC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서 표준(안)	183
5.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서식 수정(안)	189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생활SOC 복합화 대상 13종 현황	9
[표 2-1]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13
[표 2-2]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인센티브 내용	15
[표 2-3]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사·도별)	20
[표 2-4]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20
[표 2-5]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20
[표 2-6] 복합화사업 세부 평가기준(안)	28
[표 3-1] 사업추진단계 확인을 위한 사업현황 카드 구성(예시)	34
[표 3-2] '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내용	34
[표 3-3] 사업현황 카드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 내용	35
[표 3-4] 사업현황 관리카드 서식(안)	36
[표 3-5] 사전검토 진행현황	41
[표 3-6] 사전검토 세부의견 항목별 비중	41
[표 3-7] '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 현황	44
[표 3-8] 컨설팅 대상사업 및 주요 자문요청사항	47
[표 3-9] 컨설팅 주요조사 서식(안)	48
[표 4-1] '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방법	57
[표 4-2] 각 지역 및 권역별 비교('20년도, '21년도)	60
[표 4-3] 지역별 선호시설 순위	61
[표 4-4] 시설별 복합화 유형	62
[표 4-5] 자체 검토 결과 분석 종합 표	67
[표 4-6] 부처별 검토 양식	71
[표 4-7] '21년도 사업 균형위 검토지표 세부내용	73
[표 4-8] 균형위 검토 양식(예시)	74
[표 4-9] 종합검토회의 심층검토 유형	76
[표 4-10] 지자체별 보완사항 요청 총괄(표) 양식 예시	77
[표 4-11] 국조실 검토결과 종합(단위: 건)	79
[표 4-12] 사·도별 선정 현황('20년, '21년 비교)	82
[표 4-13] 지역별 선정 현황 그래프	82
[표 4-14] 사업예산 현황 ('20.09 기준, 단위: 억 원)	83
[표 4-15] 시설별 구성 현황 (단위: 건)	84
[표 5-1] 대상별 주요 조사내용	98
[표 5-2] 사업추진과정 상 지연된 항목별 애로사항 응답 분포	103
[표 5-3] 자체검토 체크리스트(안)	113
[표 5-4] '21년도 사업 보완권장사항 (예시)	114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생활SOC의 개념	3
[그림 1-2] 생활SOC 복합화의 개념	4
[그림 1-3] 과업 추진체계	7
[그림 1-4]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념	9
[그림 2-1]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16
[그림 2-2]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절차도	17
[그림 2-3] 균형위 사전검토 흐름도	18
[그림 2-4] 사업 추진 지자체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	24
[그림 2-5]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절차도	26
[그림 3-1] '20년도 복합화사업 사업추진 현황(6월 기준)	37
[그림 3-2] '20년도 복합화사업 부지확보 현황(6월 기준)	37
[그림 3-3] '20년도 복합화사업 사업추진 현황(11월 기준)	39
[그림 3-4] '20년도 복합화사업 부지확보 현황(11월 기준)	39
[그림 3-5] 사업기간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43
[그림 3-6] 사업비용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43
[그림 3-7] 1차 컨설팅(9.8.) 현장 사진	46
[그림 3-8] 2차 컨설팅(12.11.) 현장 사진	46
[그림 4-1] '21년 생활SOC 복합화 신청사업 검토 절차 및 방식	59
[그림 4-2] 접수현황 비교('20년도, '21년도)	60
[그림 4-3] 사업별 접수 현황 비교 ('20년도, '21년도)	61
[그림 4-4]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63
[그림 4-5]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63
[그림 4-6] 부지확보 여부	64
[그림 4-7]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64
[그림 4-8]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64
[그림 4-9] 읍·면 지역 접근성 검토 예시	65
[그림 4-10] 종합검토 절차	68
[그림 4-11] 종합검토 총괄(표) 양식 예시	69
[그림 4-12] 종합검토 기준 및 흐름도	70
[그림 4-13] 종합검토회의의 현장 사진	75
[그림 4-14] 시설별 선정 현황('20년도, '21년도 비교)	84
[그림 4-15] 지역개발투자협약 개념	87
[그림 5-1]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보완사항에 대한 응답 분포	100
[그림 5-2] 자체검토서 작성항목 평가 응답 분포	101
[그림 5-3] 시설별 사업신청서 작성항목 평가 응답 분포	101

[그림 5-4] 관련 제도 및 정책방향 응답 분포	102
[그림 5-5] 사업추진단계 응답 분포	102
[그림 5-6] 지연 항목 응답 분포	102
[그림 5-7]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응답 분포	104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주요 내용
3. 과업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4.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과업의 배경

■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확충 정책 추진

- 정부는 그동안의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생활SOC 확충”정책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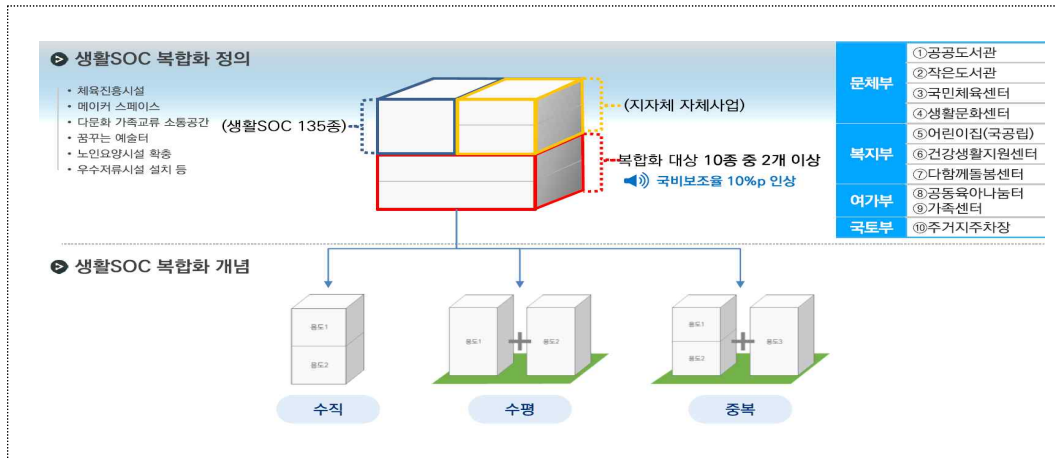
[그림 1-1] 생활SOC의 개념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1.

-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의 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년(’20년~’22년)간 약 30조 원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
 - 3대 투자 분야 :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3년간 국비 약 14.5조 원 투자),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3년간 국비 약 2.9조 원 투자),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3년간 국비 약 12.6조 원 투자)

■ 사업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 최근 지자체들은 부지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위해 1개 건물이나 토지에 여러 생활SOC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를 선호하지만, 과거 생활SOC 공급방식은 부처별 칸막이식 체계로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
- 이에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19.04)을 통해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을 발표
- ’20년도 복합화 추진을 위하여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19.06)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국조실, 균형위·부처가 협업을 통해 ’20년도 복합화사업 289건 선정(19.10.)



[그림 1-2] 생활SOC 복합화의 개념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자 보도자료. p.2.

■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년도에 이어 '21년도에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차 년도인 '20년도의 대상시설 및 사업 추진현황, 선정절차, 사업 추진체계, 선정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아울러, 보다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사업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역할 수행 필요

1.2 과업의 목적

-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을 위하여 전년도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시설 확대, 선정절차 개선, 사업 추진체계 정비 등 보다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기 선정된 지자체 복합화 사업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수행

2. 과업의 주요내용 (과업 착수보고 결과 기준)

■ '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정리 및 분석
- '20년도 복합화사업 업무의 미비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및 실무 지원

- 복합화 대상 시설별 작성서식, 선정절차·기준 등 실무 개선방안 마련
- 복합화사업 부처·균형위 검토사항 종합정리
- 복합화시설 종합 관점에서 추진단 평가기준(정량·정성) 마련

■ '21년도 복합화사업 평가 및 선정 지원

- 권역별 설명회 및 사업 신청서 접수 지원
- 사업신청서 서식 등 부합 여부 검토 및 정리
-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정량·정성평가 실무검토
- 기타 복합화사업 선정 등을 위한 업무지원

■ 지자체 복합화사업 추진지원 및 개선방안 제시

- '20년도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 '21년도 사업선정 과정 평가 및 시사점 도출
-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운영방안 마련 및 협약 체결 실무 지원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개선방안 제시

3.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3.1 과업의 수행 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생활SOC 3개년 계획” 등 생활SOC 관련 정부자료 수집·분석
- 생활SOC 관련 논문, 보고서 등 학술 자료 수집·분석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정부 공모사업 사례 분석

- 부처 공모사업 지침 등 생활SOC 시설별 자료 수집·분석
- 주요 공모사업의 지침, 가이드라인, 평가기준 등 자료 수집·분석

■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부처, 지자체, 학·협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
- 도출된 개선방안 등의 보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지자체 생활SOC 복합화 사업 담당자 대상 FGI 실시

■ 생활SOC추진단의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지원

-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 권역별 설명회 및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지원
-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원 등

■ 기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수행 지자체 모니터링

- '19년도,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상의 애로점 개선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3.2 과업 추진체계

■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 과업 총괄시행

-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가이드라인 확정 및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선정위원회 운영 등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총괄시행

■ 용역수행 주체 : 과업 총괄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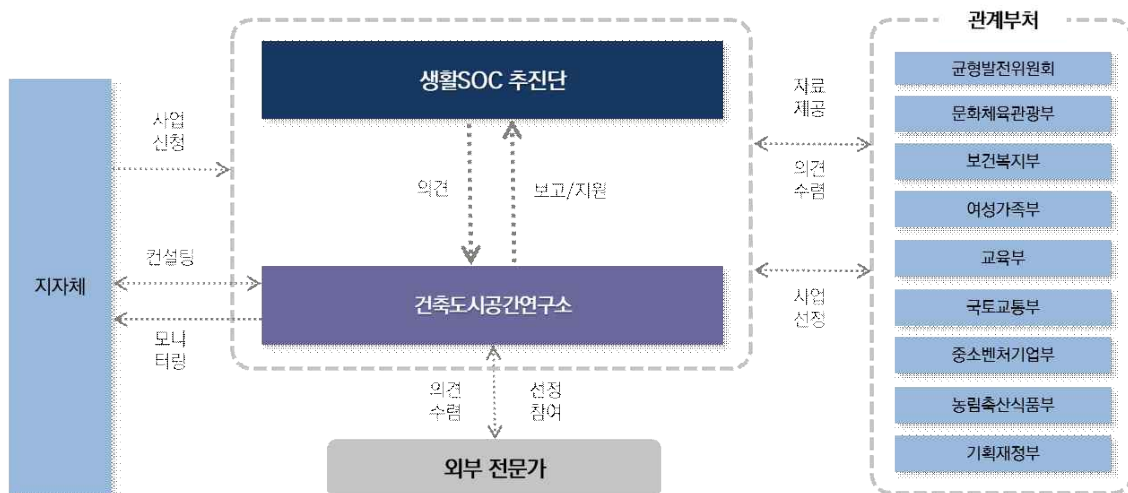
- 생활SOC 및 사업공모와 관련한 제반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 참여를 통해 과업수행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
-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설명회 개최, 선정업무,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 수행 및 지원

■ 관계 부처 : 생활SOC 사업별 지침 확정 및 사업 선정

-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해당하는 관계 부처 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계획서 작성, 부처별 사업 선정 및 의견 제시 등

■ 외부전문가 : 사업 자문 및 종합검토위원회 참여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최종 검토를 위한 종합검토위원회 참여



[그림 1-3] 과업 추진체계

4.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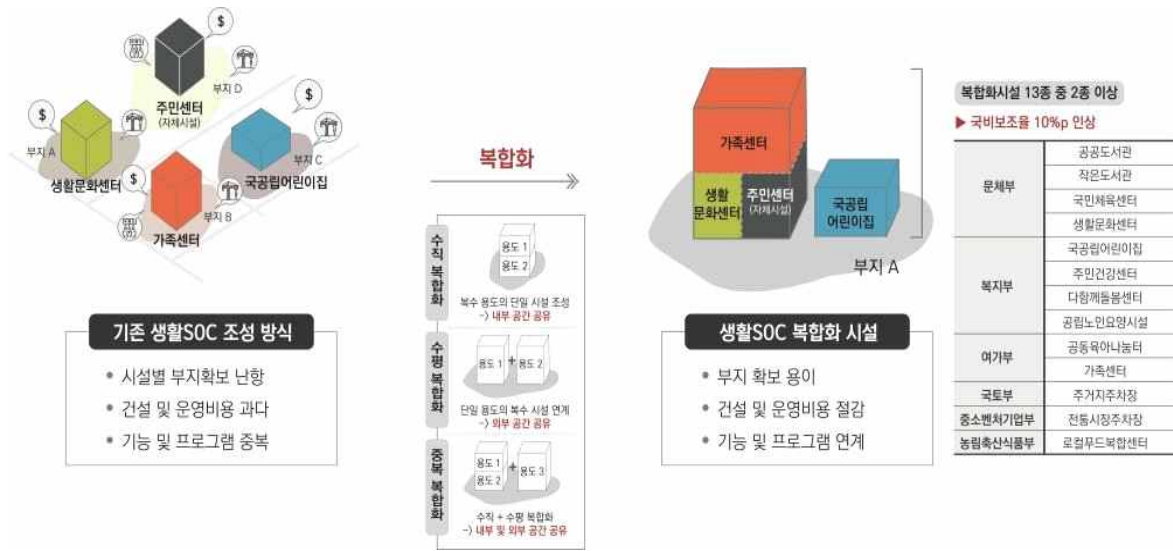
■ 복합화사업 추진 배경

- 정부는 '19년에 생활SOC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 수립('19.4.15.)
- 특히, 추진방식을 혁신하고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하여 비용절감, 이용편의 제고 등을 도모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핵심과제로 추진
- '19년에는 국조실-균형위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 및 「'20년도 생활SOC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0년도 복합화사업으로 289개 사업을 선정(3년간 국비 8,504억 원)
- '19년에 이어 '21년까지 3년간 생활SOC 3개년계획에 따라 복합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

■ 복합화사업의 개념

-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 (복합화 대상) 복합화 13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13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사업 간 복합화
 - (문체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 (중기부) 전통시장주차장
 - (농식품부)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 노인·청소년 시설, 작은 영화관 등 지방비 자체 추진사업, 타 국고보조사업과도 복합화 가능(타 국고보조사업은 해당사업 보조율 적용)

1)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p.5-15.



[그림 1-4]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념

출처 : 국조실 생활SOC추진단(2020), "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1년 사업) 149건 확정", 9월 17일자 보도자료. p.4.

■ 복합화 대상 시설

- ’20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지자체가 다양한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복합화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으로 설정
- ’21년도는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기존 10종 시설 이외에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3종을 추가

[표 1-1] 생활SOC 복합화 대상 13종 현황

부처	시설명	회계	사업추진 방식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일반회계	공모 선정	
	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건강기금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공립노인요양시설	일반회계	공모 선정	'21년 신규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공모 선정	
	가족센터	균특회계(지역지원)	부처 직접편성	
국토교통부	주거주차장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주차장	소진기금	공모 선정	'21년 신규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복합센터	농안기금	공모 선정	'21년 신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7.

■ 복합화 인센티브

- (인센티브 대상) 복합화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 공동육아나눔터,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는 함께 복합화되는 他 대상시설에 대하여만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
 - 기존 복합화 13종 단일시설과 '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복합화 13종 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한해 인센티브 부여
 - 기 선정된 '20년도 복합화사업(289건)에 복합화시설(13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대상이 아님
- (인센티브 내용)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액 추가 지원
 - 당초 사업 착수시점과 관계없이 '22년도 예산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생활SOC 3개년계획 기간('20~'22년) 중 착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연장

제2장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분석

1.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분석
2. 2021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도출

1.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분석

1.1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추진체계²⁾

■ 복합화 사업 대상

- 국고보조사업 중 10개 사업
 - (문체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 복합화 사업 유형

-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 주민수요에 비해 특정 분야의 생활SOC가 특히 부족한 경우, 그 분야를 ‘주기능’으로 삼아 지자체가 직접 선정

[표 2-1]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사업유형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주 기능 시설
돌봄플랫폼	고령화 및 돌봄 수요 대응	· 지역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주민건강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플랫폼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스포츠·여가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스포츠·여가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문화플랫폼	문화 중심 지역자치 기반 구축	· 지역의 문화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지원	공공도서관
복합플랫폼	소통·협력 기반의 사회혁신 활성화	· 일(work), 삶(live), 놀이(play)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창의 공간 조성	①+②+③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6.

2) 관계부처 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복합화 인센티브

-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복합화 10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 부여
- 기존 복합화 10종 시설과 '20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복합화 10종 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 신규 사업에 한해 인센티브 부여
- 기존 시설(동주민센터 등) 폐쇄 후 해당 건물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을 통한 복합화 10종 중 2종 이상의 복합화 시에도 인센티브 부여
-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국고보조율 대비 10%p 인상

[표 2-2]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인센티브 내용

부처명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율(정액 또는 정률)	
				현행	조정
문체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①일반 40% ②농어촌 80% (최대 16억 원 한도)	①일반 50% ②농어촌 90% (최대 18억 원 한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①일반 70% (최대 98백만 원 한도)	①일반 80% (최대 112백만 원 한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40%	50%
	체육기금	국민체육 센터건립 지원	생활권형	30억 원	40억 원
			장애인형	①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 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40억 원	①체육관종목특화형 40억 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50억 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①산단복합형 : 50% (최대 50억 원 한도)	①산단복합형 : 50% (최대 50억 원 한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0억 원	12억 원
	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0% (최대 461백만 원 한도)
일반회계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센터구축	[리모델링비] ①서울 30%, (15백만 원) ②지방 50% (25백만 원) [기자재비] 100% (20백만 원)	[리모델링비] ①서울 40%, (20백만 원) ②지방 60% (30백만 원) [기자재비] 100% (20백만 원)
건강기금		건강생활 지원센터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66.7% (최대 10억 원 한도)	75% (최대 11.5억 원 한도)
농특회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여가부	양평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건축비 없음(단, 복합화로는 인정)	
국토부	균특회계 (지역자율)	주차환경개선	주거지주차장	50%	60%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12.

■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체계

- (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전반 총괄(사업접수 및 선정),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 운영 및 선정, 지역 차원의 건의사항 등 수립
 - 사업컨설팅단(총괄·지역별)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 (국조실) 복합화 수요조사, 부처 간 의견 조율, 생활SOC관련 제도개선(예산·정산, 지방투융자 심사, 학교시설 부지 활용) 총괄
- (부처) 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지자체 사업기획 컨설팅(요청 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조정, 예산 배정 등
- (지자체) 복합화 계획 수립, 관계부처들과 사업계획서 협의, 사업시행 및 정산 등
 - (광역) 시·도내 시군구별 사업계획 접수, 우선순위 선정
 - (기초)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및 정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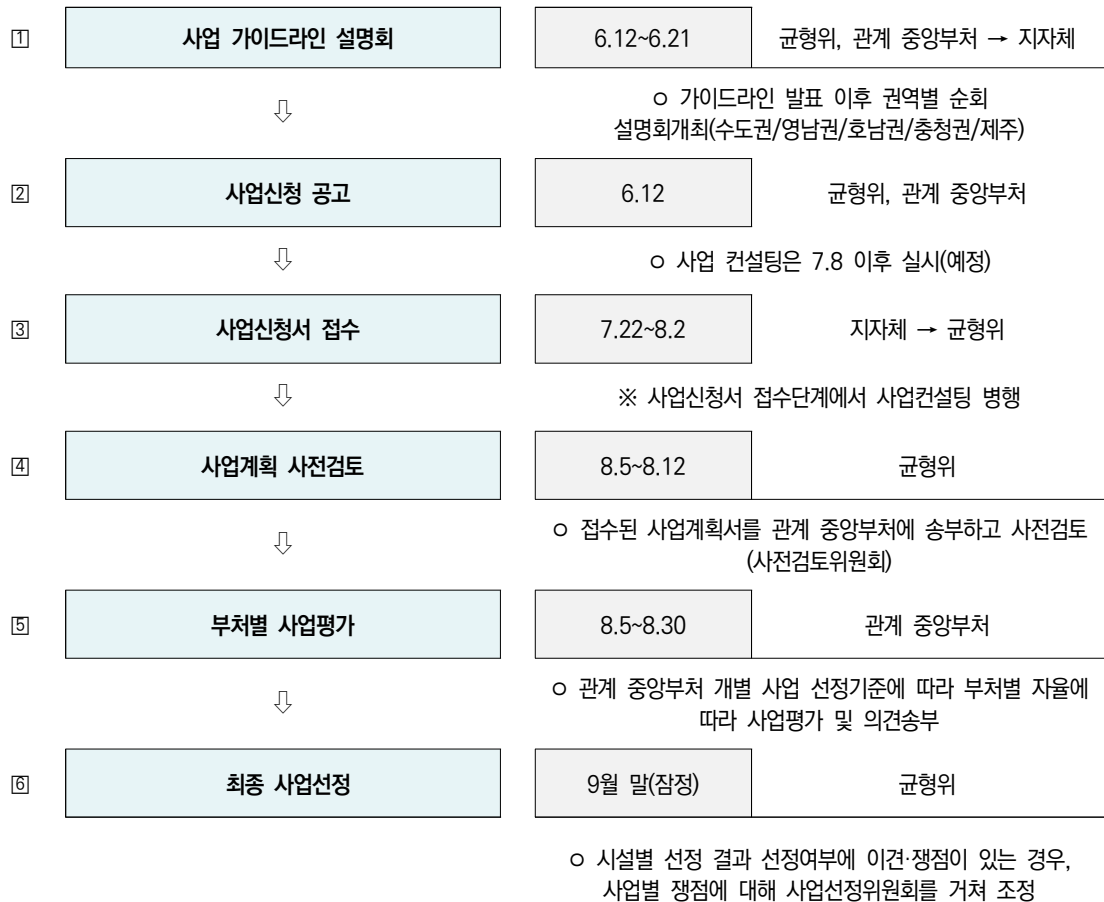


[그림 2-1]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13.

■ 복합화 사업 선정 절차

- (균형위) 복합화 가이드라인 통보(6월 초) 및 권역별 설명회(6월 중순)
-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6~8월)
- (균형위·각 부처) 사업별 사전검토 및 사업평가·선정(~9월 말)
- (각 부처) 정부 예산안 확정(8월 말) 및 확정 물량 통보(~9월 말)
-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안) 수정·보완 및 지방투자심사 의뢰 (가내시(임시통보) 이후)
- (행안부, 광역 지자체) 지방투자심사(중앙, 시·도 등) 진행(9~10월)
- (국회, 지자체) '20년 정부예산 확정(12.2.) 및 사업 시행('20.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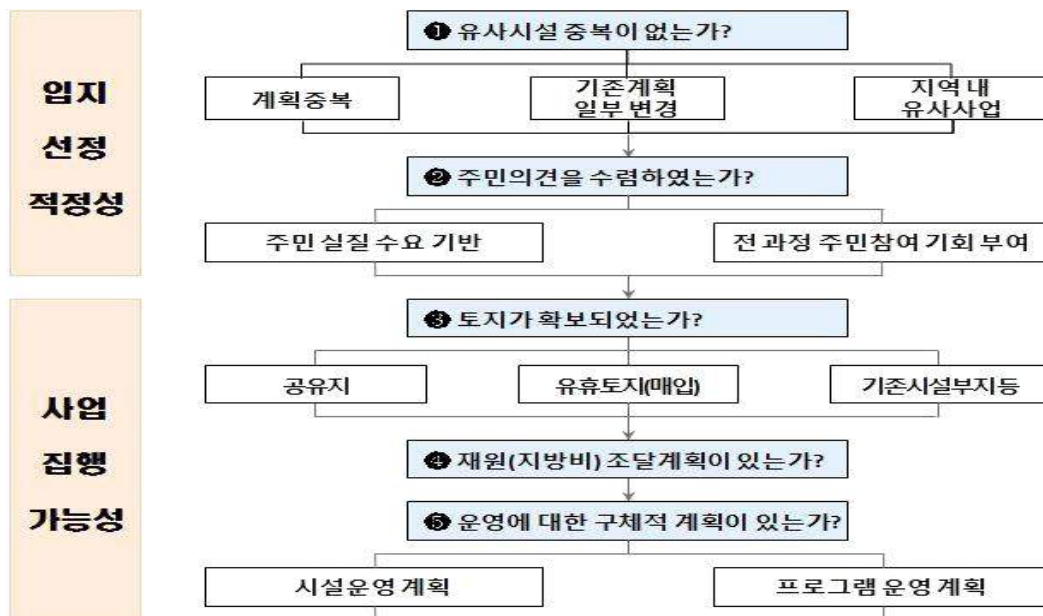


[그림 2-2]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절차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26.

■ 복합화 사업 사전검토 기준 (균형위)

- 입지선정 적정성
 - (유사시설 중복)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지 검토
 - (주민 의견수렴)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인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 확인
 - (취약지역 배려)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역, 성장촉진지역 등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마중물 역할이 긴요한 지역 등 현장여건 고려
- 사업집행 가능성
 - (부지확보) 공유지, 유휴 토지, 기존 시설부지 등 부지확보 적절성 검토
 -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재원(지방비) 조달계획이 있는지 검토
 - (운영·관리계획)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후,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공동이용 장려)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인접한 他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그림 2-3] 균형위 사전검토 흐름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28.

1.2 20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검토

■ 복합화 사업 신청 현황³⁾

- 177개 지자체에서 311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규모는 9,740억 원임
- 시설별로는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으며, 신청예산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시설이 많음
- 국비 신청현황은 경기도 1,904억 원, 서울 1,144억 원, 경북 976억 원, 강원이 718억 원 순임
- 유형별로는 복합플랫폼이 3,588억 원, 문화플랫폼이 2,930억 원, 체육플랫폼이 2,435억 원, 돌봄플랫폼이 786억 원 순임

■ 균형위 사전검토 결과⁴⁾

- 입지, 시설 및 공간과 서비스 연계활용 관련
 - 대다수 사업이 대상 입지 주변의 유사중복 시설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복 투자 가능성 해소
- 운영프로그램 관련
 - 시설 조성 후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운영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별로는 다소 편차가 존재함
 - 주민 계층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적으로 세분된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
- 균형발전 관련
 - 국가균형발전 관점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동일 지자체 내에서의 균형발전 시각도 적절히 반영
- 예산 관련
 - 예산 편성은 복합화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대체로 적절하게 잘 작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 배분의 조정 필요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 내부자료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안)”, 내부자료

■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⁵⁾

-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의 289개 사업 선정
- (지역별 선정 현황)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도에서는 경기와 경북에서 많은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세종(2건)이 가장 적고, 도에서는 제주(3건)가 가장 적은 사업이 선정

[표 2-3]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건(14) 571억 원	15건(10) 403억 원	5건(5) 189억 원	14건(9) 302억 원	16건(6) 494억 원	11건(5) 357억 원	7건(6) 223억 원	2건(1) 43억 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건(23) 1756억 원	24건(15) 651억 원	8건(8) 236억 원	22건(12) 671억 원	19건(12) 475억 원	18건(15) 465억 원	30건(18) 945억 원	23건(12) 600억 원	3건(1) 123억 원

출처: 균형위(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자 보도자료, p.3.

- (시설별 선정 현황) 생활문화센터가,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표 2-4]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시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시설수(%)	146개(16.2%)	99개(11.0%)	95개(10.6%)	87개(9.7%)	75개(8.3%)
시설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시설수(%)	73개(8.0%)	61개(6.8%)	29개(3.2%)	28개(3.1%)	12개(1.3%)

출처: 균형위(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자 보도자료, p.4.

- (국비 지원 규모 현황) 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

[표 2-5]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시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비	2,670억 원	2,031억 원	1,359억 원	1,150억 원	894억 원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국비	137억 원	122억 원	94억 원	47억 원	- (운영비)

출처: 균형위(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자 보도자료, p.4.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자 보도자료

■ 복합화사업 선정 과정 및 결과의 한계

◦ 선정 절차의 효율성 측면

- (촉박한 사업추진 일정) 신청 절차가 6월부터 진행됨에 따라 9월 말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까지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여, 균형위 사전검토 결과나 부처별 검토결과 등을 지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
- (시·도별 우선 순위 선정의 실효성 미흡) 시·도내에서 복합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신청·접수하도록 하는 방식이 지역 균형 배분 위주로 진행되었을 경우 지자체별로 필요한 실제 수요와 달라질 수 있고, 우선 순위 결정 과정이 시·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균형위 사전검토 결과 반영 미흡) 차적으로 균형위가 입지 선정의 적정성과 사업진행 가능성 측면에서 사전검토를 진행한 후 부처별로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균형위의 검토 결과를 부처별 검토 및 최종적인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 다소 미흡

◦ 선정 기준의 명확성 측면

- 선정 기준의 항목은 ‘입지선정 적정성(유사시설 중복, 주민 의견수렴, 취약지역 배려)’, ‘사업 집행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 운영·관리계획, 공동이용 장려)’로 균형위에서 사전검토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기획과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미흡) 다만, 사업기획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운영·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신청서 내용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큼
- (기능 복합화 및 입지 측면 고려 미흡) 또한, 취약지역 배려, 공동이용 장려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항목은 강조되었으나, 복합화시설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을 위한 고려, 부지 접근성 및 인근 현황 등은 선정 기준에서 그다지 고려되지 못함

◦ 건축기획의 내실화 측면

- 복합화사업 선정 후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심위 등을 거치게 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 또한 건축기획의 단계로 보아야 하나 현재의 사업계획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획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의 건축기획의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의 내용〉

- 사업규모,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리방안
-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
- 공사시행계획
-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복합화사업의 취지 구현 측면

- 복합화 사업 신청 서식, 사전검토 항목 등에서 복합화 사업으로서 사전에 검토 및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하는 유도 장치 부족
-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하나의 건물이나 부지에 복합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러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해야 하므로, 복합화를 통한 장점, 기대효과 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단일시설에 비해 여러 운영 주체와 이용자층이 혼재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시설운영 측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고민하도록 유도할 필요

◦ 사업 선정 이후의 관리 및 지원 측면

-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선정 이후의 사업변경, 예산집행, 사업종료 및 정산과 관련한 유의사항과 복합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제시
- 사업 선정 이후 실제 본격적인 건축기획 과정이 진행되고 복합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긴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리수단은 미흡

2. 2021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2.1 사업 추진체계

■ 국조실 중심으로 추진체계 일원화⁶⁾

-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계획 접수·선정, 사후관리 등 이원화(국조실-균형위)된 추진체계를 국조실 중심으로 일원화
 - (국조실) 복합화 정책·사업 총괄 및 부처-지자체 조정
 - (균형위) 복합화 사업계획 검토의견 제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국조실 종합검토 기준 설정
 - 부처·균형위·교육부 검토결과를 포함, 복합화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여 예산협의 및 사업 선정(생활SOC협의회 의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자체검토 양식에 반영하여 사업 신청 전 지자체가 주요 사항을 사전에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

■ 복합화 대상 사업 및 인센티브 기간 확대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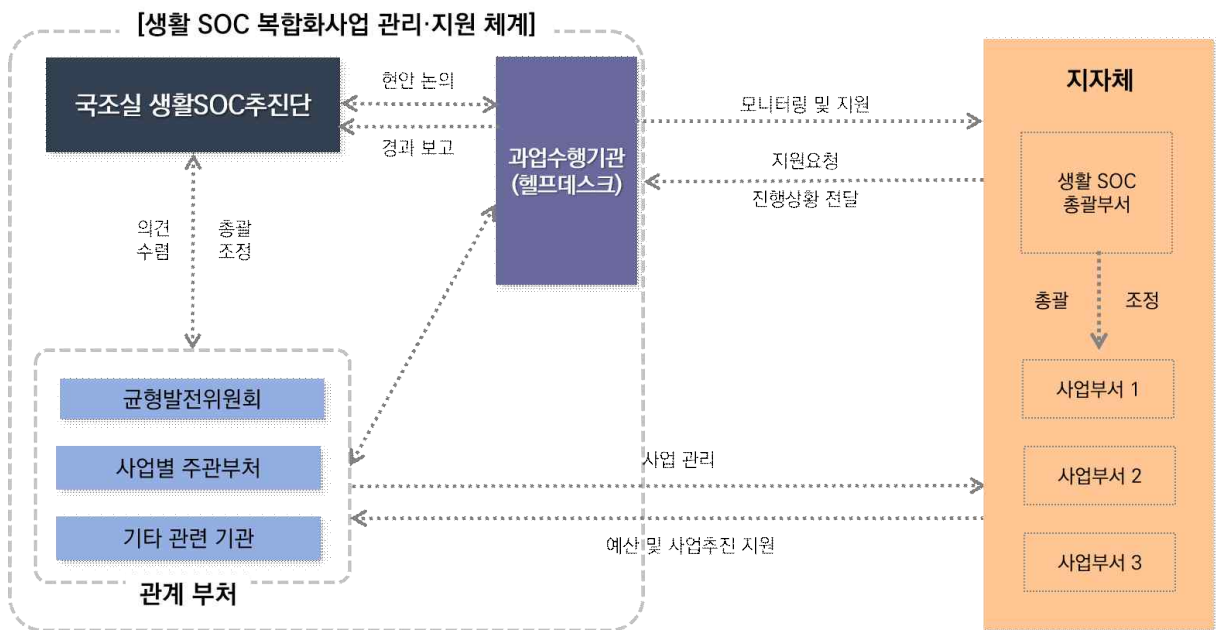
- 복합화 대상 사업을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여 공립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복합센터, 전통시장주차장이 추가
 - (문체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 (중기부) 전통시장주차장
 - (농식품부)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 당초 사업 착수시점과 관계없이 '22년도 예산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생활SOC 3개년계획 기간('20~'22년) 중 착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연장

6)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13.

7)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p.6-8.

■ 복합화사업 관리지원

- 생활SOC 복합화사업 업무협약 등을 기초로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소관 부처의 사업관리 어려움 해소 지원⁸⁾
- 20년도 선정 지자체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
 - 기 선정 사업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작성 결과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 파악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 경위 및 사업내용 분석
 - 헬프데스크(Help Desk)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관련 법령 등 해석,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지원, 전문가 지원 등 수행



[그림 2-4] 사업 추진 지자체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

8)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15.

2.2 사업 추진일정

■ 복합화 대상 선정 일정 조기 추진⁹⁾

- 사업준비기간을 보장하고 균특회계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선정절차를 2~3개월 조기 추진
- 3월~4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균형위, 각 부처, 국조실 등의 검토를 위한 기간을 확보

■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절차¹⁰⁾

- (3~4월)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통보 및 권역별 설명회 (국조실)
 - 17개 시도 가이드라인 공문 발송 및 생활SOC 홈페이지 업무소통방 통해 안내(3월~)
 -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국조실)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균형위)
- (4월 말)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지자체)
 - 시·군·구의 복합화 및 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국조실에 제출
 - 필요한 경우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에 한하여 보완제출 가능(~5.15.)
- (~9월 말) 사업별 사업검토·선정 (국조실·각 부처)
 - 국조실에서 복합화사업에 대해 서식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부처 및 균형위·교육부에 사업계획서 송부(5월 초)
 - 부처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부처 심사 및 균형위·교육부 검토의견 취합 및 정리(6월 초)
 - 복합화 사업계획 종합 검토(국조실, 6월 말)
 - 복합화사업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반영 협의(7~8월)
 - 생활SOC협의회 의결(최종 선정) 및 지자체·부처·균형위 통보(9월)
- (10월 초) 복합화 사업계획(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자체·행안부)
 - 지자체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1년도 복합화 사업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10월 초~)
- ('21.1월~) '21년도 예산 확정·사업 시행 (지자체)

9)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13.

10)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p.11-12.

	주요내용	일정	추진기관(협조기관)
①	가이드라인 초안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	~ 3.10.	▪ 국조실(부처)
②	가이드라인 확정	3.26.	▪ 국조실(부처)
			○ 제6차 생활SOC협의회 의결
③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지자체 컨설팅	~ 4.23.	▪ 국조실(균형위) → 지자체 ※ 일정방법 등은 추후 확정 후 안내 예정
④	사업계획서 제출	4.23.~4.29.	▪ 지자체 → 국조실 → 부처
			※ 필요 시 시설별 사업계획서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 보완제출 가능(5.15.까지)
⑤	대상시설별 소관부처 검토 ※ 균형위·교육부 검토	5.1.~5.30.	▪ 부처·균형위·교육부 → 국조실
⑥	국조실 종합검토	6.1.~6.30.	▪ 국조실(전문기관 활용)
			○ 부처·균형위·교육부 검토의견을 기초로 복합화사업 종합검토의견 작성
⑦	예산 협의	7.1.~8.15.	▪ 국조실·부처 → 기재부
⑧	사업 선정 및 지자체 통보	~9.15.	▪ 국조실 → 부처·지자체
			○ 제7차 생활SOC협의회 의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과보고 ※ 지자체는 지방투심 및 지자체 본예산 반영 준비
⑨	생활SOC 업무협약 체결	'21.1.	▪ 국조실 - 시·도 - 부처
			○ 제8차 생활SOC협의회 의결
⑩	복합화사업 관리	'21.1.~	▪ 국조실·부처

[그림 2-5]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절차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14.

2.3 사업 평가기준

■ 복합화시설 종합 관점에서 국조실 평가기준 검토

- '20년도 사전검토 기준과 복합화사업 업무 개선방안 도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 검토 시 고려사항 도출
 - 복합화 사업은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하나의 건물이나 부지에 함께 건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으므로, 복합화를 통한 장점, 기대효과 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단일 시설에 비해 여러 운영주체와 이용자층이 혼재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시설운영 측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고민하도록 유도할 필요
 - 복합화사업 선정 후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거치게 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 또한 건축기획의 단계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획 내용이 반영될 필요
- 국조실 평가기준(안) 검토
 - (주 기능시설 건립의 필요성) 시설의 핵심기능을 하는 주 기능 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있는지?
 - (복합화시설로서의 효과성) 개별 시설이 아닌 복합화 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검토가 되었는지?
 - (입지,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대지위치가 적정한지, 시설 규모가 도입 기능에 비해 적정한지, 시설규모에 따른 예산계획은 적정한지?
 - (사업 추진의 용이성) 부지확보, 주민 등 의견수렴, 자체 예산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잘 되었는지?
 - (사업 추진체계의 충실성) 사업관리, 협업체계, 운영주체, 전문가 활용 등 사업관리를 위한 체계가 갖추어졌거나 기대가 되는지?
 - (운영 계획의 충실성) 시설 조성 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충실한 운영프로그램이 검토되어 있는지?
 - (가점 사항) 전년도 선정 생활SOC 사업의 추진 정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관련 정책 추진 정도, 주변 관련 시설과의 연계 등

[표 2-6] 복합화사업 세부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중점사항
시설 건립의 필요성	기초생활서비스 소외지역	도입 시설의 기초생활서비스 소외지역 해당 여부
	유사시설 중복 여부	시설별 유사시설 중복 여부 및 차별성 확보 방안
입지,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시설 입지의 적정성	- 대지 행위제한 여부 - 접근성(대중교통, 보행, 진입도로) - 대지의 물리적 특성
	시설 규모의 적정성	- 건폐율, 용적률 대비 시설 규모 비율 - 전용 및 공용면적 배분의 적정성 - 주차장 규모 등
	사업 예산의 적정성	유사 사례 대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부지확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등, 부지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 정도 포함)
	주민의견 수렴	수요 파악 및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경과 등
	사업추진 일정	건축기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 추진일정
사업추진 체계의 충실성	지자체 내 사업관리 체계	전담부서 조직 및 지정, TFT 구성·운영, 부서간 협력방안 등
	전문가 활용	총괄조정,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 활용 등
운영계획의 충실성	시설운영계획	시설 조성 후 운영계획의 충실성 (부처별 검토의견 종합)
	운영주체의 전문성	시설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전문성 보완 대책 등
복합화의 효과성	복합화의 시너지 효과 기대	복합화로 인한 예산 절감, 시설 간 연계, 지역 활성화 등
	문제점 해소 방안	복합화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가점	전년도 사업의 추진 정도	전년도 선정사업의 추진 정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공공건축가 위촉, 지자체 내 건축 관련 관리체계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	주변 시설과의 연계, 타 지역과의 공동이용 등

■ 세부평가 기준 적용방안 검토

- 도출된 세부 평가기준(안)을 바탕으로 20년도 사업선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 신청서에 자체 검토서를 포함하여 선정 평가 시 검토
- 자체검토서는 자체검토 결과와 항목별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가 작성한 자체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등 진행

■ 세부평가 기준 확정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부지확보 현황

-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현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지확보 계획, 기존 시설 유무 및 철거계획 등을 확인
- (부지 특성)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를 구분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총당량을 기재하여 개발 가능 정도를 확인

- 재원 조달 가능성

-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를 구분하고, 지방비 재원조달 계획을 확인
- (타 국고조보사업 포함 여부) 타 국고조보사업 포함 여부를 구분하고, 타 국고조보사업 재원조달 계획을 확인

- 즉시 착공 가능성

- (행정절차 이행 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를 구분
- 사업 추진일정, 그 밖의 민원 등 장애 요인 및 대응계획을 확인

◦ 사업의 중복성

- 유사시설 중복

- (유사한 신규 사업계획 및 기존시설 유무) 유사사업계획과 유사시설의 중복 여부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사업계획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 차별화 및 연계 방안을 확인
-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사업 추진 등 특이사항 및 추진 필요 사유 등 확인

◦ 입지선정의 적정성

- 이용수요 및 접근성

- (이용수요) 이용 대상과 이에 따른 사업부지 선정 이유를 확인
- (접근성) 보행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정도를 확인

- 서비스 소외 지역

- 서비스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

◦ 주민참여·운영계획의 적정성

- 주민참여

-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 등에서의 주민참여 여부 및 의견반영 여부를 확인

- 운영 및 관리계획

- 시설관리 주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체, 위탁운영 여부 및 방식,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확인

◦ 추가 사항

- 복합화사업의 기대 효과

- 복합화사업 시행에 따른 내부적 효과와 주변 및 지역 파급 효과를 확인

- 우려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업 추진에 있어 우려되는 문제점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확인

제3장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체계
2. 20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
3. 2020년도 복합화사업 컨설팅

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체계

1.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방식 검토

■ 모니터링 목적

-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89개¹¹⁾ 사업의 진행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사업 발굴 및 사업 관리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추진 현황 분석 및 문제 사업에 대한 서면·집체·방문 자문 등 컨설팅 시행

■ 사업현황 카드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 검토

- 모니터링 방식 결정을 위한 건축공간연구원 - 생활SOC추진단 사업기획과 간 모니터링 방식 검토협의 진행 (20.05.14.~ 06.04.)
 - 사업현황 카드 서식 마련 및 현황 취합방식에 대한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
 - 추진과정 중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측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항목 마련
 - 당초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을 표기하고, 균형위 협약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항목 마련
- 개별 사업 관련 정보 구축 및 기초자료 작성 후 시·도별 사업관리카드 배포 및 취합
 - 기초자료는 균형위 자료, 보도자료, 부처별 사업선정 결과 등 사업 선정 관련 자료, 지역발전 투자협약 자료(20.04.10 기준), 균형위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현황”(20.01.22. 기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각 시·도 사업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현황” 작성양식을 국무조정실을 경유하여 사업담당자에게 배포 후 취합(20.05.~06. 진행)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조회를 통한 모니터링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를 진행한 SOC복합화 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청서 및 의견서 DB 확보 및 모니터링

11) 17개 시·도(172개 시·군·구) 289건 선정(균형위, 2019.10월/3년간 국비 8,504억 원 규모),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285건 체결 완료(2020.5월), '20.7월 기준 283건(6건 포기), '20년 11월 기준 279건(4건 포기)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사업에 대한 의견서 모니터링 방식 검토

- 사업현황 카드를 통해 사업추진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추진
 - 사업현황 카드상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했다고 기입한 93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내용 분석을 기획

[표 3-1] 사업추진단계 확인을 위한 사업현황 카드 구성(예시)

사업추진단계 (제출일 기준)	부지확보	투자심사	사업기획 (기본계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V	V	V	V
	설계발주	설계	시공발주	시공
	진행 중	-	-	-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모니터링 방식 검토협의 진행 (20.07.30.~20.08.05.)
 - 공공건축 사전검토 DB를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 기획
 - 생활SOC복합화 사업('19년 선정 사업)과 공공건축 사전검토 간 사업명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및 사업담당자와 전화면담을 통하여 모니터링 대상 확정¹²⁾
 - 2019년 SOC복합화사업 선정일(19.10.04.)부터 2020년 8월분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견서 발송일(20.08.11.) 사이에 사전검토가 완료된 사업의 DB 확보(총 86개 사업)
 - 국가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 DB의 데이터 계열 중 생활SOC복합화 사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검토 진행(사전검토 의견서의 5개 감지명 분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 추진 일정

- '20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 자료 취합 및 컨설팅 실시

[표 3-2] '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내용

구 분	추진 일정	내 용
관리카드 작성 및 배포	5월 3-4주차	- 기존 자료 취합 및 정리 - 총괄 현황 표(Excel) 및 관리카드(Hwp) 양식 배포
1차 모니터링	6월 중 (6월 24일 완료)	- 과제 관리카드 취합 - 전체 추진현황 파악, 문제 사례 발굴 - 지자체별 컨설팅 진행
2차 모니터링	11월 중 (11월 11일 완료)	- 과제 관리카드 배포 및 취합 - 전체 추진현황 파악, 문제 사례 발굴 - 지자체별 컨설팅 진행

12) 사업현황 카드 상 공공건축 사업검토를 완료했다고 기입한 사업 중 오기입한 사업 및 진행·보완·반려 등 미 완료 사업을 완료로 표기된 사업에 대한 분류 작업을 병행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보완함

1.2 사업현황 카드 작성

■ 사업현황 카드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

- 건축공간연구원 - 생활SOC추진단 간 모니터링 방식 협의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내용 분석을 통한 사업현황 카드 서식 내용 구성
- 17개 광역시·도 사업 추진현황 파악 양식(엑셀, 한글 현황 카드) 일괄 배포 후 지자체별 작성 등 지원 업무 수행
- 작성된 사업현황 카드 내용 분석을 통한 컨설팅 및 추후 모니터링 계획 수립

[표 3-3] 사업현황 카드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 내용

일자	수행 주체	내용	
20.05.14.~06.04.	건축공간연구원, 생활SOC추진단	모니터링 방식 협의 (사업현황 카드 서식 구성, 배포 일정 등)	
20.06.04.~06.24.	생활SOC추진단	1차 모니터링 실시	사업현황 카드 17개 광역시·도 배포
	건축공간연구원		지자체별 사업현황 카드 작성 지원, 취합
20.08.31.	건축공간연구원	사업현황 카드 내용 검토·분석 및 유선 확인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현황파악 DB 구축	
	건축공간연구원, 생활SOC추진단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 계획 수립	
20.09.03., 09.08.	건축공간연구원, 외부 전문가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3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 실시	
20.10.23.~11.11.	생활SOC추진단	2차 모니터링 실시	사업현황 카드 17개 광역시·도 배포
	건축공간연구원		지자체별 사업현황 카드 작성 지원, 취합
20.12.11.	건축공간연구원, 외부 전문가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총 4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사업현황 카드 서식 마련

- '20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289건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은 285건¹³⁾에 대한 사업현황 관리를 위한 카드 구성
- 균형위와 협약한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명-연도-개별 사업번호'를 부여 하여 사업관리를 용이하도록 함
- 사업추진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사업기획의 적절성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
 - 사업추진단계 중 3단계인 '사업기획(기본계획)' 단계 이하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행
- 부지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 여부 및 지연 사업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등 확인

13) 지역발전투자협약 미포함 사업('20.05 기준) : ①금곡유수지 복합문화센터(부산 사상구), ②청년혁신 융복합센터(경기 수원시), ③연천군 복합문화체육센터(경기 연천군), ④강진군 통합어울림센터(전남 강진군)

[표 3-4] 사업현황 관리카드 서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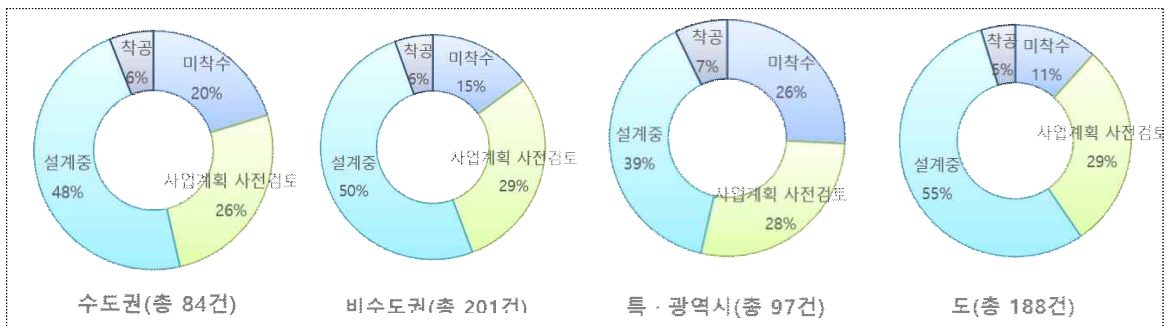
사업번호	지자체명-20-00	지자체	0000시						
사업명	0000 0000 건립								
담당자	부서 / 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관련부서	0000과			0000과			0000과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사업추진단계 (제출일 기준)	부지확보		투자심사		사업계획 (기본계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V		V		V		진행 중		
	설계발주		설계		시공발주		시공		
	-		-		-		-		
부지	[국공유지/ 학교부지/ 사유지/ 기존시설부지/ 기타()]								
예산 (제출일 기준, 단위: 백만 원)	총액			2019년 이전			2020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0,000	0,000	0,000						
	2021년			2022년 이후			2020년 집행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집행액	실집행액
							확정 예산	교부 금액	실 사용금액
사업 추진일정	※ 복합화사업 추진 진행 및 향후 일정을 상세히 기재 (아래 예시 참조), 올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0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 (19. 0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0.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 00.) 지방비 확보 완료 ○ (20. 00.) 건축기획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0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 00.) 건축 설계공모 완료 ○ (21. 00.) 건축 설계 완료 ○ (21. 00.) 건립공사 착공 ○ (23. 00.)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대응계획1)	구분	애로사항				대응계획			
	부지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주변 민원 발생 ○ 국유지 소유권 이전 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부지 확보 중 			
	지방비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 예정 			
	기타사항								
사업계획 변경사항2)	구분	당초내용 및 변경 사유				변경내용 및 진행과정			
	부지	○ (기준) 0,000				○ (변경)0,000으로 변경 [균형위 협약반영/미반영]			
	예산	○ (기준) 0,000				○ (변경)0,000으로 변경 [균형위 협약반영/미반영]			
	사업내용	○ (기준) 0,000				○ (변경)0,000으로 변경 [균형위 협약반영/미반영]			
	사업일정	○ (기준) 0,000				○ (변경)0,000으로 변경 [균형위 협약반영/미반영]			

2. 20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

2.1 제1차 모니터링 결과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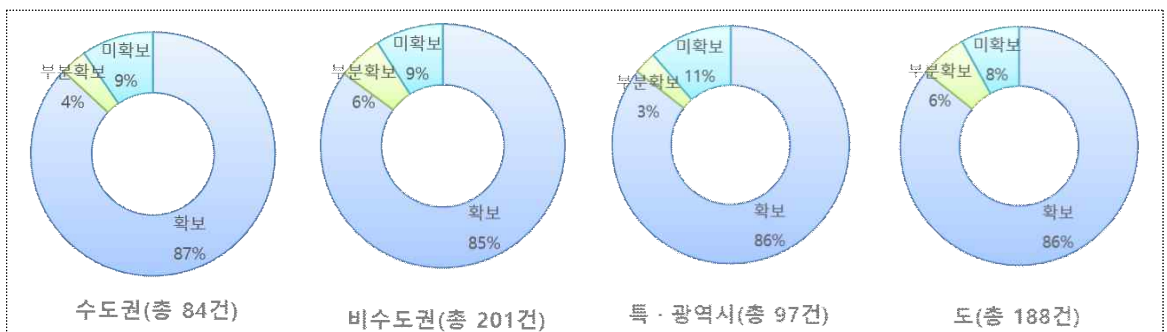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 추진 단계 : 약 55%(157개)가 설계진행 중 또는 공사 중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47개 사업(16.5%)은 아직 미착수 단계에 해당함
 - 총 285개 사업 중 미착수 47개(16.5%), 사업계획 사전검토 81개(28.4%), 설계 중 141개(49.5%), 착공 16개(5.6%)
 -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특·광역시보다는 도가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빠른 양상을 보임



[그림 3-1] '20년도 복합화사업 사업추진 현황(6월 기준)

- 부지 확보 : 약 86%(244개)가 부지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으나, 26개 사업(9.1%)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예상됨
 - 총 285개 사업 중 확보 244개(85.6%), 부분확보 15개(5.3%), 미확보 26개(9.1%)



[그림 3-2] '20년도 복합화사업 부지확보 현황(6월 기준)

14) 1차 모니터링 대상 : 최종 선정된 총 289건 중 사업포기 및 보류 4건을 제외한 총 285건 (전체 사업 추진 현황파악 결과는 44p. 표 3-7 참조)

■ 사업내용의 충실성

- 사업계획 변경 : 기존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은 42%(115개(중복 37건))로, 사업내용 및 예산 관련 변경이 가장 많음
 - 변경 사유 : 예산 관련 56건(33%), 사업내용 관련 50건(30%), 부지 관련 33건(19%), 사업일정 관련 29건(17%), 기타(위탁개발 추진 검토 중) 1건(1%)
- 사업 포기 : 당초 선정된 289건의 사업 중 총 6건의 포기사업¹⁵⁾이 있으며, 부지 미확보 및 시설 부적격 판정 등에 따른 것임
 - 포기 사업(6건): 서울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부산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센터, 경기 수원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경기 연천군 복합문화체육센터, 전북 정읍시 통합가족센터, 전남 강진군 통합 어울림 센터

■ 사업추진 애로사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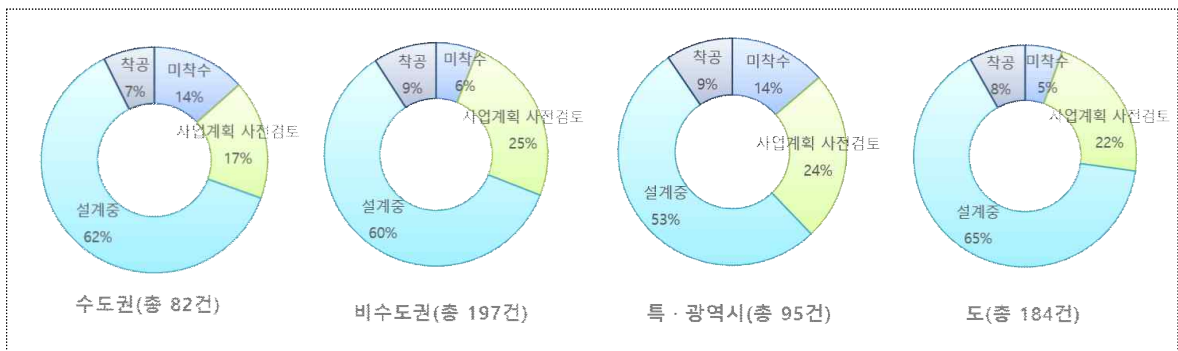
- 사업추진 애로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은 주로 지방비 미확보와 부지 미확보로 조사됨
- 지방비 미확보를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사업은 총 55건으로, 추경 시 예산 확보 예정 등 지자체 별로 제시된 보완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 점검 필요
- 부지 미확보를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사업은 총 26건으로, 매입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대체부지 확보 등을 사유로 제시하였음
 - 부지 미확보 사유 : 매입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15건(56%), 대체부지 확보 9건(33%), 민원 발생 2건(7%), 추가부지 필요 1건(4%)
- 기타는 3건으로 사업계획 변경, 일정 지연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함

15) 지역발전투자협약(‘20.05.)에 참여하지 않은 4건 사업 중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부산 사상구)'는 협약 보류로 취소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후 협약을 체결함(‘20.09.)

2.2 제2차 모니터링 결과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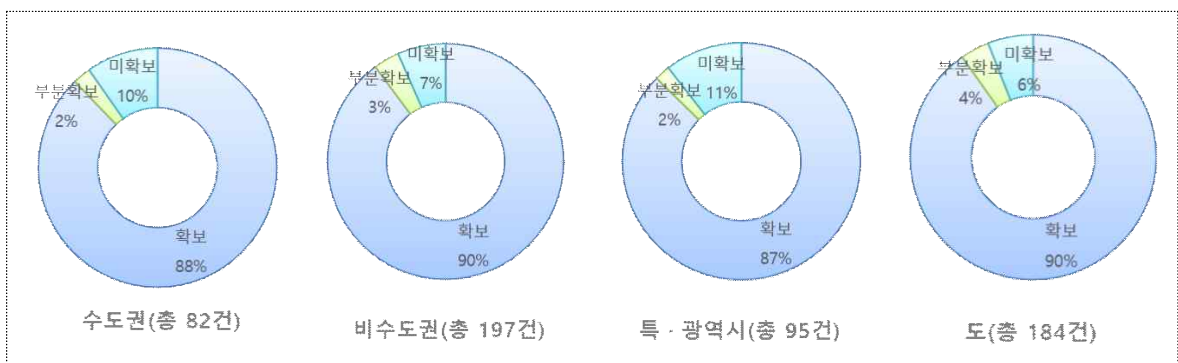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 사업 추진 단계 : 전체의 69%(193개)가 설계진행 중 또는 공사 중으로 1차 모니터링 당시의 55%에 비해 14%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착수 단계인 사업이 23개 존재
 - 총 279개 사업 중 미착수 23개(8%), 사업계획 사전검토 63개(23%), 설계 중 169개(61%), 착공 24개(8%)
 - 1차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과 도 단위 사업이 추진이 상대적으로 빠른 양상을 보임



[그림 3-3] '20년도 복합화사업 사업추진 현황(11월 기준)

- 부지 확보 : 전체의 90%(251개)가 부지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듯하나, 22개 사업(7%)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총 279개 사업 중 확보 251개(90%), 부분확보 9개(3%), 미확보 22개(7%)



[그림 3-4] '20년도 복합화사업 부지확보 현황(11월 기준)

16) 2차 모니터링 대상 사업 : 최종 선정된 총 289건 중 사업포기 10건을 제외한 총 279건 대상 (전체 사업 추진 현황과 약 결과는 44p. 표 3-7 참조)

■ 사업내용의 충실성

- 사업계획 변경 :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은 29%(82개)로, 사업일정 및 예산 변경이 가장 많음
 - 변경 사유 : 예산 관련 28건(34%), 사업내용 관련 14건(17%), 부지 관련 8건(9%), 사업일정 관련 23건(28%), 기타(추진방식 변경, 예산 변경 등) 10건(12%)
- 사업 포기 : 당초 선정된 289건의 사업 중 총 10건¹⁷⁾의 포기사업이 있으며, 포기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른 것임
 - 포기 사업(10건) : 서울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부산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센터, 광주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 경기 수원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경기 연천군 복합문화체육센터, 충남 천안시 천안행복 복합센터 건립, 전북 정읍시 통합가족센터, 전남 강진군 통합 어울림 센터, 경북 구미시 시립 중앙도서관 증개축

■ 사업추진 애로사항 확인

- 지방비 미확보를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사업은 총 17건으로, 지자체별로 제시된 보완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 점검 필요
- 부지 미확보를 애로사항으로 제시한 사업은 3건으로, 사유지가 2건, 국유지가 1건임
 - 사유지 계약 지연(서울), 수용재결 예정(울산), 국유지 매수신청(경남)
- 기타 : 사업계획 변경, 주차면적 확대 방안 검토 등 기타 애로사항 (총 11건)

17) 당초 선정된 289건의 사업 중 10건의 취소 사업이 발생하였음

2.3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 결과 분석¹⁸⁾

■ '20년도 복합화사업 사전검토 진행 현황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DB를 바탕으로 '20년도 복합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진행현황 검토 결과, 사전검토 완료 사업은 2019년 31개, 2020년 58개¹⁹⁾로 '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총 90개 사업(32.3%)이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27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2개 복합화사업(아리아리 이음플랫폼,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합하여 신청하였음

[표 3-5] 사전검토 진행현황

완료	미 이행	대기	반려	보완요청	진행 중
90(32.3%)	114(40.9%)	9(3.2%)	2(0.7%)	16(5.7%)	21(7.5%)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사전검토 의견서 경향 분석 1 - 세부 의견별 유형 구분

- 사전검토 세부의견은 총 16가지 항목(부지, 사업관리, 일정, 설계방향, 스페이스프로그램, 수요, 예산, 규모, 관련계획 등)으로 구성
- 사전검토를 완료한 '20년도 복합화사업(90개)에 대한 세부의견 검토 결과, 사업관리(20.1%), 설계방향(17.3%), 예산(13.3%), 스페이스 프로그램(9.5%)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사업관리와 설계방향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러 기능이 함께 도입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표 3-6] 사전검토 세부의견 항목별 비중

사업관리	설계방향	예산	스페이스 프로그램	일정	규모	부지	배치
20.1%	17.3%	13.3%	9.5%	7.3%	7.3%	5.8%	5.8%
운영계획	관련계획	발주방식	입지	수요	인증허가	정합성	타당성
4.3%	2.3%	2.0%	1.8%	1.8%	1.3%	0.3%	0.3%

18) 세부내용은 부록 1 참조

19) 2020년 10월 20일 현재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통지 완료 기준

◦ 사업관리 측면

- (복합화사업 부서 간 협의체 구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담당 부서 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담당부서-전문가-운영자 간 협력) 사업계획의 내실화와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사업담당자, 전문가, 운영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추진
- (건축기획·총괄건축가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 복합화에 따른 각 시설별 통합 관리와 세밀한 기능분배를 위한 건축기획 추진 및 총괄건축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설계방향 측면

- (복합화 시설 간 적절한 영역별 zoning 및 동선 계획) 복합화 시설 간 이용자·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통합과 구분을 고려한 시설 배치, 필요 시 동선 분리 등의 대안 마련
- (노유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대안 마련) 노유자 및 장애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화되는 경우, 보행 접근성과 BF디자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 (시설별 특화방안 마련) 수영장이 필수조건인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각 시설이 갖는 독특한 설계조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
- (적절한 외부공간 구현) 지역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위주의 외부공간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편의 및 휴게 공간 고려

◦ 예산 측면

- (설계비 재산정) 시설의 특성 및 현행 법령·기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등),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 재검토
- (공사비 재산정) 유사 사례 대비 공사비를 부족하게 산정한 사업에 대해 적정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예산여건에 맞춰 사업규모를 조정
- (공용면적 구분 및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 복합용도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용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예산 증액

◦ 스페이스 프로그램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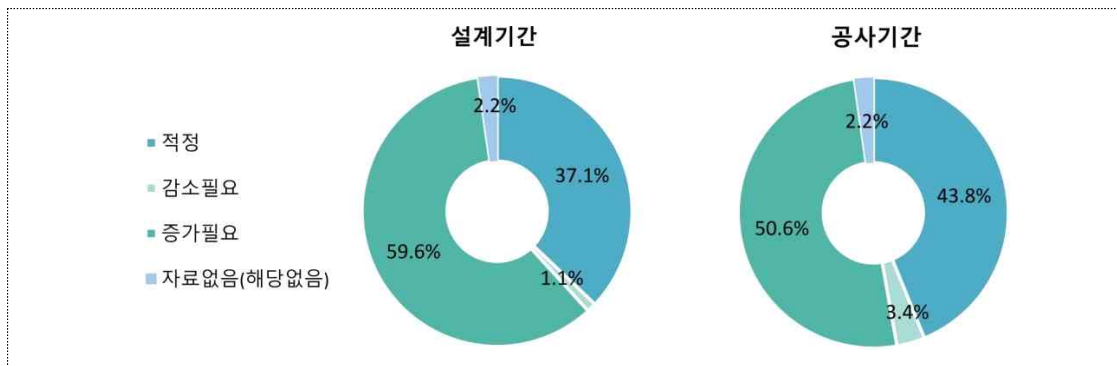
- (시설 소요면적 구체화) 구체적인 운영계획, 설계방향 등의 파악을 위해 시설 규모 및 소요면적 계획을 재검토하여 구체화
- (공용면적 확보) 여러 기능이 복합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
- (영역 구분 및 연계) 동적·정적공간을 분리하고, 연계가 필요한 공간을 명확히 설정

◦ 사업일정 측면

- 설계기간은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계별 성과품의 제출 및 승인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개월 수를 확보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

■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사전검토 의견서 경향 분석 2 - 기간 및 비용 관련 사항

- 사업기간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분석결과 설계기간은 증가필요(59.6%), 적정(37.1%), 감소필요(1.1%), 공사기간은 증가필요(50.6%), 적정(43.8%), 감소필요(3.4%)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음



[그림 3-5] 사업기간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 사업비용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결과 설계비는 증가 필요(67.1%), 적정(29.4%), 건축공사비는 증가필요(71.8%), 적정(28.2%)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예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과소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나 예산에 비해 사업규모가 과대한 경향을 보임



[그림 3-6] 사업비용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2.4 현황 파악 및 분석결과 종합

■ '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 현황

- '20년도 선정 복합화사업은 당초 28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사업 포기 또는 보류로 4개 사업을 제외한 2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20.01) 진행
- 1차 모니터링('20.06) 결과, 추가로 3개 사업이 사업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협약체결 당시 보류사업이었던 1개 사업의 협약체결이 완료('20.09)되어 '20년 09월 현재 총 283건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선정 당시 289개 사업 중 취소사업 6개)
- 2차 모니터링('20.11) 결과, 추가로 4개 사업이 사업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하여, '20년 11월 현재 총 279건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선정 당시 289개 사업 중 취소사업 10개)

[표 3-7] 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 현황

일자	추진 사항	사업 건수
2019.10.	• 20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289건
2020.01.	• 균형위-지자체 간 지역균형발전협약 체결(285건) • 취소(3건): 청년혁신 융복합센터(경기 수원시), 복합문화체육센터(경기 연천군), 통합어울림센터(전남 강진군) • 보류(1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부산 사상구)	285건
2020.06.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한 285건에 대한 1차 모니터링 진행 • 취소(3건): 신촌역광장 재구조화(서울 서대문구), 아쿠아파크드림센터(부산 기장군), 통합가족센터(전북 정읍시)	282건
2020.09.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보류했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부산 사상구)' 사업 협약 체결	283건
2020.11.	• 취소(4건): 두드림 복합문화센터(광주 서구),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경기 화성시), 천안 행복복합센터 건립(충남 천안시), 시립 중앙도서관 증개축(경북 구미시)	279건

■ 추진 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사업 추진이 미흡한 사업 중 대부분이 부지확보(대체 부지 확보 등 포함)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차 모니터링 결과) 부지 미확보 및 부분확보 25건, 설계용역 미착수 15건
 - (2차 모니터링 결과) 부지 미확보 및 부분확보 31건, 설계용역 미착수 13건
- 사업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계획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보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업 이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 독려를 위하여 차년도 신규 사업 선정 시 '20년도 기 선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또는 디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 주체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다 부서가 참여하는 복합화사업의 특성상 세부시설의 운영 주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과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다수 발견됨
-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의체 구성, 전담부서 및 총괄건축가 지정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통합계획 수립 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이용주체와 기능을 고려한 면밀한 건축기획 필요

- 사업 초기단계에서 건축기획을 보다 면밀히 하도록 유도하여, 시설 간 중복 기능의 최소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간 구성, 이용자 중심의 내·외부 공간계획 등이 사업계획 및 설계지침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복합화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기획 수립 예산 배정 및 기획 수립에 요구되는 충분한 기간을 사업 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한 공용공간과 외부공간 확보 필요

- 복합화사업은 이용계층 및 이용 시간대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 용도 시설에 비해 충분한 공용공간을 확보가 필요하지만, 많은 사업에서 공용면적을 과소하게 책정한 경우가 지적됨
-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공용면적, 외부 공간, 휴게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외부전문가 활용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사업 초기 과정에서의 외부전문가 컨설팅,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유도 등 사업기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의 복합화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국조실 및 시설별 사업 담당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컨설팅과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컨설팅 등을 별도 추진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3. 2020년도 복합화사업 컨설팅

3.1 컨설팅 개요

■ 추진 절차

- 1차 및 2차 모니터링(6월, 11월) 이후 2회에 걸쳐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
- 1차 컨설팅 : 2020.09.03.(목), 09.08.(화), 2차 컨설팅 : 2020.12.11.(금)

■ 방법

- 지자체별 컨설팅 수요를 받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컨설팅²⁰⁾ 실시
- 건축공간연구원, 외부전문가(사업계획 사전검토 위원)로 컨설팅단²¹⁾ 구성



[그림 3-7] 1차 컨설팅(9.8.) 현장 사진



[그림 3-8] 2차 컨설팅(12.11.) 현장 사진

■ 주요내용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 설계공모 방식 선정,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방안
- 설계공모 시행 방안

20) 코로나 19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비 대면으로 진행

21) (1차 컨설팅 위원) 김제형 부사장(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혜련 대표(오드팩토리), 안우성 대표(온고당건축사사무소), 이정수 교수(충남대), 정기정 소장(유오에스 건축사사무소), 정유석 수석(해안건축), 염철호 선임연구원(AURI)

(2차 컨설팅 위원) 김제형 부사장(이가건축), 이정수 교수(충남대), 정유석 수석(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상사업

- 1차 컨설팅 : 서울, 광주, 대전 등 총 13개 사업
- 2차 컨설팅 : 충남, 전북 등 3개 사업

[표 3-8] 컨설팅 대상사업 및 주요 자문요청사항

구분	지자체	사업명	컨설팅 요청사항	
1차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방안	
		구로구 KBS 송신소 복합문화타운 건립	• 설계공모 방식 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광주	본청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대전	본청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 설계공모 방식 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충남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 설계공모 시행 방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 설계공모 방식 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전북	군산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방안	
		남원시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전남	보성군 별교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설계공모 방식 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경북	영덕군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예주 행복드림센터, 강구 건강활력센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방안	
	2차	충남	천안시 직산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 공공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전북	군산시 군산시 가족센터	• 공공 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 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군산시 생활문화나눔터	•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사업의도에 부합하는 내부 설비, 시설자재 등 세부사항 • 설계 시 적성 시설면적 및 건축디자인 방향

[표 3-9] 컨설팅 수요조사 서식(안)

[붙임] 컨설팅 수요조사 서식				
총괄표				
우선 순위	사업번호	지자체명	사업명	참석자(성명)
1				
2				
3				
사업 세부내용				
□ 사업개요				
사업번호			지자체(기초)	
사업명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업추진단계 (신청일 기준)	부지확보	투자심사	사업기획(기본계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발주	설계	시공발주	시공
※ 사업관리카드를 기초로 작성				
□ 컨설팅 요청내용 (최대 2건)				
항목 번호	컨설팅 요청 주요내용			비고
항목①	<i>(구체적으로 작성)</i>			<i>컨설팅 관련 참고자료 기재</i>
※ 컨설팅 주요내용 항목 ①~⑥ 중 지자체별 2가지 항목에 대한 컨설팅 가능 ※ 컨설팅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추가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붙임				

3.2 1차 컨설팅 결과

■ 전북 남원시 -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 공간계획 등을 반영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 (건축기획) 사전검토 의견서 통지 이후 별도의 건축기획 용역 수행 권장
- (의견 수렴) 위탁 운영주체 후보, 주 이용층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필요
- (설계공모)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안 공모 방식이 적절해 보이며, 필요 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 확인 후 추가 서면자문 예정
 - 제안공모 방식 적용 시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과업지시서) 과업 지시사항을 구체화하고, 납품도서 규격 등 일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전문가 활용) 전라북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위원단 구성 권장

■ 전북 군산시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건립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사업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사업 일정) 총사업비를 고려할 때, 설계비 1.5~2억 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
 - 해당 절차 이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예상 기간 내 용역 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일정 보완 필요
 - 연내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 기획 전문가를 섭외하여 건축 기획 완료 후 사전검토 일정 내 제출,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한 업체 선정 권장
- (건축기획) 사업 규모 상 별도의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 주택 건축과 건축문화팀 내 운영되고 있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여 검토 권장
- (설계공모) 제안공모 방식이 적절하며, 발주 시 과업지시서 내 명확한 요구사항 제시 필요
 - 인접한 농업인센터와 기능 연계 방안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요구사항 포함

- 비상주 감리 대상일 경우, 용역비를 상향 조정하여 상주 감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의도 구현비용을 예산에 포함하는 것 권장
- (부지) 인접한 농업인 회관, 기술센터 전체가 공공청사로서 클러스터화되기 때문에, 대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혹은 증장기계획 필요

■ 전남 보성군 - 별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설계공모 방식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 (사업 일정)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연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 발주를 마무리하는 일정에 대한 수정 필요
- (운영 계획) 여러 사업을 복합화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주체 및 계획 수립 권장
- (부지)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내용과 사업내용 상 건축규모 및 부지 면적이 상이하므로, 기 운영 중인 공용버스터미널의 운영 방식 및 사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의 선 수립 필요
 -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및 사유지 매입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권장
-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등 정적인 기능과 국민체육센터, 영화관 등 동적인 기능의 이격 및 상호 연계가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해 지침 상에 명기하고 공용 면적 약 35% 이상 확보 권장
- (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관련 절차 및 건축기획 관련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총괄건축가 제도 활용 권장

■ 광주 -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사업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운영 계획) 운영 단체-담당 공무원 간 지속적인 사전 협의 및 지자체 사업 운영계획 보완 필요
 - 지역 장애인 유관 단체와 사전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이 건축기획에 참여하여 계획의 전문성 제고
 - 지자체사업(위탁시설)의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시설에 특화된 사업기획으로 보완

- (건축기획) 장애인 특화 시설임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보완 필요
 - 장애 유형별 평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임시 피난구역 및 수직 피난시설 계획 필요
 - 공용면적이 22%로 매우 협소하므로 최소 35~40% 정도로 확대 필요
 -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광주 시내 반다비 체육관시설 공급량을 확인하여 체육관을 강당형 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권장
 - 부지 특성(강변 연약지반) 및 공사비를 고려한 지하층 계획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고려할 시 데크나 필로티를 활용한 건축물의 계획 권장
 - 현재 주차계획은 BF 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므로, 프로그램 주차계획의 도입 검토 권장
- (접근성) 대중교통과 보행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장애인 콜벤 및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진입 도로 폭(2.5m)을 고려한 운용 차량 도입 필요
- (스페이스 프로그램) 휠체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뱅크 타입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휠체어 동선상 휠체어 수리실 및 보관 장소를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설계의도 구현, 제로에너지 인증, 상주감리 비용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 권장
 - (설계의도 구현)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서울시 기준 5~8%) 권장
 - (제로에너지 인증) 인증에 필요한 추가설계비 반영 권장
 - (상주감리) 전문가 견적 또는 실비를 산출하여 현재 금액에서 증액 권장

■ 충남 태안군 - 가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설계공모 방식 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방안
- (부지) 경사지형임을 고려하여 기준 레벨을 설정하는 등 계획 보완 필요
 -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는 진입공간 주변부로 제한될 수 있고, 지형훼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시 과업지시서 내 사업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요구사항 제시
 - 건축-조경 간 협업이 용이하도록 조경설계를 건축설계에 포함하여 발주 권장
- (설계공모 세부 지침) 보건위생실, 상설전시관 등 각 시설에 적합한 세부 시설별 지침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공하고, 기능 간 수직분리가 건축계획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수정 권장

- 다문화가정·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 기능에 대한 고려
권장 (외부 캐노피, 수영장 내 가족 탈의실, 바닥난방, 여성전용주차장, 유모차 보관 공간 등)
- (운영계획) 사전 기획단계에서 운영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의 선 수립 권장
 - 전체 시설을 태안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세부 시설은 부처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 (예산) 설정한 연면적 증감 폭(10%)에 따라 설계 변경 시 공사비 변동에 의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서울 서대문구 -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설계공모 방식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사업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사업대상지 건축배치 및 공간기획 제안
- (사업 일정) 현재 설정한 설계기간(6개월)이 다소 짧을 수 있으므로, 적정 설계기간의 보장 필요
- (설계공모 방식) 현재 상황과 건축 규모, 기능을 고려할 때 일반공모 방식 권장
 - 제안공모 적용 시, 도시재생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되어 건축기획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
- (설계공모 세부 지침) 시설별 기능을 보다 상세하게 기획하고, 인증 등을 위한 보완 필요
 - 시설면적과 기능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선정된 운영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침 상 명기
 - 수직 피난구조에 대한 고려 및 시설면적 표 상 공용면적 비율 증가 필요 (현재: 35~40%)
 - 수영장 BF인증을 위해 장애인용 레인 1개를 추가 필요
 - 셔틀버스의 드랍오프(drop-off) 존을 고려하고, 저층부에 장애 및 영유아실의 배치 권장

3.3 2차 컨설팅 결과

■ 충남 천안시 - 직산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사업 제반 절차 추진방안
- (거버넌스 구축) 다 부서가 참여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기획 용역, 설계 발주 등 시설 조성절차 전반에 걸친 협의체 운영 권장
 - 기획단계에서 유사 사례 조사 및 도서관 설계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을 통한 계획 수립 권장
- (건축기획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선행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내용이 중첩되므로, 지역적 특성, 대지 현황, 이용 수요 등을 반영하여 수정 필요
 - 기존 시설인 행정복지센터,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요구 필요
 - 타당성 용역 결과 제시된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 공용 면적이 적게 산정되었으며, 작성된 도면의 구성과도 상이하므로 자료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간활용 및 주안점' 항목에는 어린이 자료실,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공간 구성 방향 및 운영 지침을 자세히 명기할 필요
- (운영계획) 천안시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 대출 등 연계 운영방안 마련 권장

■ 전북 군산시 - 군산시 가족센터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사업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건축심의(7~8월) 전 변경해야 하므로, 6~7월 이내에는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되어야 함을 도시계획과에 사전 공지할 필요
- (사업비)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 조달청 자료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단가(㎡당 300만원)는 적정
 - (가족센터) 복지 시설, 노유자 시설 유형 등 최근의 유사 사례 중 전체 연면적, 층수, 규모가 유사한 것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산정할 필요
- (건축기획) 복합화 시설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선 이해 및 운영 및 지원 인력에 대한 고민 필요

- (거버넌스 구축) 다 부서가 참여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고 주택행정과 등 관련 부서 협의체 구성 및 지속 운영 권장
- (운영계획)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면적 단위의 수요 조사 및 유사시설 운영 계획 참고 등 사전에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 필요

■ 전북 군산시 - 생활문화나눔터

- 주요 컨설팅 요청 사항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사업 제반 절차 추진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 규모(총사업비 21억)를 고려한 건축기획 용역 발주 여부 결정 등 시설 조성 사전절차에 대한 고민 필요
 - 설계비 5천만 원 미만으로 하여 공심위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 규모상 적정하나, 독특한 프로그램 구성상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건축기획 용역 발주 권장
- (운영계획) 명확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주체 선정 필요
 - 군산시 출연 재단법인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예정이나, 이와 별개로 자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 권장 (운영 인력, 관리·운영비에 따른 자원 마련 방안,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 청년층의 창업 지원 공간에서 나아가 주변 음식점과의 연계 등을 통한 수익창출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 제고
 - 사업계획서 공모전을 통해 시설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당선된 팀을 대상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운영 모델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
- (거버넌스 구축) 농업기술센터, 가족센터 담당과, 시설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건축기획,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필요
 -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당, 푸드 매니지먼트 전문가, 지역 내 관련 학과 교수 등 유사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컨설팅 권장

제4장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평가 및 선정 지원

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지원
2.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사업 분석

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지원

1.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체계

■ 사업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20.4.23.~5.6.
- 접수방식
 -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통보 및 설명회²²⁾ 실시 (3~4월)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 등을 시·도별로 취합하여 국조실 생활SOC추진단에 제출 (4월 말)
 - 필요한 경우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에 한해 5월 15일까지 보완 제출 및 상시 추가 접수
- 접수자료
 - 복합화사업 신청서 및 자체검토서
 - 세부 시설별 사업신청서

[표 4-1] '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확인사항	비고	
제출서류	총괄표	-	
	사업신청서	직인 날인	
	자체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20쪽 이내 작성)	보완제출 여부 확인	
	시설별 사업계획서	총괄표, 사업신청서, 자체검토서로 구성	
제출 방법	공문 제출	공문(전자문서)	-
		총괄표	-
		사업신청서 사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서류(책자) 제출	총괄표	-
		사업신청서 원본	직인 날인
		사업계획서 책자 25부	총괄표, 사업신청서, 사업 자체검토서 순 구성
		USB 16부	-
	파일(USB) 제출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제출 폴더 및 파일 구성 확인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사본, 사업 자체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시설별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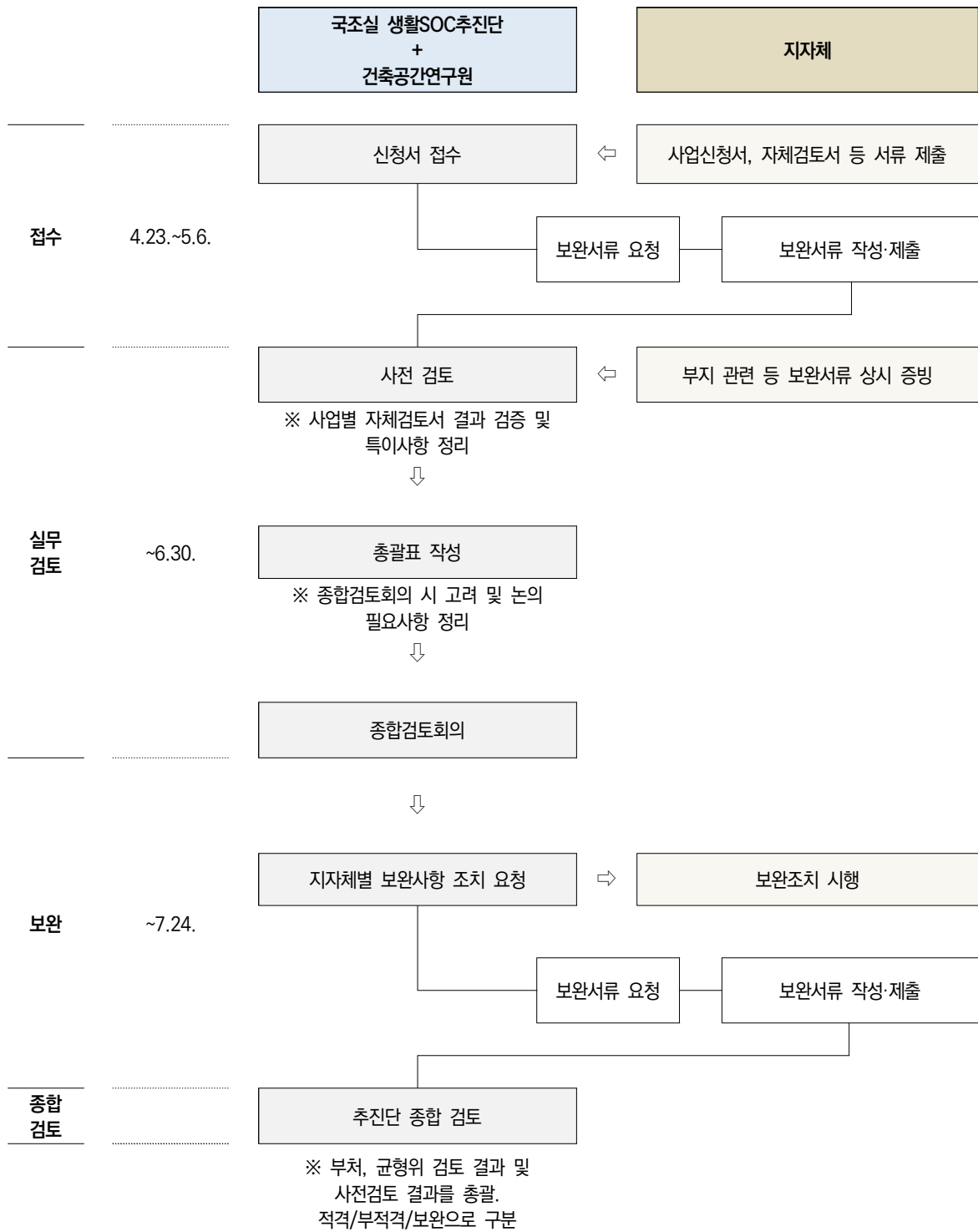
22)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4월 1일 영상회의로 진행

■ 접수 결과

-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68건을 신청하여 전년도(289건) 대비 사업물량은 양적으로 감소
 - 생활SOC 3개년계획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9년에 '20년도 사업물량을 적극 당겨 선정하여 지역의 시급한 수요가 상당수 기 충족
 - 복합화사업 재원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자율계정)의 지출한도 및 초기자금 조달 부담으로 지자체의 신규사업 착수 여력 감소
- 학교시설 복합화(13건), 공공임대 복합화(3건) 등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 포함

■ 신청 사업 검토 절차

- 국조실 생활SOC추진단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 접수 직후 누락 및 미비 사항을 확인하여 보완서류 제출 요청
-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서 내용의 정합성 검증 및 특이사항을 정리한 총괄(표) 작성
 - 자체검토서 내용 중 세부사항과 일치 여부 검증
 - 일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후 추가 증빙자료 등 제출 요청
- 부처별 검토 결과 및 균형위 검토결과 취합 및 반영
- 부지확보, 접근성, 민원 등 사업별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종합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
- 종합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고 지자체에 보완사항 등 요청
- 그간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종합검토 결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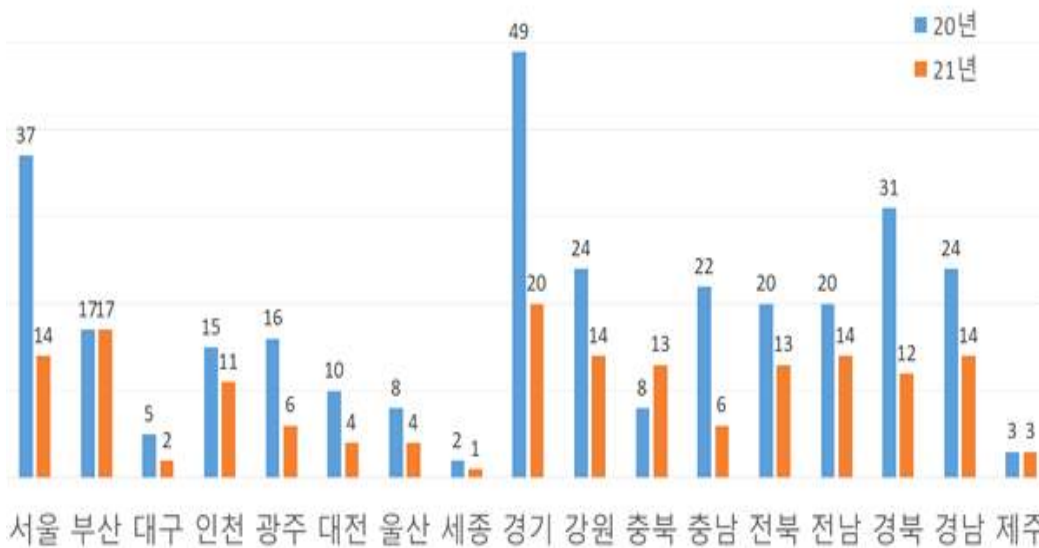


[그림 4-1]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신청사업 검토 절차 및 방식

1.2 2021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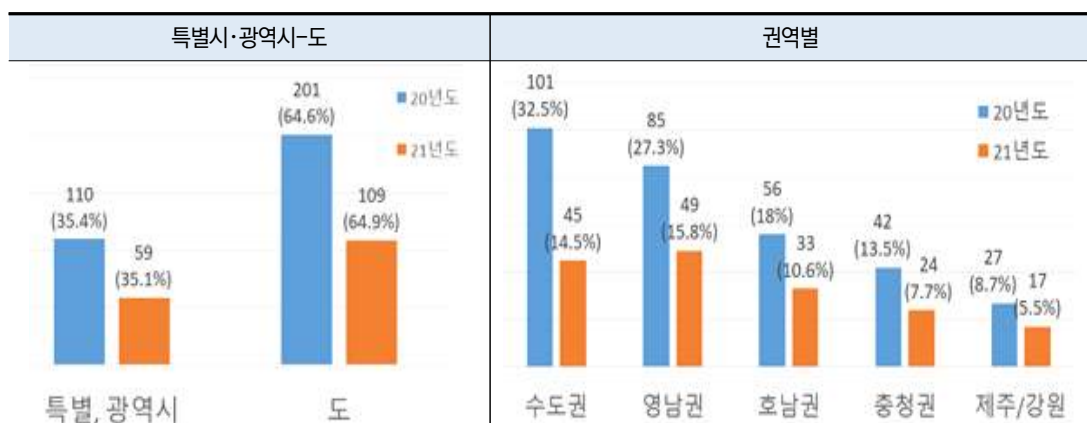
■ 전체 현황

- 수도권-지방, 도-농, 권역별 등 지역 분포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경기·광주·충남·대구·경북의 감소폭이 큰 편임 (경기 49→20건, 광주 16→6건, 충남 22→6건, 대구 5→2건, 경북 31→12건)
- 감소폭이 큰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등의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경기·충남·광주는 배분된 균특회계를 계속사업에 소진하여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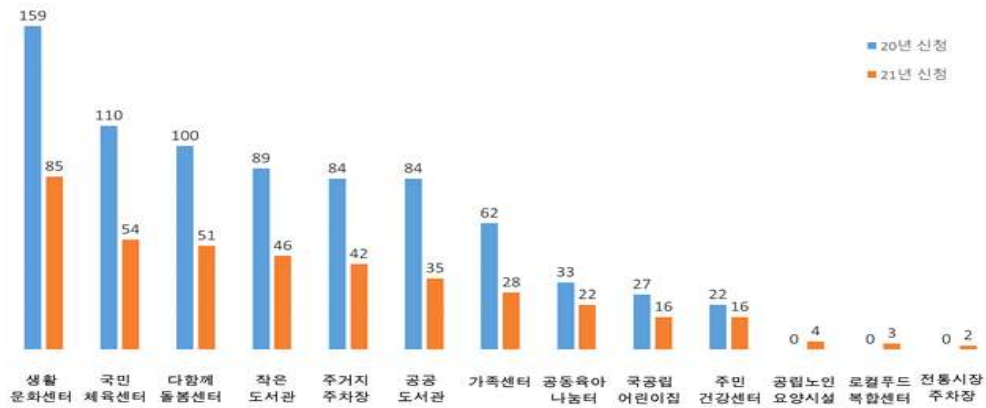
[그림 4-2] 접수현황 비교('20년도, '21년도)

[표 4-2] 각 지역 및 권역별 비교('20년도, '21년도)



■ 사업별 신청 현황

- 복합화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85건(21%), 국민체육센터 54건(13.4%), 다함께돌봄센터 51건(12.6%)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인 양상은 전년도와 유사함
- 신규 추가시설 신청은 공립노인요양시설 3건, 전통시장주차장 2건, 로컬푸드복합센터 3건임



[그림 4-3] 사업별 접수 현황 비교 ('20년도, '21년도)

■ 지역별 선호시설²³⁾

-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강원·전남은 가족센터의 신청 건수가 다수
- 타 지역에 비해 경기·충북·전남은 생활문화센터, 서울·부산·전남은 국민체육센터, 서울·강원·경남은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건수가 저조

[표 4-3] 지역별 선호시설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서울	생활문화센터(10)	작은도서관(4) / 주거지주차장(4)	공공도서관(3) / 국민체육센터(3)
부산	생활문화센터(12)	작은도서관(6) / 다함께돌봄센터(6)	공공도서관(5)
인천	작은도서관(6) / 국민체육센터(6)	생활문화센터(5)	공공도서관(4)
경기	생활문화센터(10)	국민체육센터(9) / 국공립어린이집(9)	다함께돌봄센터(8)
강원	가족센터(7)	생활문화센터(6)	국민체육센터(4) / 작은도서관(4)
충북	다함께돌봄센터(6)	공공도서관(5) / 작은도서관(5)	국민체육센터(4) / 공공도서관(4)
전북	생활문화센터(7)	국민체육센터(4) / 다함께돌봄센터(4) / 작은도서관(4)	공동육아나눔터(3) / 가족센터(3)
전남	가족센터(7)	다함께돌봄센터(5) / 작은도서관(5)	국민체육센터(4)
경북	생활문화센터(6) / 다함께돌봄센터(6)	국민체육센터(5)	주거지주차장(3)
경남	생활문화센터(9)	주거지주차장(6)	국민체육센터(4) / 작은도서관(4)

23) 복합화시설을 20건 이상 신청한 10개 지자체별 선호시설 분석

■ 사업별 복합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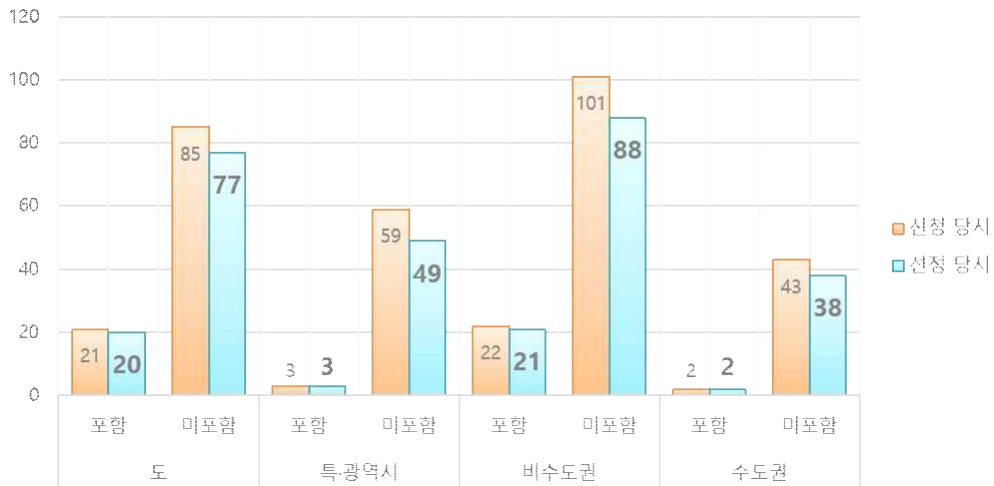
-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복합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지시설 복합화 사례가 다음 비중을 차지
- 지자체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복합화시설 경향은 전체경향과 유사하였으나,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작은 도서관과의 복합화 사례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
- 조성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조성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과의 복합화 사례가 다수

[표 4-4] 시설별 복합화 유형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도서관
건수	85건	25	24	23	14	14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건수	53건	23	12	11	10	8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건수	50건	14	13	11	9	각 8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건수	44	25	11	9	8	6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건수	37	24	12	9	9	각 6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건수	34	14	10	9	9	각 4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수	28	13	6	6	5	4
구분	대상시설	연계시설-1	연계시설-2	연계시설-3	연계시설-4	연계시설-5
시설명	지자체사업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건수	71	44	23	27	2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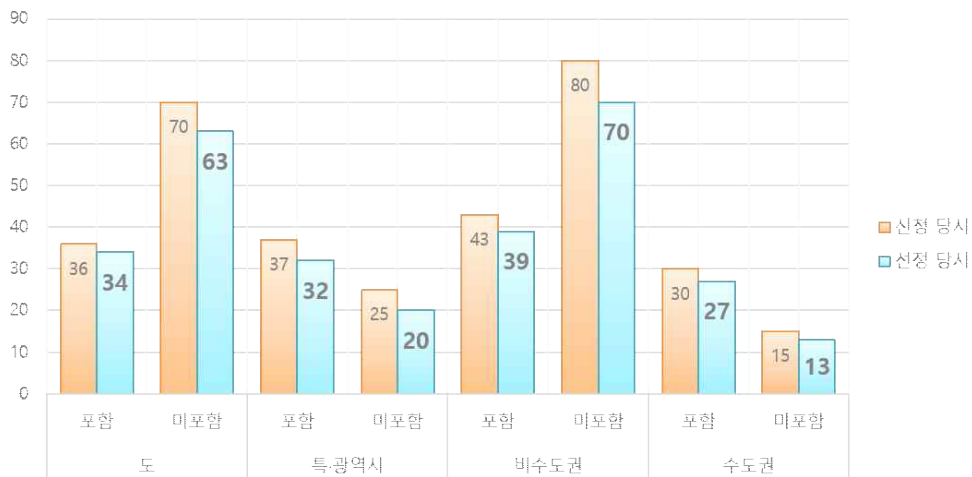
■ 타 사업 포함 여부²⁴⁾

-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타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은 25건(15%)으로, 타 국고보조사업과 복합화사업 간의 사업내용 중복 여부, 사업간 연계방안 등을 확인



[그림 4-4]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 지자체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은 81건(48%)으로, 복합화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연계 방안, 지자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예산확보 등 선행절차 이행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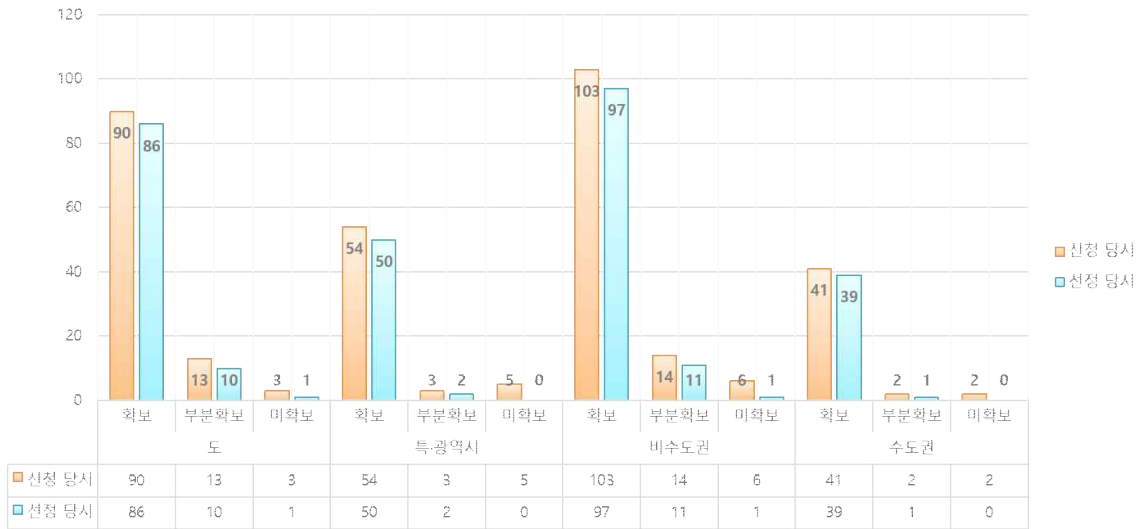


[그림 4-5]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24) 그래프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외 타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를 도, 특·광,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신청 당시('20.05.)'의 건수와 '선정 당시('20.09.)'의 건수로 비교·분석한 결과임

■ 부지 확보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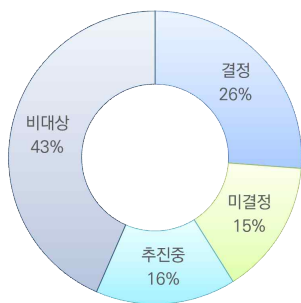
- 신청 사업 중 144건(85.7%)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듯하나, 부분 확보 및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상황 및 향후 부지확보 추진계획 등 확인
- 총 168건 중 확보 144건(85.7%), 부분 확보 16건(9.5%), 미확보 8건(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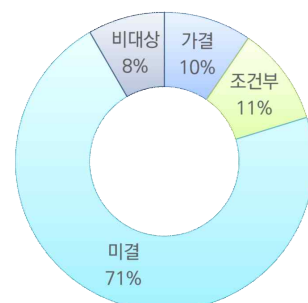
[그림 4-6] 부지확보 여부

■ 선행절차 이행 여부

- 전체 168건 중 결정 44건(26%), 미결정 25건(15%), 추진 중 26건(16%), 비대상 73건(43%)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사업 중 미결정 사업에 대해 부지확보 여부, 향후 추진계획 등 확인
- 전체 168건 중 가결 16건(10%), 조건부 18건(11%), 미결 120건(71%), 비대상 14건(8%)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미결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추진계획 등 확인



[그림 4-7]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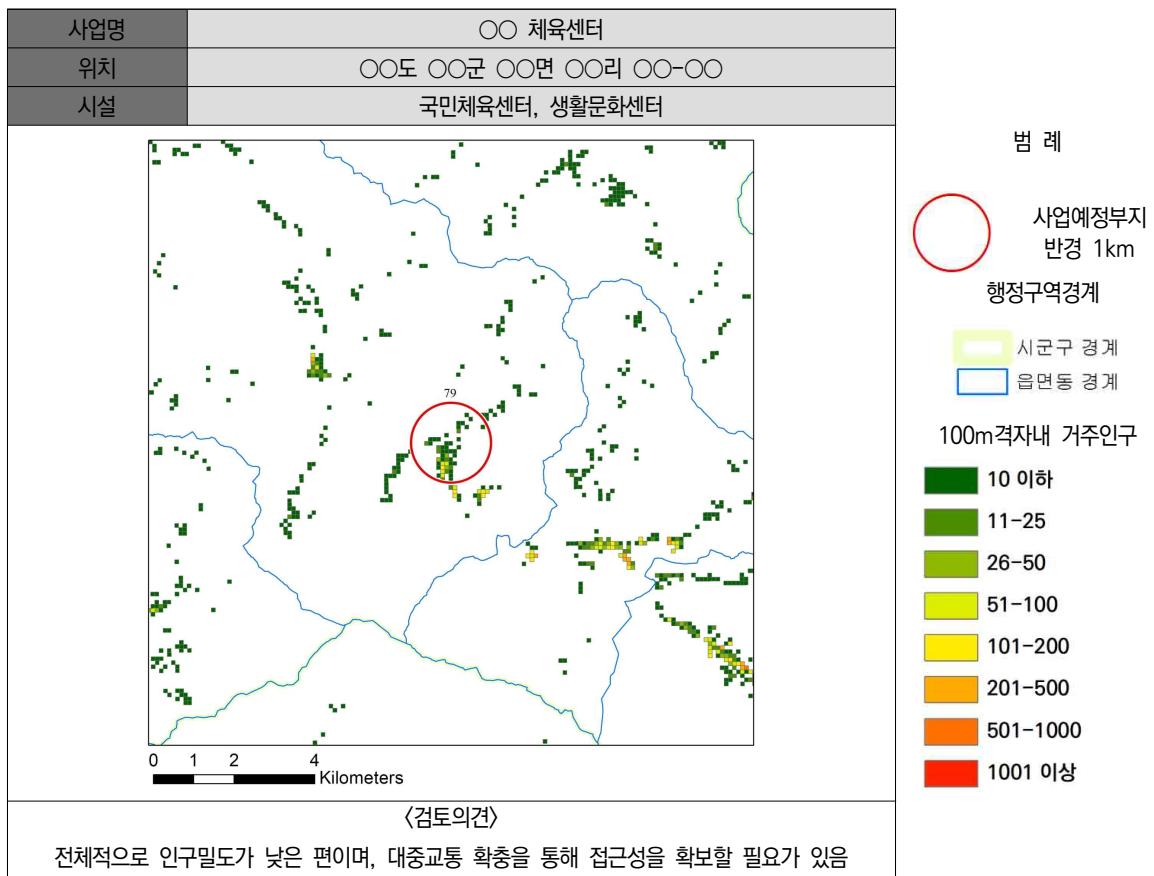


[그림 4-8]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25) 그래프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부지 확보 여부를 도, 특·광,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신청 당시'(20.05.)의 건수와 '선정 당시'(20.09.)의 건수로 비교·분석한 결과임

■ 접근성 현황

- 보행 접근성은 양호 162건(96.4%), 보완필요 6건(3.6%)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현황 파악 등을 거쳐 검증
-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 160건(95.2%), 보완필요 8건(4.8%)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현황 파악 등을 거쳐 검증
-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 분산되어 있으므로, 도심 지역과 별도 기준으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여, 지오코딩을 활용하여 사업부지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와 반경 4km 범위 내 인구 분포를 분석



[그림 4-9] 읍·면 지역 접근성 검토 예시
출처: 국조실 생활SOC추진단(2020), 내부자료

1.3 분석 종합

■ 부지 확보 여부

- 전체 신청 사업 중 14.3%에 해당하는 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보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년도 선정 사업에서 부지를 미확보한 채로 사업이 선정된 경우 사업 추진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부지 확보율 70% 이상, 매매동의 및 확약서 등 매입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 적정성 판단하는 등 보다 엄정한 기준 적용 필요
- 특히, 사유지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유지 포함 사업(46건, 27.4%)에 대해 확보 일정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자원 조달 가능성

- 전체 사업 중 약 60%에 해당하는 사업이 생활SOC 시설 외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타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예산 확보, 선행 절차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 대처방안 필요
- 타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세부 프로그램 중복 및 예산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
-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노후청사 신축 등 지자체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복합화 사업이 활용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즉시 착공 가능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 중이거나 미결정된 사업은 전체 사업의 31%,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결정된 사업은 71%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

■ 이용수요 및 접근성

-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하나, 보완필요 사업(보행 6건, 대중교통 8건)에 대해 지자체 내 관련 타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보완 방안 마련 조치 필요
- 읍·면 지역의 접근성 판단 시, 입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넓은 반경 내의 인구 분포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표 4-5] 자체 검토 결과 분석 종합 표

부지확보 여부		확보	부분 확보	미확보	
		144건(85.7%)	16건(9.5%)	8건(4.8%)	
재원 조달 가능성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81건(48%)		87건(52%)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25건(15%)		143건(85%)	
즉시 착공 가능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	미결정	추진중	비대상
		44건(26%)	25건(15%)	26건(16%)	73건(43%)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가결	조건부	미결	비대상
		16건(10%)	18건(11%)	120건(71%)	14건(8%)
이용수요 및 접근성	보행 접근성	양호		보완필요	
		162건(96.4%)		6건(3.6%)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		보완필요	
		160건(95.2%)		8건(4.8%)	

2. 20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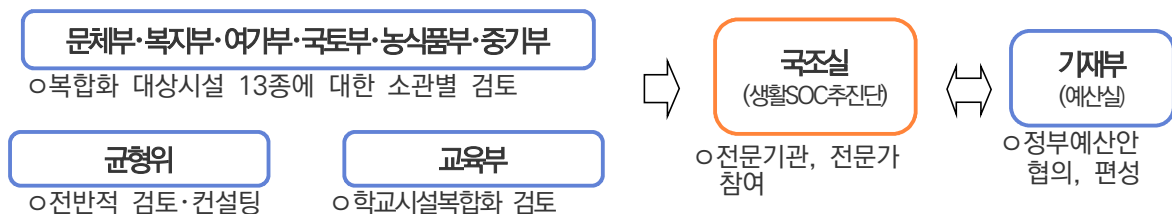
2.1 종합검토 개요

■ 종합검토 기준

-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생활SOC협의회, 3.26)에 의거, 실현가능성 (부지, 재원), 중복성, 접근성 등에 대해 중점검토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지확보의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 단계 등 즉시착공 가능성 검토
- (사업의 중복성)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 지 검토
- (입지선정의 적정성) 이용수요 및 접근성 측면의 적정성, 서비스 소외지역 해당 여부 검토
- (주민참여·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 주민과의 협의 수행 및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 검토

■ 종합검토 방식

- 부처별 검토, 균형위 검토, 교육부 검토 등 이후에 국조실 종합검토 진행
 - (각 소관 부처) 복합화 대상시설 13종에 대한 검토 진행
 - (균형위) 전반적 검토 및 컨설팅 진행
 - (교육부) 금년도 역점사업인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별도 검토
 - (국조실) 전문가, 기관이 참여한 종합검토를 진행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관련 업무 전반 지원)



[그림 4-10] 종합검토 절차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11

■ 종합검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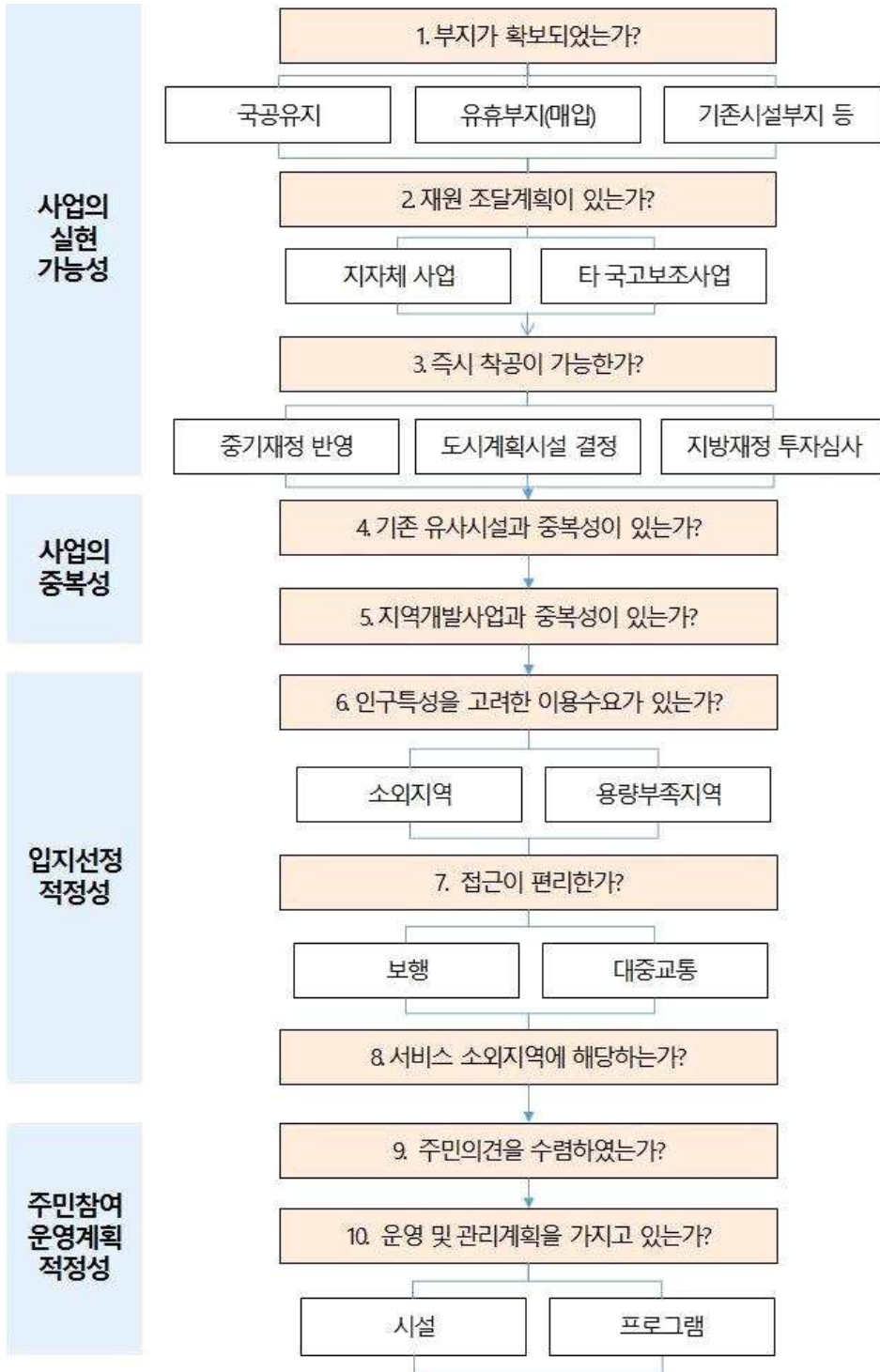
- (1차) 지자체 제출 사업계획서 종합표 작성
- (2차) 사업별 자체검토서 내용 입력
- (3차) 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서 분석
 - 자체검토 결과 검증 및 특이사항 등 정리
- (4차) 부처 및 균형위 검토결과 취합 및 정리
 - 정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
 - 종합검토위원회 심의 시 고려 및 논의 필요사항 정리
- (5차) 종합검토위원회 개최

■ 종합검토 총괄(표) 작성

- 부처별·균형위 검토결과 자체검토서 검증 결과, 국조실·건축공간연구원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종합검토위원회 심의 시 검토 자료로 활용 및 추후 생활SOC 협의회 자료 작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시설내용 : 복합화시설 13종, 타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 등을 명기하며, 복합화 대상 생활SOC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을 주시설로 봄(진하게 붉은 글씨로 표기)
- 부처 검토 결과 : 각 소관부처 별 복합화 대상시설 13종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의견
- 실무 검토 의견 : 전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국조실 종합의견
- 균형위 검토 결과 : 보완필요 항목 및 검토 의견 명기
- 검토 의견 : 종합검토회의, 부처별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한 지자체 즉시 보완사항 및 선정 시 당부 사항 등을 정리

관리번호	지역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시설내용	부처 검토 결과	실무 검토의견	재원조달 가능성		즉시 착공 가능성		도시 계획 시설 결정 (행위 제한)	유사시설 중복 (유사사업 계획)	접근성	종합의견 (보완사항 등)							
	광역	기초						지자체 사업 포함	타 국고 보조 사업	부지 확보	균형위 검토 결과 및 의견				검토의견							
																적정/보통/ 부적절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결정/ 미결정/ 추진중/ 비대상	해당/ 미해당	양호/ 보완필요	
				국민체육센터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	○/△/X	적정/보통/ 부적절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국공유지/ ○사유지/ ○학교부지/ ○공공임대/ ○기존시설부지/ ○기타	결정/ 미결정/ 추진중/ 비대상	해당/ 미해당	양호/ 보완필요	0 / 7 (보완필요 항목 개수 / 균형위 검토항목 7건) (보완필요 항목 3개 이상 용역 포시함)	지자체 즉시 보완 및 통보 사항 (부처 의견, 부지 확보 등)							
			주거지 주차장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	○/△/X																	
			생활문화센터	적격/조건부 적격/부적격	○/△/X																	
			지자체 사업	-	-																세부 검토 의견	사업선정 후 당부 및 통보 사항

[그림 4-11] 종합검토 총괄(표) 양식 예시



[그림 4-12] 종합검토 기준 및 흐름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p.27

2.2 부처별 검토결과

■ 부처별 검토결과 개요²⁶⁾

- 검토 기간 : 2020.05.06.~06.10.
- 검토 방법 : 개별 사업 검토 기준(시설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처별 사업검토
- 검토 내용 : 13종 시설 소관부처 사업계획 검토 결과로, 사업계획에 포함된 13종 시설 사업의 적격 여부 및 사유, 국고보조액 검토 등
- 검토 양식 : 부처 자체 기준(시설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며, 부적격의 경우 사유 표기

[표 4-6] 부처별 검토 양식

구분	우선 순위	복합화 사업명	국고보조(백만 원)		비고 (부적격 사유 등)
			당초	조정	
적격 (○)	1				
조건부 적격 (△)	2				
부적격* (X)					

■ 균특회계 시설 4종 검토결과

- (생활문화센터) 적격 10건, 조건부 적격 65건, 부적격 4건으로, 부지 미확보 및 투자 심사 미이행으로 인한 균특예산 미확보로 인한 조건부 적격이 가장 많음
 - 조건부 적격 : 부지 확보(26건), 투자심사 이행(44건), 예산한도 조정(39건), 민원 해소(1건) 등
 - 부적격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 시·도 미편성
- (공공도서관) 적격 9건, 조건부 적격 23건, 부적격 1건
 - 조건부 적격 : 부지 확보(5건), 투자심사 이행(22건), 예산한도 조정(9건) 등
 - 부적격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 시·도 미편성
- (작은도서관) 적격 4건, 조건부 적격 38건, 부적격 2건
 - 조건부 적격 : 부지 확보(12건), 투자심사 이행(17건), 예산한도 조정(28건) 등
 - 부적격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 시·도 미편성
- (주거지주차장) 적격 30건, 부적격 7건
 - 부적격 : 균특예산 미반영(4건), 수급조사 미이행(2건), 입지 부적정(인천검단산단) 등

26) 국조실 내부자료(20.6.8) 참고

■ 비균특회계 시설 9종 검토결과

- (국민체육센터) 적격 16건, 조건부 적격 3건, 부적격 1건(수영장 미설치로 시설 조건 미준수)
- (주민건강센터) 적격 6건, 조건부 적격 3건, 부적격 4건
 - 조건부 적격 : 대지 확보(모두 매입절차 진행 중)
 - 부적격 : 입지 부적정, 대지 미확보, 기존시설 중복성, 면적 등 시설지침 미충족
- (국공립어린이집) 적격 8건, 조건부 적격 8건
 - 조건부 적격 : 1층 설치(6건), 정원 증원(2건), 지방비 확보계획 구체화(1건)
- (다함께돌봄센터) 적격 48건, 부적격 1건(초등학교에 설치 불가)
- (가족센터) 적격 17건, 조건부 적격 11건
 - 조건부 적격 : 부지 확보(10건), 시설규모 조정(6건)
- (공동육아나눔터) 적격 19건, 부적격 2건(가족센터와 별도 시설 아님)
- (공립노인요양시설) 적격 2건, 부적격 1건(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추가 설치 필요)
- (전통시장주차장) 부적격 2건
 - 부적격 : 주차면수 충분(1건), 복합화 미 해당(1건)
- (로컬푸드복합센터) 적격 3건

■ 그 밖의 복합화사업 검토결과

- (학교시설 복합화) 적격 13건
 - 다만, 청양군 정산中(폐교) 및 봉화군 서벽初는 시설 부적격에 따른 보완 필요
-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적격 3건
 - 다만, 평택시 늘찬돌봄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1층 설치 조건부 적격
- 종합 의견
 - 개별시설 381건 중 적격 187건, 조건부 적격 169건, 부적격 25건
 - 조건부 적격은 부지 확보, 예산 조정 등으로 대부분 실현 가능하나, 부적격 사항은 예산 편성, 시설조건 준수 등 지자체 보완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변경 등 보완 검토 필요

2.3 균형위 검토결과²⁷⁾

■ 균형위 검토결과 개요

- 일정 : 20.5.20~6.2
- 검토 방법
 - 균형위 지역전문가(균특회계 예산편성 검토위원, 복합화사업 컨설팅 위원) 등을 중심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검토 위원회'²⁸⁾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실시
 - 개별 시설이 아닌 복합화 사업 단위로 지자체가 국조실에 제출한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서 및 자체검토서 검토
- 검토 지표
 - 검토 지표 7건 중 4건 이상 해당하는 사업은 쟁점 사업으로 종합 총괄표에 명기
 - 입지 적정성 : 입지 선정의 적정성, 주민수요 반영 및 주민참여의 적정성
 - 사업기획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신속 실현 가능성, 사업의 투자규모 적정성
 - 성과창출 가능성 : 시설 건립 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성과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여부

[표 4-7] '21년도 사업 균형위 검토지표 세부내용

① 입지선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지 • 주요 복합화시설 이용수요 측면에서 수요계층의 인구밀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 등 • 서비스 소외지역 및 취약지역 등 배려
② 주민수요 반영 및 주민참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구성, 위치선정, 운영계획 수립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 주민 의견수렴·실질적 참여 과정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화시설의 설립 목적 및 필요성 등 명확성, 사업목표 및 이에 근거한 시설의 공급계획 구체성 여부 • 국가균형발전계획, 시·도 발전계획, 생활SOC 3개년 계획 등 상위계획,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④ 사업의 신속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 여부 또는 부지확보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지방비 매칭 등 자원 조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 이행 가능성, 민원 등 기타 장애요인 여부 등
⑤ 사업의 투자규모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 사업별 기준에 따른 국비, 지방비 등 투자규모 적정성
⑥ 복합화 시설 건립 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여부 •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 여부
⑦ 성과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을 통한 지역 내 성과(지역의 취약한 생활기반·환경 개선 등) 창출 및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성 •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 기여도 등

27)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제24차,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전심사 결과 및 의견(안)”, 내부자료.

28) 4개 분과, 총 24명(분과장 포함 위원 6명)으로 구성

- 검토 양식 : 검토 지표 7개 중 보완 필요 및 적정 항목 명기 및 총평 작성

[표 4-8] 균형위 검토 양식(예시)

순번	시군구	사업명	포함시설	국비 총액 (백만 원)	지방비 총액 (백만 원)	종합의견
기초-1			(예시)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지자체자체사업(공 공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총평(예시) - 검토지표 7개 중 적정 7개, 보완필요 0개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설문조사결과와 사회체육시설 운영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우수함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언(예시) - (운영계획의 적정성) 인근 유사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 필요, 그리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 주민 의견을 근거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운영계획 내용이 공간기획과 설계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균형위 검토의견 종합

- 대부분 사업이 복합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 준비도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적극적인 사업선정 및 예산 편성 필요
- 157개²⁹⁾ 복합화 사업을 7개 지표별로 검토한 결과, 4개 이상 적정한 사업은 141개(약 90%), 이 중 모든 지표가 적정한 사업은 22개
- 특히, 입지적정성, 사업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투자규모 적정성, 성과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등은 보완필요 사업이 전체 사업의 30% 이하로 검토됨
- 그러나, 주민수요 및 주민참여, 건립 후 운영계획 등은 40% 이상 사업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사업 선정 및 실행 과정에서 보완 필요

■ 제도개선 과제

- 지자체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한 복합화 대상 시설 확대 검토(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문체부 체육진흥시설, 문체부 꿈꾸는 예술터 등)
- 재정지원 합리화 차원에서 낙후지역 배려 필요, 국비보조 사업별 한도 폐지 및 조정
- 지자체 사업 준비 충실성 도모를 위하여 일정 조정 필요

29) 균형위 사전검토 당시(05.20.~06.02.) 검토가 가능했던 사업은 157건임

2.4 종합검토회의

■ 개요

- 일시 : 20.6.30.(화), 10:00~16:00
- 목적 : 신청 사업계획 보완·개선 및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등
- 검토 방법 : 지자체별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서, 종합검토 총괄표 등을 토대로 심층 검토 사업 유형별 보완·개선 방안 논의
- 검토위원 : 11명 (지역개발, 건축, 공유재산, 문화·건강, 교육시설, 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³⁰⁾



[그림 4-13] 종합검토회의의 현장 사진

■ 검토 사항³¹⁾

- 부지 확보 미흡 : 사업부지 전체가 미확보 상태이거나 확보율이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매매협약서 증빙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경우
- 접근성 미흡 : 보행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열악한 입지로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 민원발생 우려 : 주민 수요반영 부족 및 기타 이유로 주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30) 김성주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주진 연구위원(LHI), 김지영 소장(정립종합건축사사무소), 안우성 대표(온고당 건축사사무소), 오윤경 실장(한국행정연구원), 유나경 소장(피엠에이엔지니어링), 유용상 소장(사회적협동조합 동지), 이철재 교수(호서대), 임유경 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임현성 소장(공간연구소 올림), 장옥연 대표(온공간연구소)

31) 부처별·균형위 및 건축공간연구원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 유형

[표 4-9] 종합검토회의 심층검토 유형

유형	세부사항 (예시)		사업 수
부지 확보 미흡	부지 미확보	사업부지가 사유지로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가 불충분한 경우	8
		사업부지가 국공유지 또는 개발사업 부지로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가 불충분한 경우	10
	부지 부분확보 (부지 확보율 70% 미만)	미확보 부지가 국공유지로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가 불충분한 경우	0
		미확보 부지가 사유지로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가 불충분한 경우	10
접근성 미흡	대중교통, 보행 등 접근성이 열악한 경우		5
민원발생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 주요 논의 결과

- 부지 확보 미흡 : 부지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추후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량적 평가지표 고안하는 방향 필요
- 접근성 : 지역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이용률 측면의 접근성 관련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 민원발생 우려 :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의견 수렴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 필요
- 지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 지자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기타 사항 : 생활SOC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3개년 이후의 정책 방향 모색 필요 등 향후 생활SOC 복합화 정책 관련 제언
 -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방안 : 복합화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고보조사업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 규모 확장, 예산집행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대상지 인근 유사시설과의 차별화 방안 : 기 조성 시설과 신규 시설의 일부 기능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사업관리방안 모색 필요
 - 복합화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용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반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복합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유도 방안, 인접 시설과 연계방안 등

2.5 쟁점사업별 보완사항

■ 지자체별 보완사항 요청

- 종합검토회의(6.30.) 이후 지자체별 즉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조치 요청
- 17개 지자체(광역시·도)별 보완사항 요청 총괄표 일괄 배부하여 취합 및 증빙자료 확인(7.24.)

[표 4-10] 지자체별 보완사항 요청 총괄(표) 양식 예시

관리 번호	지역		사업명	사업비 (백만 원)	시설내용	보완 요청사항	보완 결과 및 조치계획 등	비고 (증빙 첨부)
	광역시	기초						
	시/도	○○시/ 군/구		○○○○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부지) 사업부지 전체가 미확보 상태로 부적격(토지소유주와의 매입 협약 증빙자료 제출시 보완 검토)	매입계획 공문(20년 00월 매입계약 체결 예정) 첨부제출했으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토지매입예산 편성하여 연내 매매계약 체결 예정	매입계 획서 (공문)

■ 예산 미확보(32건)

- **균특시설(12건)** : 생활문화센터 6개, 주거지주차장 4개, 공공도서관 2개
 - 울산시 문화예술플랫폼(생활문화센터 예산 과소 반영), 제주시 시민회관 (공공도서관 미반영), 옥천군 생활문화체육건강센터(주거지주차장 미반영) 등
- **비균특시설(국민체육센터 20건)**
 - 진도군 노인요양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예산 미반영), 인천 동구 송림골 꿈드림센터(국민체육센터 예산 미반영), 서울 중구 신당사거리 생활SOC복합화시설(국민체육센터 미반영) 등
- (대책) 기재부 협의를 통해 미확보 예산을 최대한 반영
 - 균특시설(3종) 약 300억 원, 비균특시설(국민체육센터 등) 약 62억 원 소요 예상

■ 부지 미확보(12건)

- **국유지(1건)**
 - 서울 동작구 상도3동복합화시설(구청에서 무단점유 중, 先변상 필요)
- **사유지 확보 70% 미만(11건)**
 - 부산서구 복합문화센터, 울산 동구 남목문화체육센터, 삼척시 복합문화 센터, 제천시 생생플러스, 대전중구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 순천시 조례지구 복합플랫폼, 포항시 다원복합센터 등

- (대책) 부지 대부분이 미확보된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적격 처리하되 보완기회를 부여하며, 사용 협의 중이거나 사유지가 70% 이상 확보된 사업은 추진계획 요구

■ 시설조건 미흡(9건)

- 주거지주차장 등 소관부처 요구조건 미이행
 - 주거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미이행(광주 남구·북구, 대구 달서, 전남 곡성 등 4건)
 - 작은도서관 시설조건 미충족(광주 서구 송당경로당 1건)
 - 주민건강센터·입지 미충족(청양군 1건) 등
- (대책) 사업계획 변경 등 지자체에 보완기회 부여 후 미보완 시 부적격 처리

■ 기타사항(3건)

- 주민민원 예상(1건)
 - 서울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양주시에 노인요양시설-생활문화센터 복합화 추진)
- 접근성 미흡(2건)
 - 순창군 실편드종합체육관, 청도군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 (대책) 지자체에 보완방안(의렴수렴 방안, 대중교통계획 등) 제출 요구

■ 그 밖의 지자체 부가조건

- 균형위,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 이후 지속적인 보완 필요 사항 도출
- 주요 내용 : 연계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지자체사업 또는 인근 기존시설과의 시너지 제고 및 차별화, 주민참여, 운영내실화 등 권고
- 그 밖의 지자체 부가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통보하고 보완사항 이행 점검

2.6 검토결과 종합

■ 적격 149건(88.7%), 부적격 19건(11.3%)

- 적격(149건): 복합화사업으로 선정 가능하며, '21년부터 사업 추진
- 부적격 사업 : 철회 4건(2.4%), 부지 미확보 8건(4.7%), 복합화 조건미흡 7건(4.2%)
 - 20년 : 신청 312건 최종 289건(98.4%) 선정, 철회 5건, 부적격 8건

■ 부적격 사업별 세부사항

- 철회(4건): 부지, 재원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철회
- 부지 미확보(8건): 부지 매입 절차 연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우려되는 경우로, 미확보 유형은 국·공유지(3건), 사유지 확보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5건)으로 구분됨
- 조건미흡(7건): 복합화시설(2개 이상) 중 개별시설 1개만 적격인 경우로, 지자체 의사에 따라 보완하거나 단일시설로 추진

[표 4-11] 국조실 검토결과 종합(단위 : 건)

구 분	신청	적정 (선정)	부적정	
			계	해당 사업 및 사유
서울	14	12	2	① (동작구)상도3동: 부지 미확보 ② (관악구)미성동 노후청사: 사업 포기
부산	17	16	1	① (서구)부산복합문화공간: 사업 포기
대구	2	1	1	①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포기
인천	11	10	1	① (서구(시직접))"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복합생활문화센터: 부지 미확보
광주	6	5	1	① (광주)효령노인복지타운: 주민건강센터 탈락으로 복합화 조건 미충족
대전	4	2	2	① (중구)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미확보 ② (중구)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미확보
울산	4	2	2	① (울산)문화예술플랫폼: 부지 미확보 ② (동구)남목 문화체육센터: 부지 미확보
세종	1	1		
경기	20	18	2	① (성남시)대장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탈락으로 복합화 조건 미충족 ② (포천시)함께하는 생활건강센터: 사업 포기
강원	14	13	1	① (춘천시)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탈락으로 복합화 조건 미충족
충북	13	12	1	① (보은군)더누리플랫폼 건립 및 전통시장주차장: 전통시장주차장 탈락으로 복합화 조건 미충족
충남	6	6		
전북	13	13		

전남	14	13	1	① (순천시)조례지구 복합플랫폼: 부지 미확보
경북	12	9	3	① (영주시)체육문화복합센터: 부지 미확보 ② (예천군)통합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탈락으로 복합화 조건 미충족 ③ (봉화군)서벽초 어린이행복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탈락으로 복합화 조건 미충족
경남	14	13	1	① (합천군)삼가작은도서관: 복합화조건 미충족
제주	3	3		
계	168	149 (84%)	19 (9.8%)	

3. 20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및 시사점

3.1 20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 선정결과 개요

-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최종사업 선정
 -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 부처 차관, 관련 청 차장이 참석(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149건으로 '20년에 선정된 289건 보다는 감소
 - 복합화사업 신청 건수는 총 168건이었고 48건 사업에 대한 보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 미확보, 복합화 사업 조건 미흡 등 19건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는 총 4,092억 원이며, '21년에 정부안 반영은 1,098억으로 '20년도 선정사업의 예산 규모 8,504억 원 보다는 감소
- 복합화사업의 개별시설별 구성현황은 20년도 대비 절반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등이 다수를 차지
- '21년 신규시설 유형은 총 7건 선정
 - 공립노인요양시설 3건, 로컬푸드복합센터 3건, 전통시장주차장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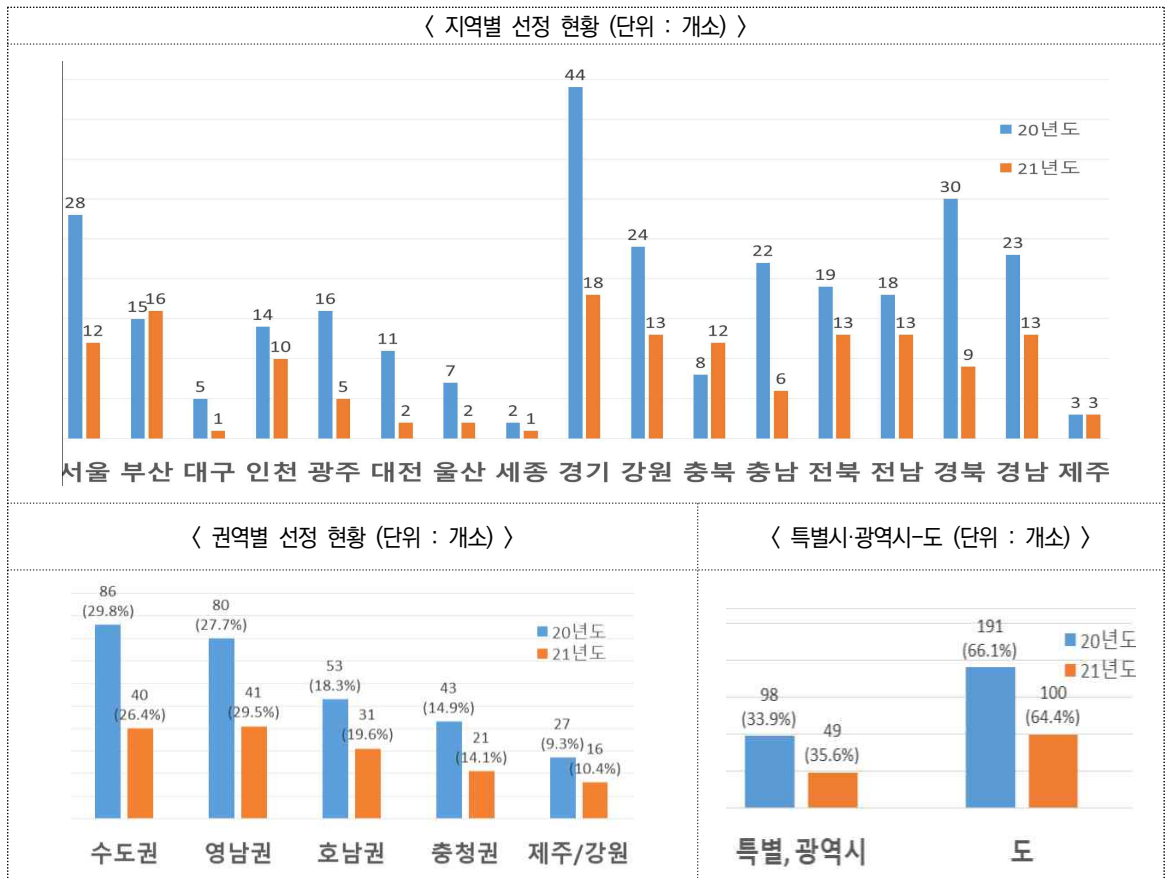
■ 시도별 선정 현황

- '20년도 대비 사업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1건), 충북(4건)이며, 제주는 동일한 수준임
- '20년도 대비 사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28건→12건), 광주(16건→5건), 대전(11건→2건), 경기(44건→18건), 충남(22건→6건), 경북(30건→9건) 등이 해당

[표 4-12] 시·도별 선정 현황('20년, '21년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년 (A)	28건 9.7%	15건 5.2%	5건 1.7%	14건 4.8%	16건 5.5%	11건 3.8%	7건 2.4%	2건 0.7%	44건 15.2%
'21년 (B)	12건 8.1%	16건 10.7%	1건 0.7%	10건 6.7%	5건 3.4%	2건 1.3%	2건 1.3%	1건 0.7%	18건 12.1%
증·감 (B-A)	△16건	1건	△4건	△4건	△11건	△9건	△5건	△1건	△26건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년 (A)	24건 8.3%	8건 2.8%	22건 7.6%	19건 6.6%	18건 6.2%	30건 10.4%	23건 8.0%	3건 1.0%	289건 100.0%
'21년 (B)	13건 8.7%	12건 8.1%	6건 4.0%	13건 8.7%	13건 8.7%	9건 6.0%	13건 8.7%	3건 2.0%	149건 100.0%
증·감 (B-A)	△11건	4건	△16건	△6건	△5건	△21건	△10건	0건	△140건

[표 4-13] 지역별 선정 현황 그래프



■ 사업예산 현황³²⁾

- 총 국비 기준으로 균특포괄보조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공공도서관이며,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일반보조사업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이며, 다음으로 가족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함

[표 4-14] 사업예산 현황 (20.09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년도 선정 사업 (289개)		'21년도 선정 사업 (149개)		증감
	총국비(A)	'20년 국비	총국비(B)	'21년 국비	총국비(B-A)
복합화대상 시설 합계(C+D)	8,504	3,291	4,092	1,098	△4,412
균특포괄보조(C)	4,634	1,970	2,374	770	△2,260
공공도서관	2,031	821	1,070	290	△961
작은도서관	94	26	44	17	△50
생활문화센터	1,150	536	639	248	△511
주거지주차장	1,359	588	621	215	△738
일반보조사업(D)	3,870	1,321	1,718	328	△2,152
국민체육센터	2,670	835	1,000	104	△1,670
국공립어린이집	137	70	51	26	△86
주민건강센터	122	66	97	35	△25
다함께돌봄센터	47	3	22	1	△25
공립노인요양시설 (신규)	0	0	149	31	149
공동육아나눔터	0	0	0 (운영비)	0 (운영비)	0
가족센터	894	348	378	122	△517
전통시장주차장 (신규)	0	0	9	0	9
로컬푸드복합센터 (신규)	0	0	13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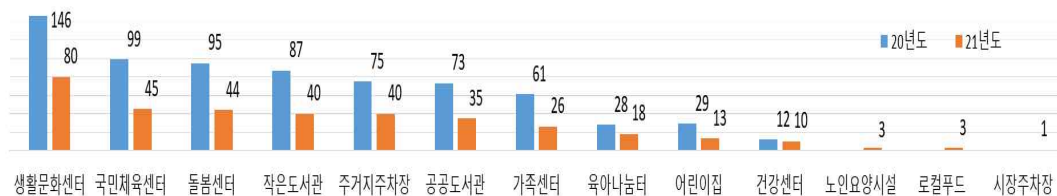
32) 표 및 그림 출처 : 국조실 생활SOC추진단(2020), “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안)”, 내부자료, p.16

■ 시설별 구성 현황

-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20년도 사업과 '21년도 사업이 거의 동일한 수준임

[표 4-14] 시설별 구성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년도(A)		'21년도(B)		계 시설수
	시설수	비중	시설수	비중	
생활문화센터	146	20.7%	80	22.3%	226
국민체육센터	99	14.0%	45	12.6%	144
다함께돌봄센터	95	13.5%	44	12.3%	139
작은도서관	87	12.3%	40	11.2%	127
주거지주차장	75	10.6%	40	11.2%	115
공공도서관	73	10.4%	35	9.8%	108
가족센터	61	8.7%	26	7.3%	87
공동육아나눔터	28	4.0%	18	5.0%	46
국공립어린이집	29	4.1%	13	3.6%	42
주민건강센터	12	1.7%	10	2.8%	22
공립노인요양시설 (신규)	-	-	3	0.8%	3
로컬푸드복합센터 (신규)	-	-	3	0.8%	3
전통시장주차장 (신규)	-	-	1	0.3%	1
계	705	100%	358	100%	1,063



[그림 4-14] 시설별 선정 현황('20년도, '21년도 비교)

3.2 2021년도 선정 복합화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상위 5개 유형 비중은 20년도 사업과 유사

- 다수의 지자체가 신청한 상위 5개 유형은 20년도와 동일하게 구성됨
 - 생활문화센터(22.3%)→국민체육센터(12.6%)→다함께돌봄센터(12.3%)→작은도서관(11.2%)
→주거지주차장(11.2%)
- 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을 결합하고 주거지 주차장을 연계하여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화시설 조성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립노인요양시설 등 신규 3개 유형은 상대적으로 미흡

- 신규 추가 사업인 공립노인요양시설(3건), 로컬푸드복합센터(3건), 전통시장주차장(1건)은 신청 지자체가 소수에 불과
- 해당 사업의 신청이 미흡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해당 시설의 이용 대상이나 지역이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다수의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에 비해 다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
 - 신규 3개 사업은 복합화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아 복합화의 장점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한계

■ 생활SOC와 지자체 사업을 복합화한 경우가 다수

- 주민센터, 커뮤니티 시설 등 지자체 시설과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경우도 다수
- 다만, 지자체 사업의 비중이 생활SOC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사전준비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생활SOC 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학교시설 복합화와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 신청 건수 저조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12개소,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시범사업) 3개소로 신청 건수가 저조하며, 이는 교육청, LH 등 다른 주체와 사전협의를 필요하고 입지가 한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사업유형의 경우 사전협의 및 대상 물색을 위한 사업추진일정 조정과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의체계 구축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국유지 활용의 어려움 확인

- 국유지 활용 사례의 경우 총 11건 중 국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사유지 및 군유지 확보부지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결합하여 활용함
- 지자체의 입장에서 국유지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국유지 소관 부처나 기관과의 협의도 기록하지 않은 측면에서 사업 입지에 일부 포함된 국유지를 결합하는 수준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부지확보가 미흡한 사업이 다수

- 미선정 사업 중 상당수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부지확보 문제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사시설 및 유사계획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전략 미흡

- 선정된 사업들 중 주변에 유사한 시설이 건립되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다수 있었으나,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유사시설 및 계획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은 다소 미흡함
- 실질적으로 유사시설 및 유사계획과의 중복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이나 부처별 검토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기에는 한계

4. 2021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4.1 2020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방식³³⁾

■ 협약체결 추진배경

- 다부처의 여러 사업이 하나의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범부처 단위의 공동지원 및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 필요
- 균형위 주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지자체 대상 사업을 묶어서 기획한 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다년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 추진 필요성 제기



[그림 4-15] 지역개발투자협약 개념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명회 자료”, 내부자료, p.16.

■ 협약체결 방식 개요

- (협약당사자)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他 지역 단위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중앙부처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
- (주요내용) 협약서(본문),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계획 및 지역 단위 지원사업 계획(사업계획은 간략히 첨부)으로 구성
- (추진절차) 협약안 마련(지자체),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체결안 마련(국토부), 균형위 심의·의결(균형위) 등 균특법 상 절차(약 4~5주 소요)에 따르되, 준비되는 지자체부터 협약행사 추진

33)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방향, 내부자료

■ 협약 당사자

- 지자체 : 광역지자체(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172개 시·군·구)
- 중앙부처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 생활SOC 복합화 10종 시설 소관 부처

- ▷ **문체부**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 **복지부** :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 **여가부**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 ▷ **국토부** : 주거지주차장

- 생활SOC 복합화 제도개선 지원 부처

- ▷ **국조실** : 생활SOC 사업 총괄관리
- ▷ **교육부** : 학교부지·시설 복합화, 他 공공시설(연합기숙사)사업 연계
- ▷ **행안부** : 지방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주민·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참여
- ▷ **국토부** : 디자인품격 향상, 녹색건축물 건립

- 지역단위 지원사업 소관 부처

- ▷ **농림부** :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 **해수부** : 어촌뉴딜300
- ▷ **국토부**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 협약의 주요 내용

-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
- 학교시설복합화, 타 공공시설사업과 연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운영 등에 관한 공동 노력
-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 특성 고려한 디자인 품격 향상 도모
- 주민·사회·경제적 조직 참여 등 지역주민의 주도적 계획·운영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생활혁신 공간 조성 노력
- 지역 곳곳에서 모든 주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지역 단위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 협력
 - 정부·광역지자체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사업집행 상황을 점검하되, 재정집행 관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사업별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절차로써 합

- 협약의 변경·해약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일반지침 준용
 - (일반지침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및 해약) 사업비 또는 사업면적 30% 이상, 협약기간 1년 이상 변경 시, 당사자 간 해약 합의 시 균형위 심의·의결로 변경·해약 가능

■ 협약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 : 협약체결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균특법 상 지역발전투자협약 법정절차에 따라 추진(Bottom up 방식)
 -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의결로 협약안을 마련하여 신청, 균형위 전체 회의 의결(국토부가 주관부서로서 안전 상정)로 최종 협약안 확정
- '19년까지 신청 건에 대해 내년 초 협약 체결 행사 추진
-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일률적으로 협약대상이 되는 중앙주도(Top down)의 추진방식 또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주기적 집행관리 지양
- 추진절차 : 사전준비 → 협약안 마련 → 협약체결
 - (사전준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표준안 마련(11월 2주) → 지자체·부처 설명(11월 3주~4주), 사업계획서 보완(~12월 2주)
 - (협약안 마련) 지자체 협약안 마련·제출(12월 3주) → 관계부처 검토(12월 4주) → 균형위 검토(1월 1주) → 국토부-지자체 최종협약안 마련(1월 2주) → 균형위 심의·의결(1월 3주, 서면)
 - (협약체결)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약 체결(1월 4주)

■ 협약안(예시)

충청북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되는 “충청북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충주시·제천시·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단양군(이하 “지자체”라 한다), 정부(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이하 “정부”라 한다)는 향후 동 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1.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한다.
2.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을 확보한다.
3.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부지 시설복합화, 다른 공공시설사업과 연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미세먼지와 황사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주변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
5.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주민참여, 사회적경제적조직 참여 등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생활혁신 공간으로 조성·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곳곳에서 모든 주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지역단위 지원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도시, 농촌], 어촌뉴딜 300, 농촌신활력플러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연계·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정부와 충청북도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사업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집행 관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사업별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절차로써 하되,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8. 협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해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2019-631호)」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및 해약의 규정에 따른다.

4.2 2021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방식 검토

■ '21년도 협약체결 추진방식 개선방안

- '21년도 사업부터는 국무조정실 총괄로 모든 사업추진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협약체결 방식 또한 국조실 주관의 체계로 전환 필요
- '20년도의 경우, 협약의 근거를 균특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근거로 추진하였으나, 생활SOC복합화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부처와 지자체간 MOU 체결의 성격으로 협약체결 및 관리 가능
- 협약대상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소관부처, 생활SOC 활성화 정책 지원부처, 지자체(광역시, 기초)로 하고, 지역 단위 지원사업 소관 부처는 제외
- 협약서 본문의 내용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사항으로 구분하여 명기

- 정부의 역할
 - 행정적·정책적 지원
 - 학교시설 복합화·공공임대주택 복합화·국유지 및 공공위탁개발 활용·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등에 관한 공동 노력
- 지자체의 역할
 -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혁신 공간으로 조성·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선정 조건에 제시된 보완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생활SOC 복합화사업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총괄부서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 공동협력사항
 -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을 확보
 - 국무조정실과 광역지자체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초지자체는 이에 협력
 -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미세먼지와 황사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주변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등을 통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곳곳에서 모든 주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합화사업과 지역단위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력

- 협약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차년도 이후 사업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표기하도록 개선
 - 부지 및 투자재원(총사업비, 국고지원액 및 지방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확보계획 명기
 - 지자체의 총괄적인 사업추진과 원활한 일정관리 등을 위하여 협약내용에 사업별 총괄부처와 주요 사업추진 계획 명기
 - 시설별 특수사항을 추가하여 타 국고조보사업에 대한 사항과 사업 선정 시 제시된 보완사항과 조치계획 명기

- '20년도의 경우, 협약의 주요한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2019-631호)」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 및 해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기하였으나, '21년도부터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
 - '20년 협약체결 시 중대변경은 균형위 심의를 고치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은 협약 단위(광역시·도) 전체 사업 기준으로 ①총사업비(국비+지방비) 또는 사업면적 30% 이상 변경, ②협약 기간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단순 이월·재이월 제외)로 규정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생활SOC 정책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점과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 주요한 변경 및 해약에 관하여는 생활SOC 정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개별 사업의 내용에 대한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변경하고, 지자체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도록 함

■ 협약체결 방식 개요

- (협약당사자)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총 149건) 관련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협약 내용)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사항, 재정적·절차적 준수사항 등을 명시
- (추진절차) ①지자체가 국무조정실에 협약안 제출 → ②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 ③생활SOC 정책협의회 의결 → ④업무협약 체결

■ 협약 당사자

- 지자체 : 광역지자체(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118개 시·군·구)
- 중앙부처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 생활SOC 복합화 13종 시설 소관 부처

- ▷ **문체부**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 **농식품부** : 로컬푸드복합센터
- ▷ **복지부** :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요양시설
- ▷ **여가부**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 ▷ **국토부** : 주거지주차장
- ▷ **중기부** : 전통시장주차장

- 생활SOC 복합화 활성화 지원부처

- ▷ 국조실 : 생활SOC 사업 총괄관리
- ▷ 기재부 : 국유지 활용
- ▷ 교육부 : 학교부지·시설 복합화
- ▷ 행안부 : 공공위탁개발 활용, 지방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 ▷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디자인품격 향상, 녹색건축물 건립

■ 협약의 주요 내용

- (본문) 복합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사항, 재정적·절차적 준수사항 등을 명시
 - 지역 자율성 보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중앙주도·부처 칸막이식 → 지역 주도·통합패키지)

제1조(목적)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협약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

제2조(협력사항)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협력

1. 정부의 역할
 - 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정책적 지원
 - 나.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유지 및 공공위탁개발 활용,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노력
2. 지자체의 역할
 - 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혁신 공간으로 조성·활용 노력
 - 나. 사업선정 시 제시된 보완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총괄부서 지정
3.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사항
 - 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투자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 확보
 - 나. 재정집행 관리는 기존 사업별로 실시하는 일반절차를 따르고, 성과 달성을 위해 집행상황 점검 등 실시
 - 다.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품격 향상 도모
 - 라.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지역단위 지원사업 연계 추진 노력

제3조(협약의 변경·해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생활SOC 정책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지. 다만, 경미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

제4조(효력)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

- (부속서류) 지자체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계획
 - 부지,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주요 사업추진계획, 시설별 특수사항 및 사업선정 조건(이행사항) 등 포함

■ 협약 체결절차

- 협약체결 추진계획 수립·통보(11월 초)
 - 협약체결 추진절차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 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관계부처 통보
- 협약안 마련·검토('20.11월 중~'21.1월 초)
 - 협약 표준안 마련 및 지자체 제공(11월 중순, 국조실)
 - 협약안 초안 작성·제출(12월 초, 지자체 → 국조실)
 - 국무조정실 자체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12월말)
 - 지자체와 협약안 최종 협의('21.1월 초)
- 협약안 확정 및 협약 체결('21.1월 말)
 - 협약안 확정('21.1월 말, 생활SOC 정책협의회)
 - 업무협약 체결('21.1월 말, 관계부처-지자체)

■ 협약 이행점검

- 사업별 관리는 각 부처에서 보조금 교부, 재정집행 점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일반적인 국고 보조사업 집행 절차를 통해 실시
- 국조실은 업무협약을 기초로 사업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중앙부처 간 의견 조정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협약서 본문)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사항을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한 협약 특성을 고려할 때 본문 변경은 불필요
 - 다만,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생활SOC 정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 변경 및 해지 가능
- (부속서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라 지자체-부처 간 협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협약서 부속서류에 반영 필요
 - 부속서류(사업계획서)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협약체결 당사자(지자체-소관 부처) 간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부속서류의 변경사항 및 사유를 국무조정실에 제출

제5장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1.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2. 22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1.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1.1 조사의 개요

■ 목적

- 지금까지 진행된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방식 및 추가적인 사업 추진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자, 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인식을 조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
- 도출 사항
 -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도출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식 개선방안 도출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생활SOC 복합화사업 담당자
 - 국조실 및 부처별 생활SOC 복합화사업 담당자
 - 생활SOC 자문위원 및 종합검토회의 자문위원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서면자문을 선 진행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개별 자문회의 실시
 - (설문조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생활SOC 복합화사업 담당자
 - (서면자문-1) 국조실 및 부처별 생활SOC 복합화사업 담당자
 - (서면자문-2) 생활SOC 자문위원 및 종합검토회의 자문위원
 - (추가 자문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개별 자문회의 실시

■ 주요 조사내용 및 기간

- 대상별 조사 방식 및 기간을 달리하여 설문조사 및 서면자문을 실시하였음

[표 5-1] 대상별 주요 조사내용

그룹 구분		주요 조사내용	조사 기간
1차 설문조사 (사업 신청)	광역별 생활SOC 복합화사업 담당자	<선정체계 등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일정의 적절성 • 신청 절차의 적절성 • 그 밖의 인센티브 내용 등 선정체계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20.10.14.(수) ~ 10.23.(금)
	'21년도 복합화사업 (선정사업) 담당자	<사업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의 명료성 및 가독성 • (복합화사업 전체) 관련 서식 작성의 용이성 • (시설별) 관련 서식 작성의 용이성 • 그 밖에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관련 개선 필요 사항 	
2차 설문조사 (사업진행)	'20년도 복합화사업 담당자	※ 10월 추진한 2차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조사 시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일정 • 지자체 내 협의체계 • 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 대응 • 지방비 예산 등 지자체 사업 • 교육, 컨설팅, 민간전문가 활용 등 전문성 확보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 절차 이행 • 설계 및 시공 발주 	20.10.23.(금) ~ 11.06.(금)
서면 자문 (중앙)	생활SOC추진단 및 부처별 담당자	※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개선방향 및 방안 예시(일부)를 제시하 고, 중요도 검토 및 추가의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 개선방안 • 사전검증, 중장기확충계획 등 선정 검토 개선방안 • 사업 여건 충족 등 지자체 고려사항 개선방안 • 3개년 계획 이후의 복합화사업 지속 추진방안 • 학교시설 복합화 등 주요 정책 개선방안 등 	20.10.14.(수) ~ 10.23.(금)
서면 자문 (전문가)	생활SOC 전문위원 및 종합검토회의 자문위원	※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도출한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 예시(일 부) 유형별로 적절한 전문가를 선별하여 서면자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 등 지자체 사전 이행사항 관련 개선방안 • 자체검토서 관련 개선방안 • 신규사업 및 중점정책 관련 개선방안 • 복합화사업 취지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관련 개선방안 • 3개년 계획 이후의 복합화사업 지속 추진방안 등 	20.10.14.(수) ~ 10.23.(금)

1.2 지자체 복합화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 결과 : 총 77명(41.6%) 응답

◦ 사업선정체계 및 일정

- 사전준비기간에 대한 만족도 : 만족 59.2%, 보통 27.6%, 불만족 13.2% 순

〈불만족 사유〉

- ▷ 가이드라인 배포 시점부터 사업신청까지 사전준비기간 다소 부족(55.6%)
- ▷ 컨설팅 등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이 부족(30.5%)
- ▷ 지자체 담당자 선정 등 내부 일정 지연(2.8%)
- ▷ 기타(11.1%) (기재부 균특예산 대상시설 한도액 배정 시점과 신청기간까지 기간이 부족했으며, 국조실과 소관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발생 등)

- 보완기간에 대한 만족도 : 만족 50.6%, 보통 40.3%, 불만족 9.1% 순

〈불만족 사유〉

- ▷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46%)
- ▷ 내부 방침 조율(13.5%)
- ▷ 이해관계자(부지 소유주 등)와의 의견 조율(27%)
- ▷ 기타(13.5%) (국조실 종합검토로 단일화된 점은 만족하나, 보완기간 다소 짧음)

- 인센티브 보완 방안 : 전반적인 인센티브비율 상향 및 대상 확대(80.5%)가 필요하다는 의견

〈의견〉

- ▷ 복합화 인센티브 대상 확대(41.6%)
- ▷ 인센티브 비율 상향(39%)
- ▷ 가이드라인 상 인센티브 내용 관련 설명 보완(14.3%)
- ▷ 기타 의견(5.2%) (대상사업시설 확대, 복합화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 상향, 모두 적용 필요 등)

◦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 '지방자치단체 고려사항' 항목에 대한 만족도 : 만족 67.2%, 보통 25.7%, 불만족 7.1% 순

〈불만족 사유〉

- ▷ 예산과 관련하여 국조실 선정 가이드라인과 소관부처의 가이드라인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이해 및 실행이 가이드라인 내용만으로는 어려움
- ▷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어 해석 요구 시 지자체 재량사항인 경우가 있었음
- ▷ Q&A 예시 등 관련자료를 포함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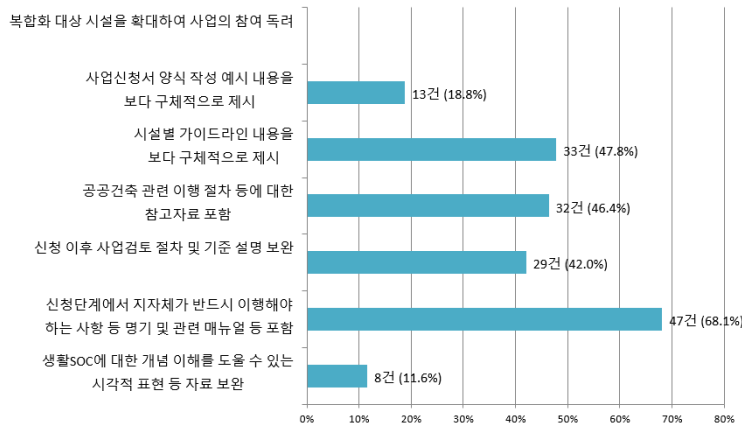
- '사업검토 절차 및 기준' 항목에 대한 만족도 : 만족 85.5%, 보통 11.6%, 불만족 2.9% 순

<불만족 사유>
 ▷ '적정성', '독창성' 등의 항목이 명확한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정량화된 점수표 등의 선정 기준이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함

- '신규 역점사업' 에 대한 애로사항 : 불만족 응답 66건(85.7%)로, 대부분의 사업이 신규 역점 사업 적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됨

<불만족 사유>
 ▷ LH,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 어려움(39.4%)
 ▷ 관련 부지 활용이 어려움(30.3%)
 ▷ 관련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가이드라인 상의 설명으로 이해하는데 한계 발생(13.6%)
 ▷ 기타(16.7%) (기간이 다소 부족하여 관련기관과 협력 어려움, 학교복합화의 경우 학교장 반대, 학생 활동권 보장 등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많아 부처에서 일시적 권한을 갖고 지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가이드라인 보완사항 : 지자체 필수 이행사항 및 관련 매뉴얼 포함, 공공건축 관련 이행 절차에 대한 참고자료 포함 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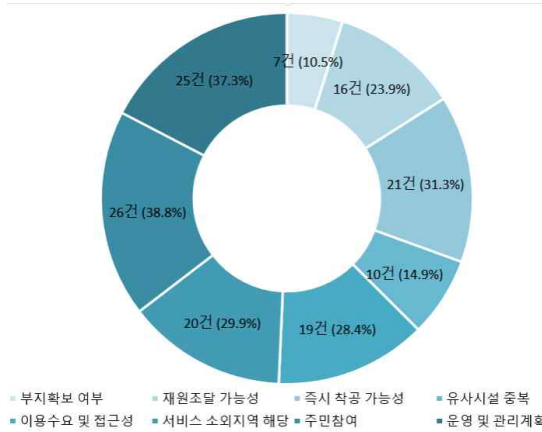


[그림 5-1]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보완사항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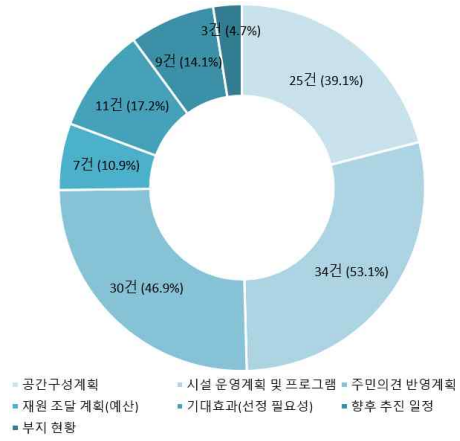
◦ 사업신청양식

- 자체검토서 작성 시 '검증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주민참여'(38.8%)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부지확보 여부'(10.5%)가 가장 낮았음

- 시설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검증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시설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53.1%)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부지현황'(4.7%)이 가장 낮았음



[그림 5-2] 자체검토서 작성항목 평가 응답 분포



[그림 5-3] 시설별 사업신청서 작성항목 평가 응답 분포

- 항목별 양호 판단 기준 :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항목별 양호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기준

- ▷ 부지확보 여부 : 전체 부지를 확보 및 확약한 경우 양호로 판단(64.2%)
- ▷ 주민 참여 :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설문조사 최소 각 1회 이상 시행한 경우 양호로 판단(73.5%)
- ▷ 유사시설 중복 : 근접 거리에 기존 시설 위치하나 세부 기능, 이용층 등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 양호로 판단(58.2%)
- ▷ 접근성 :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위치 시 양호로 판단(33.8%)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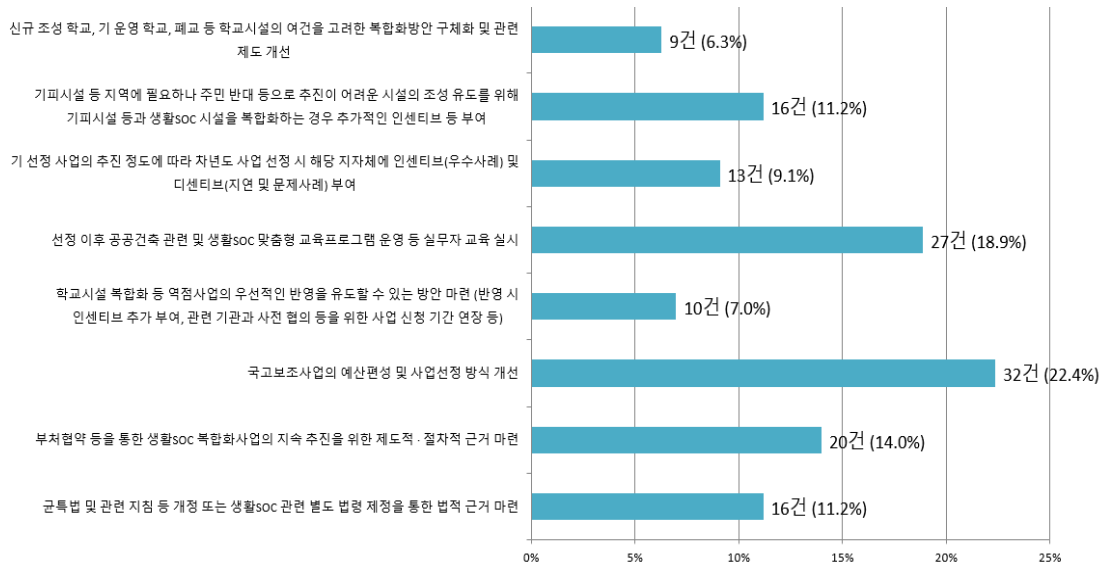
- 사후관리체계 : 제시한 항목(시설 현황 및 신규 적정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정기 및 수시로 진행되는 전문가 컨설팅, 종합 헬프데스크 운영)에 대한 응답이 균등하게 분포

- ▷ 시설 현황 및 신규 적정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37.8%)
- ▷ 정기 및 수시로 진행되는 전문가 컨설팅(30.9%)
- ▷ 종합 헬프데스크 운영(29.4%)
- ▷ 기타(2.9%)

- 사업전담부서 : 전담부서를 마련한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부분 해당사업을 제안한 부서(40.5%) 또는 담당하는 시설 규모가 가장 큰 부서(23.8%)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건축 사업관리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우려

◦ 사업관련 기타 의견

-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사업선정 방식 개선(22.4%)', '선정 이후 공공건축 관련 및 생활SOC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자 교육 실시(18.9%)', '부처 협약 등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절차적 지원 방안 마련(14%)' 등 제시된 방향에 대해 균일한 답변 분포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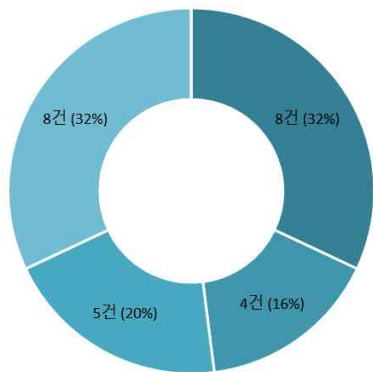


[그림 5-4] 관련 제도 및 정책방향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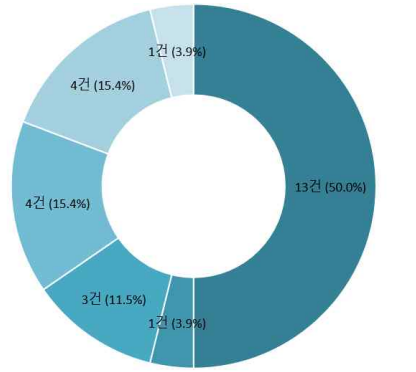
■ 2차 설문조사 결과 : 총 26명(9.2%) 응답

◦ 사업추진과정 상 발생한 애로사항 및 현황

- (사업추진단계) 절반 정도의 사업(48%)이 설계 이전(사업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단계에 해당하여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사업추진과정 상 지연 항목) 절반 정도의 사업(50%)이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업기획 관련' 항목에서 예상 일정보다 지연되었으므로, 관계자 교육 등의 지원 필요



[그림 5-5] 사업추진단계 응답 분포



[그림 5-6] 지연 항목 응답 분포

- 사업추진과정 상 애로사항 : 예상 일정보다 지연된 항목별로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

[표 5-2] 사업추진과정 상 지연된 항목별 애로사항 응답 분포

구분	세부내용
공공건축 사전절차 이행 관련	공공건축 절차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자문 등 사전준비 기간이 길어져 당초 일정보다 지연 (66.7%)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일정보다 지연 (26.7%) 기타(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시 의회, 예산 부서 등 사업계획 승인 시 어려움 발생) (6.6%)
설계 및 시공발주 관련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지 못했음 (70%)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설계공모 방식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10%) 사전절차 및 설계 기간이 지연되어 충분한 시공기간을 확보하지 못했음 (10%) 기타 (10%)
재원 확보 관련	예산과 관련하여 내부 방침 결정이 지연되었음 (63.6%)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변경되어 필요 예산이 증액되었음 (18.2%) 코로나 19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산이 감액되었음 (9.1%) 기타(광역자치단체 보조금(도비) 확보 어려움) (9.1%)
부지 확보 관련	당초 예정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부지 매입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100%)

- 주민의견 수렴 : 대부분의 사업(87.5%)이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 및 민원 발생'(36.4%)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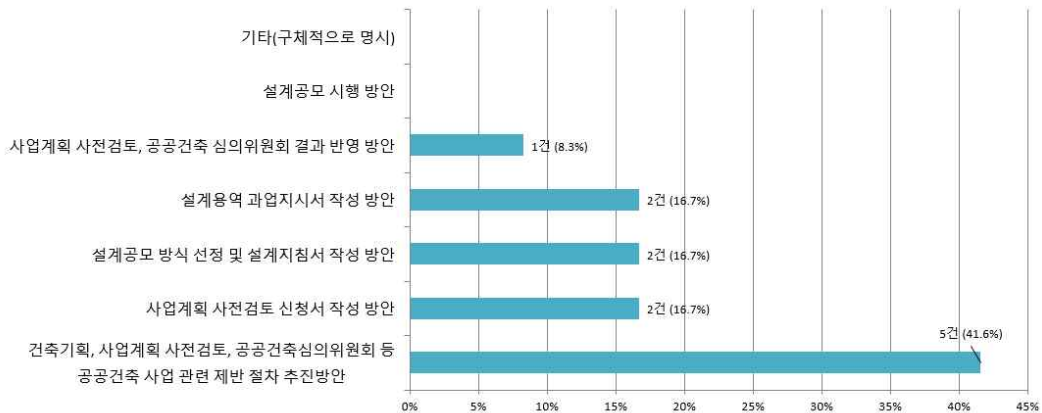
<주민의견 수렴과정 상 발생한 애로사항>

- ▷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 및 민원 발생 (36.4%)
- ▷ 복합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부재 (27.3%)
- ▷ 의견 수렴 대상 선정 (13.6%)
- ▷ 의견 수렴 방식 결정 (9.1%)
- ▷ 기타 (13.6%)

- 운영 계획 : 대부분의 사업(75%)이 운영 주체가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사업 중 절반 정도 (47.4%)가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 사업추진체계

- 사업전담부서 : 전담부서를 마련한 기준은 대부분 해당사업을 제안한 부서(50%) 또는 담당하는 시설 규모가 가장 큰 부서(30.8%)인 경우로, 공공건축 관련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공공-총괄건축가 활용 : 절반 이상의 사업(61.5%)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시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활용한 구체적인 이유로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업기획 관련'(75%), '설계 및 시공 발주 관련'(25%) 등으로 응답함
- 사업 컨설팅 : 절반 이상(74%)이 향후 컨설팅 시행 시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그림 5-7]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응답 분포

◦ 사업 관련 기타 의견

- 제도 및 정책방향 :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사업선정 방식 개선(28.3%)’, ‘선정 이후 공공건축 관련 및 생활SOC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자 교육 실시(23.3%)’, ‘부처 협약 등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절차적 지원 방안 마련 (21.6%)’ 등 제시된 방향에 대해 균일한 답변 분포를 보였음
- 기타 개선의견 : ‘절차의 복잡성 개선’, ‘선정 후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등

1.3 전문가 서면자문³⁴⁾

■ 가이드라인 상 지자체 사전 이행사항 관련

- 부지확보 관련 필수 이행조건

<개선방안>

- 부지 확보율 70% 이상일 것 / 미확보 필지 3필지 미만일 것
- 상속 등 관련 소송 진행 중 필지 제외할 것
-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완료할 것

- 개선방안(안)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필지 규모에 따른 확보율이 상이할 수 있고 사유지 매입 예산 편성 등이 지연되는 경우 역시 고려해야 함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 및 부지 관련 건축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선 판단 필요

- 생활SOC와 함께 복합화하는 지자체시설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개선방안>

- 행정복지센터,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SOC와 복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방침,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의회 보고, 건축기획, 주민의견 수렴 등을 사전에 거치도록 유도

- 사전 절차 중 내부방침,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반영, 의회보고 등 기본적인 절차는 필수조건으로 하되, 소요기간 및 사업비가 수반되는 건축기획 등은 권장사항으로 함이 합리적임
-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자문의견이 상이하므로 추후 검토 필요

■ 자체검토서 관련 개선사항

- 자체검토(종합검토) 항목 조정

<개선방안>

- 인구구성 특성, 서비스 소외지역 해당, 필요 시 기재사항은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 주요 도입 시설별 규모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추가
- 지자체 사업 및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자료 요구

- 삭제항목(인구구성 특성, 서비스 소외지역 해당, 필요시 기재사항)은 사업 적정성 판단의 기초적인 자료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

- 자체검토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 제시

<개선방안>

- 자체검토가 사업기획 내실화 유도 및 사업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 기준 및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제시
- 자체검토 항목 중 필수 이행 조건과 권장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
- 이용 수요 및 접근성은 적정 입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 검증 및 종합검토에 활용

34) 총 32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요청한 결과, 20명(62.5%)가 응답하였으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사전에 제시한 개선방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자체 검토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나, 그 기준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해야 함
- GIS 툴킷을 활용해 입지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며, 활용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 사전교육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필요

◦ 주민참여 및 운영계획 항목 내용 조정

〈개선방안〉

- 주민참여와 운영계획은 신청 단계에서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고 사업선정을 위한 판단근거로 다루기에는 한계
- 사업계획 내실화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보다는 핵심적인 이용·운영주체를 특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조정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

- 주민참여와 운영계획은 핵심적인 이용·운영주체를 특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성장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도록 조정(인력 및 자원 확보 계획 포함 등)
-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 내·외부 전문가, 관 실무자 및 의회 위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형성하고 자체 토론 결과를 반영하도록 유도
- 운영계획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운영비, 상주인원 인건비, 시설유지비용 등의 산정 필요

■ 신규사업 및 중점정책 관련 개선사항

◦ 신규사업에 대한 유인책 보완 방안

〈개선방안〉

- 신규 복합화 유형에 대한 홍보자료 보완 및 설명자료 제시, 복합화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 기존 13종에 이어 생활SOC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13종 시설과 연계 시 문제가 없고 가능한 다수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도

- 사업비 추가 지원 또는 인센티브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그 방안으로 이용도를 높이는 제안을 하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도 인센티브 부여 등 제안

◦ 중점정책에 대한 유인책 보완 방안

〈개선방안〉

- 교육부(교육청), LH 공사, 기재부 등 중점정책 관련 부처(기관)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 등 조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사업계획서에 미반영 사유를 명시
- 위탁개발(캠코, LH공사 등), 공익신탁(금융기관)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및 관련 기관의 컨설팅 제공
- 중점정책 반영 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 및 전문성(개발사업, 위탁개발방식, 금융프로세스 등) 향상 교육 필요

◦ 신규 생활SOC 대상 시설 추가 검토

〈개선방안〉

-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국조보조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지자체 시설을 연계·통합 조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므로 현행 13종에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할 필요

- 청년, 어린이, 여성 관련 시설(청년센터, 여성센터, 공부방 등)
-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거점 시설

■ 복합화사업 취지 구현 관련 개선 사항

◦ 사업기획 내실화를 위한 추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개선방안〉

- 사업 기획 전담부서 설정, 지자체 내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등 조기 유도
- 사전 컨설팅 강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헬프데스크(국조실 차원) 운영

-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비롯한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필수적이며, 중앙-지자체의 이원화된 교육 체계를 갖춰 다수의 교육 실시 필요
-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비롯한 공공건축 기획을 포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설정하고, 행정 협의회 및 TF를 구성하여 사업 내실화 필요
-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
- 복합화사업의 특성상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용은 합리적이며, 자체적인 전문가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할 시 국조실 차원의 지원 필요

◦ 지역 수요 및 현황을 고려한 사업계획 유도 방안

〈개선방안〉

- 지역 여건(인구구조, 이용 수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별 최저·적정 기준 제시
- 시설 현황, 지역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생활SOC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또는 자산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업계획 유도
- 지역의 중장기 수요조사 및 조성계획을 생활SOC 시설별 선정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역별 최저·적정 기준은 시설별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제시
- 생활SOC 종합계획의 수립은 합리적이거나,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자산관리 마스터플랜 등에서 복합화 가능사업,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방안 제시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역별 현황·분포, 용도, 규모 등을 종합 관리하는 DB를 국조실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시설 분석 시 활용 가능

■ 포스트 코로나, 그린 뉴딜 관련 개선 사항

〈개선방안〉

-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에 따라 향후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SOC 시설의 계획 및 이용방식에 대해서도 비대면 방식 등 시설 운영방식의 변화, 공간 규모의 조정 등 필요성 제기
-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추진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시설은 탄소배출이 많은 건축물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

- 비대면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AI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발굴하고 미래형 공간 계획에 대한 지침을 가이드라인 상에 포함
-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 계층의 프로그램을 분리한 조닝 유도

◦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 방안

- (그린 모빌리티) 주차장 확보 시 전기차 충전소, 공유자동차 주차 공간 마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그린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결합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그린 스마트 스쿨) 기존 노후학교의 개축사업으로 복합화사업으로 연계가 용이하므로, 사전 기획단계에서 밀접한 연계 필요

■ 생활SOC 3개년계획(2020-22)이후의 복합화사업 지속 추진방안

〈개선방안〉

- 복합화사업 추진 근거인 생활SOC 3개년계획이 202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22년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 제기
- 균특법, 관련 지침 등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생활SOC와 관련한 별도 법령 제정,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사업선정 방식 개선, 부처협약 등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절차적 근거 마련 등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

- 3개년 계획 완료 이후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 추진 여부 판단

◦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

- 별도의 법령 제정보다는 균특법, 공공건축특별법 등 기존 법령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
- 개별 시설의 국고 활용 사업 외 복합화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 마련 필요
- 정책 기관의 복합화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추진 경과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 필요
-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복합화사업 장기계획 수립 필요

■ 그 밖의 개선사항

<개선방안>

- 선정 이후 공공건축 관련 및 생활SOC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자 교육 실시
- 기 선정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차년도 사업 선정 시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우수사례) 및 디센티브(지연 및 문제사례) 부여
- 기피시설 등 지역에 필요하나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시설의 조성 유도를 위하여 기피시설 등과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부여
- (학교시설복합화) 신규 조성 학교, 기 운영 학교, 폐교 등 학교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복합화방안 구체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실무자 교육 워크숍 추진 및 기 선정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른 문제점, 성공·실패 사례 공유
- 지자체별 생활SOC 시설 현황 및 실태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공급 부족지역 추출
- 지자체의 사회·지리적 상황과 중장기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종합 컨설팅 등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 지연 및 문제 사례에 대해 디센티브 부과 등 지자체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
- 지자체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매뉴얼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1.4 주민참여 및 운영계획 관련 전문가 추가 심층 자문

■ 개요

- 일시 : 20.11.19.(목), 10:00~12:00
- 목적 : 생활SOC 복합화사업 기획단계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운영계획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 : 5명 (도시 재생, 건축 분야)³⁵⁾

■ 주요 자문요청 사항

- 주민참여 활성화
 - '21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시행 여부, 형식, 의견 반영여부, 참여인원, 추진현황 등을 간략하게 기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소 형식적으로 일회성의 사업설명회 또는 설문조사(도입 시설 필요성 또는 우선 순위)를 진행하여 주민참여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중 주민참여 부분이 가장 작성하기 어렵다고 응답
 - 가이드라인 확정 후 사업신청서 제출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자문 요청사항

- ▷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서 상의 '주민 참여' 부문 작성 양식 및 요구사항
- ▷ 사업 선정 후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 운영계획 내실화

- '21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시설관리 주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체, 위탁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간략하게 기입하고 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내용만으로는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유도하거나 선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
-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별로 각 소관부처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상세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복합화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 지자체 담당자 설문에서도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이 가장 검증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

35)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최순섭 교수(교통대학교), 한영숙 대표(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윤경아 대표(YMCA 서울아가야)

자문 요청사항

- ▷ 도입 시설별 운영계획과 차별화되는 복합시설 전체로서의 사업계획서 상의 '운영계획' 부문 작성 양식 및 요구사항
(예시 : ①시설 전체 운영비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 추가, ②시설별 운영프로그램 간 연계 방안 추가, ③수익시설 설치 등 운영비용 절감방안 또는 시간대 분리·주말 및 야간 이용 등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추가, ④주요 이용계층을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공용공간 특화 방안 추가)
- ▷ 사업 선정 후 개별 시설별 운영 주체 및 프로그램을 고려한 복합화시설 전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 주요 자문의견

- 자체검토서 요구사항 개선 및 유연한 검토절차 필요
 - 현재 자체검토서 요구사항이 사업신청단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내 행정 거버넌스 구축, 운영가능한 민간·주민협의체 풀 구성 등 현실적인 조치사항으로 요구 필요
 - 사업신청서 제출(4월) 시에는 간단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 향후 선정(9월)까지 부처별 컨설팅, 공문을 통한 국조실 차원의 보완 요청 등의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사업 필요성 고민 유도
 - 주민의견 수렴 시, 구체적인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보다는 지역의 실제 수요, 인구 분포를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필요
- 행정 거버넌스 구축
 -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항목 통합 및 유형별 작성 양식 구분
 - 주민참여 및 운영계획을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보다 항목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예: 학교 복합화,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와 신축 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시행의 정도를 달리 하도록 해야 함

2. 2022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2.1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사업 추진일정 조기 착수

- 지자체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주체와의 협의기간 확보를 위하여 복합화 선정 착수 절차를 '21년도 사업에 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
- 1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월 중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4월 말 사업신청서 제출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계획 유도

■ 사업계획 내실화 유도

-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중점정책 반영 및 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 (컨설팅단 구성) 지역개발 및 공공건축 전문가로 4개 조(조당 2인 구성, 총 8인) 구성
 - (1차 컨설팅) 권역별 복합화사업 설명회 개최 시 현장 컨설팅 제공 (2월 중)
 - (2차 컨설팅) 사업계획서 초안에 대해 권역별 컨설팅 시행 (3월 말)
- (총괄부서 지정) 여러 기능이 복합되는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 단계부터 총괄 부서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유도
 -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총괄부서 주도과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총괄 부서를 특정하고 총괄부서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 활용 유도
 -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기획, 설계발주, 시공 등의 과정에서 공공건축 관련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전문가 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도모

■ 입지 적정성 검토 강화

- 복합화시설의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입지분석도구(툴킷)를 개발·배포하여 지자체에서 복합화사업 입지 선정 시 분석도구로 활용하도록 추진
- 입지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복합화시설 도입 기능별 적정 입지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입지선정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2.2 사업 신청 및 평가체계

■ 사업 실행여건 충족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필수 조건 설정
 - 부지확보율 70% 이상(매매확약서(민간) 또는 사전협약서(공공) 증빙 필요)일 것
 - 상속 등 관련 소송 진행 중인 필지는 제외할 것
 -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 의회보고, 내부방침 등 사전절차를 완료할 것
- 사업부지 유형별 토지 소유주체와의 사전협의 추진
 - (국·공유지) 사업 예정부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처 등 소관기관과의 사용 협의문서, MOU 또는 임대 여부 등 가능성 검토
 - (학교부지) 교육청·학교장 등 학교부지 사용 및 관리·운영 관련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사유지) 예정부지의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확약서 등 사업 예정부지 확보 계획 확인
- 지자체 사업의 사전이행 절차 요건 제시
 - 자체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내부방침,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의회 보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전절차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 자체검토 강화

- 자체검토서를 사업계획서 내용의 항목별 단순 결과 제시가 아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고, 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의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자기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

[표 5-3] 자체검토 체크리스트(안)

항목	세부 내용	yes	no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70% 이상의 부지확보율을 달성하였는가?	✓	
		사유지가 있는 경우,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는가? (※ 내부방침 결정, 의회보고, 예산편성 등)	✓	
		부지 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시설이 없거나 철거 등을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해당 부지의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하여 시설 건립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이 없거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건폐율 총당율은 90% 미만인가?	✓	
		용적률 총당률은 90% 미만인가?	✓	

	재원조달 가능성	지자체 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는가? (※ 방침결정,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반영, 의회보고 등) (※ 지자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YES로 체크)	✓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선정이 확정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선정 확정이 가능한가? (※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YES로 체크)	✓	
	즉시착공 가능성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결정 완료 가능한가?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완료 가능한가?	✓	
		'22년 내 설계용역 착수가 가능한가?	✓	
	입지선정의 적정성	유사 사업계획	부지 주변에 유사 사업계획이 없거나, 있는 경우 차별화 및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입지 적정성		생활SOC 분석 툴킷 필수 적용시설이 없거나, 있는 경우 제공된 입지분석툴을 활용하여 입지의 효율성(형평성)을 검토하였는가?	✓	
		생활SOC 분석 툴킷 필수 적용 이외시설이 없거나, 있는 경우 반경 5km 이내 유사 시설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접근성		보행 접근성은 양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거버넌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	핵심적인 주민참여 주체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추진 체계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전문성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등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운영 및 관리계획	시설 건립 후 시설별 운영주체, 주민 협의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는가?	✓	
		시설운영비를 추산하고 운영비 확보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 '21년도 사업에 대한 보완권장사항을 참고로 제시하여 22년도 사업계획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표 5-4] '21년도 사업 보완권장사항 (예시)

항목	예시
부지	미확보 잔여 부지 매입 절차의 조속한 이행 부지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공간 활용계획 수립
예산	지방비 예산 확보 (ex: 전체 사업비 70% 이상 차지하는 ○○의 건립예산 미확보 상태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 조속 이행) 균특 국비 미신청 (ex: 작은도서관 22년 균특회계 예산편성 필요)
접근성	위치 적절성, 교통/도보 접근성 등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권장
사업일정	조속한 재정 투자심사 이행 주 시설 미확정, 협의 진행 중 등으로 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관련 절차 등의 조속 이행
사업내용	사업 타당성(적정 규모, 필요성), 사업 성격, 설계방식,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완

	복합화시설 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 세부시설 간 연계 및 효율적인 배치 등에 대한 고려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근거로 세부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운영계획	인근시설과 연계 운영, 효율적인 운영 방식(위탁/직영)에 대한 고려 등
민원	사업부지 인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사업대상지가 지자체 관할 구역 외부에 있어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 설득
시설 조건 준수	부처별 검토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사업 진행 필요
유사시설	인근 유사시설과의 차별화 및 연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사업계획서에 주요 시설별 면적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도입 시설별 면적 규모, 공용면적 규모, 주차장 규모, 부지의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포함한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유도

■ 주민참여 및 운영계획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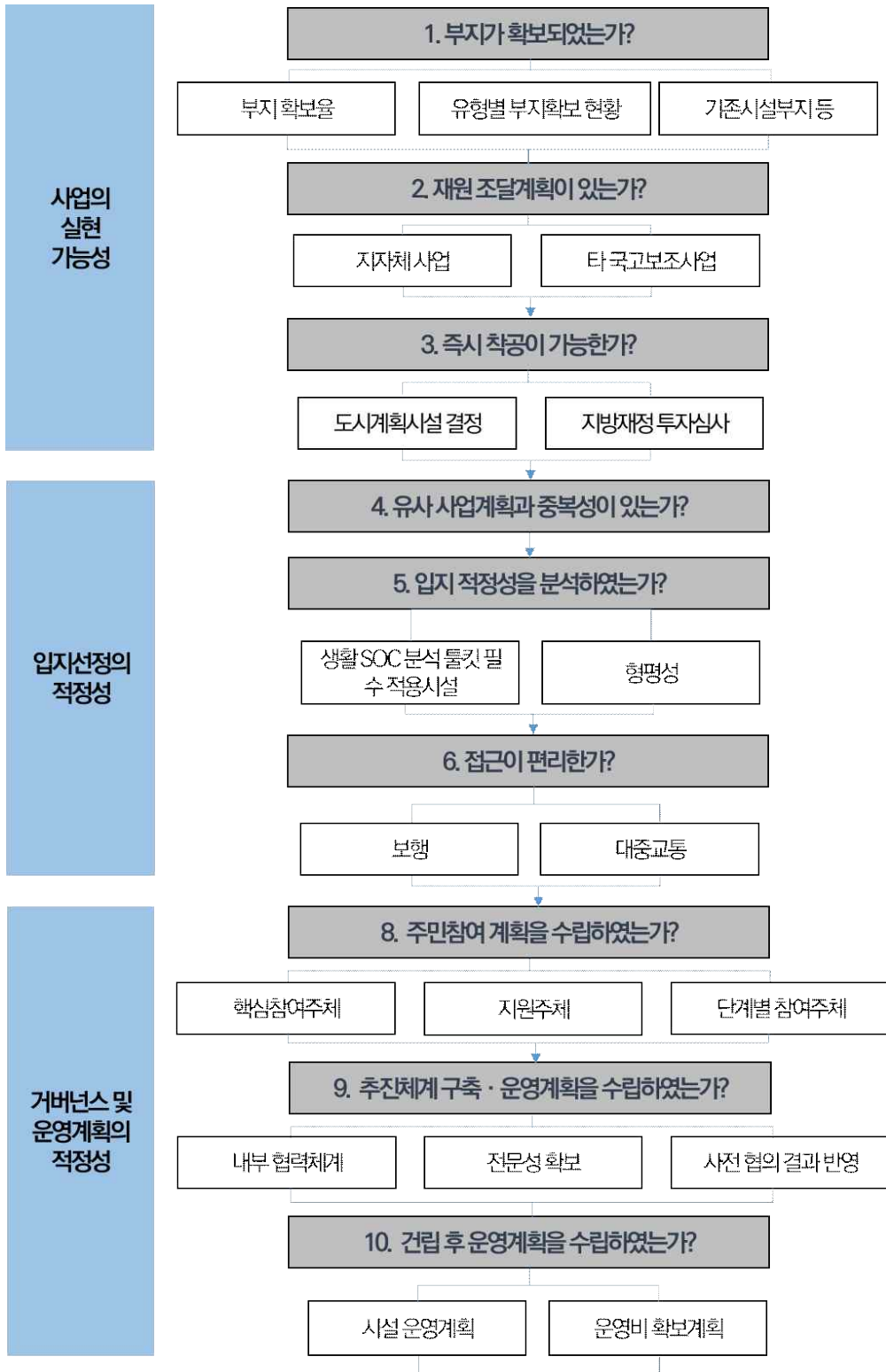
- 일회성의 설명회 개최나 설문조사 시행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할 특정 주체를 설정하고, 해당 주체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어떻게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사업계획서 양식 개선
- 도입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과 차별화하여 시설 건립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비용의 추산, 상주인원 규모 설정,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요구

〈운영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예시〉

- 시설 전체 운영비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 추가
-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간의 연계 방안 추가
- 수익시설 설치 등 운영비용 절감 방안 또는 시간대 분리·주말 및 야간이용 등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추가
- 주요 이용계층을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공용공간 특화 방안 추가

■ 타 국고보조사업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파악

- 지자체 사업 또는 타 국고보조사업을 함께 복합화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파악을 위해, 상세한 사업내용 및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등을 명기하도록 사업계획서 양식 개정
-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자체 사업 또는 타 국고보조사업의 추진 일정이 복합화사업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여부를 검토
- 또한, 지자체 사업 및 타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는 주요 기능이나 프로그램 등이 복합화시설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지 여부를 검토



[그림 5-8] 종합검토 흐름도 개정(안)

2.3 중점정책 반영

■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진행 등을 위한 기간 및 자료 제공

-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을 앞당겨 사업신청서 제출 전 학교시설 복합화(교육청, 교육부), 공공임대주택 복합화(LH 공사, 국토부), 국공유지 활용(기재부, 타 지자체) 관련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
-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을 위한 사업부지 후보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초기 단계에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회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복합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자체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추진체계 강화

■ 중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사업 가이드라인에 중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추가
-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시 위탁개발방식, 학교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등에 대한 설명회 진행 및 상담부스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사전 이해 제고 및 반영 유도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중점정책 반영 여부 기재

- 지역별 사업계획 총괄표 또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 중점정책 반영 여부를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

2.4 선정 후 사후관리체계

■ 모니터링 실시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중앙-지자체 협약 체결 시 총괄부서, 사업 추진 일정, 타 국고보조사업 추진 여부, 선정 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별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협약체결 이후 사업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 선정 후 연간 2차례(4월, 8월 등)의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사업을 조기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
- '20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표기하도록 하여 국조실 차원의 맞춤형 개선방안 모색

■ 단계별 교육, 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선정 이후 공공건축, 생활SOC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자 교육 시행
- 사업기획부터 설계발주 전까지의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사업기획, 공공건축사업 절차, 설계공모 시행 등과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 시행
-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또는 사업관리용역 수행 주체에 헬프데스크 설치 또는 생활SOC 홈페이지에 Q&A 코너를 설치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의 창구 운영

2.5 사업신청서 및 자체검토서 개정방안

■ 사업총괄표 양식 관련

- 학교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 중점정책의 반영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선제적 고민 유도
- 사업별로 사업비와 면적을 적었던 것에서 전체 복합화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면적을 적도록 개선

■ 사업신청서 양식 관련

- 전체 복합화사업의 연차별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적도록 했던 것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를 각각 적도록 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수립 유도
- 개별 사업의 시설별 면적과 전체 면적,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여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정 규모의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체검토서 양식 개선

- 단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항목별 결과 제시가 아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자기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부지 유형) 지자체 부지, 국·공유지, 학교부지,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구분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확보 면적 및 비율을 명기하도록 개선
 - (부지확보 여부) 사용 예정 부지에 대한 부지 확보 여부(확보, 부분확보, 미확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부지 특성) 개발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한 행위제한 사항 기재하도록 개선
 - (건폐율·용적률 총당률) '21년도 사업 신청 시 건폐율·용적률 총당률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오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계산식 예시를 제공
- 재원조달 가능성
 - (지자체사업 포함 여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
 -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 선정 여부 및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

◦ 입지선정의 적정성

- 정량(입지분석 툃킷 활용), 정성(유사 사업계획 중복 여부 및 접근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입지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 (입지적정성 분석) 분석 툃킷 필수 적용시설 6종³⁶⁾과 이외 시설로 양식을 구분하여 작성

- (툴킷 필수 적용시설) 툃킷 분석 결과를 항목(형평성, 효율성)별로 기입하고, 각 시설에 대한 분석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작성하도록 함 (※ 효율성 분석 결과가 5등급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제출 불가)
- (이외 시설) 반경 5km 이내 기준 유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보완 대책 등에 대해 명기하도록 함

- (유사 사업계획 중복여부) 사업 부지로부터 반경 5km 내 확정 또는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지역개발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 해당 여부 검토
- (이용수요 및 접근성) 시설의 잠재적인 주이용 대상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보행·대중교통 접근성 현황 및 보완계획을 명기하도록 함

◦ 거버넌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주민참여 시행 실적에 대해 명기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관련 주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운영 계획에 대해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
- (주민참여) 사업기획단계에 알맞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핵심 참여주체 및 지원주체를 선정하고 향후 주민의견 수렴계획에 대해 명기하도록 양식 개선
- (추진체계) 복합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한 행정 거버넌스 구축 및 총괄·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사업기획부터 준공까지 관련 주체의 역할 및 협력방식을 포함한 체계도 작성 요구
- (운영계획) 시설관리주체, 위탁운영 여부 및 유관기관 풀, 시설별 예상 운영비용 및 상주인력 등에 대해 기재하고, 시설관리·운영 관련 주체별 역할과 협력방식을 포함한 체계도 작성 요구

36)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2.6 중장기 추진방안

■ 3개년 계획 이후의 복합화사업 관리방안 모색 필요

- '21년도에 3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1년도에 선정되는 '22년도 사업을 비롯하여 그간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국조실 중심의 총괄관리체계가 지속되지 못할 우려
- 통상적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됨을 고려할 때, '24년까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

■ 3년간의 복합화사업의 결과에 대한 기록화 및 매뉴얼 발간 등 추진 필요

- '21년도의 3개년 계획 종료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종합평가하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
- 우수 사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이슈, 시사점 등을 포함한 “(가칭)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매뉴얼”을 발간하여 타 부처나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 복합화사업의 지속 추진 체계 마련 필요

- 개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타 시설이나 사업과의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복합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가 현재 설치된 생활SOC 시설의 현황과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생활SOC 확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재 발의되어 있는 「공공건축특별법」에 포함된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을 활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편, 「국계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을 생활SOC 중장기계획의 근거계획으로 활용
- 생활SOC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복합화사업의 수요, 주요 대상, 적정 입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복합화사업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3개년 계획 종료 이후에도 복합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다 부처 국고보조사업을 복합화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제6장

연구결과 및 향후과제

1. 주요 연구 결과

2. 향후 과제

1. 주요 연구 결과

1.1 2020년도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 사업관리카드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행 결과

- 사업 추진 단계 : 전체의 69%(193건)가 설계진행 중 또는 공사 중으로 1차 모니터링 당시의 55%에 비해 14%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착수 단계인 사업이 23건 존재함
- 부지 확보 : 전체의 90%(251개)가 부지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듯하나, 22개 사업(7%)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사업계획 변경 : 기존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은 29%(82개)로, 일정 및 예산 변경이 가장 많음
- 사업 포기 : 당초 선정된 289건의 사업 중 총 10건의 포기사업이 있으며, 포기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른 것임

■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 결과 분석 결과

- 사업관리 측면 : 복합화사업 부서 간 협의체 구성, 담당부서-전문가-운영자 간 협력, 건축기획·총괄건축가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
- 설계방향 측면 : 복합화 시설 간 적절한 영역별 zoning 및 동선 계획, 노유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대안 마련, 시설별 특화방안 마련, 적절한 외부공간 구현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
- 예산 측면 : 설계비 및 공사비 재산정, 공용면적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
- 스페이스 프로그램 측면 : 시설 소요면적 구체화, 충분한 공용면적 확보, 주요 기능 간 영역 구분 및 연계 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
- 사업일정 측면 :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계별 성과품의 제출 및 승인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 및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

■ 현황파악 및 분석결과

- (추진 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미흡 사업은 보완 계획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독려를 위하여 신규 사업 선정 시 기 선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또는 디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 주체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내 다 부서가 참여하는 복합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의체 구성, 전담부서 및 총괄건축가 지정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통합계획 수립 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이용주체와 기능을 고려한 면밀한 건축기획) 사업 초기단계에서 건축기획을 보다 면밀히 하도록 유도하여, 시설 간 중복 기능의 최소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간 구성, 이용자 중심의 내·외부 공간계획 등이 사업계획 및 설계지침 등에 반영될 필요
- (충분한 공용공간과 외부공간 확보) 복합화사업은 이용계층 및 이용 시간대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공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공용면적, 외부 공간, 휴게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외부전문가 활용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사업 초기 과정에서의 외부전문가 컨설팅,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유도 등 사업기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컨설팅을 별도 추진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 '20년도 복합화사업 컨설팅 시행 결과

- 2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신청한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행
- 주요 컨설팅 사항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등 공공건축 사업 관련 제반 절차 추진방안, 설계공모 방식 선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방안,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방안, 설계공모 시행 방안 등
- 지자체 내 건축 관련 부서의 지원 없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공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나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 공공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고 이를 고려한 적정 추진일정, 발주 방식 등을 컨설팅

1.2 2021년도 복합화사업 평가 및 선정 지원

■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절차

-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68건을 대상으로 국조실 생활SOC추진단과 건축공간연구원에 서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서 내용의 정합성 검증 및 특이사항을 정리한 총괄(표) 작성
- 부처 및 균형위 검토결과 취합·반영 후 사업별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종합검토 자료 작성
- 종합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고 지자체에 보완사항 등 요청
- 그간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종합검토 결과로 정리

■ 신청 사업 분석 종합

- 14.3%에 해당하는 사업이 부지를 미확보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보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지 확보율 70% 이상, 매매동의 및 확약서 등 매입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하는 등 보다 엄정한 기준 적용 필요
- 전체 사업 중 약 60%가 생활SOC 외 타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련 예산 확보, 선행 절차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 대처방안 필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추진 중이거나 미결정된 사업은 전체 사업의 31%,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미 결정된 사업은 71%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
-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하나, 보완필요 사업(보행 6건, 대중교통 8건)에 대해 지자체 내 관련 타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보완 방안 마련 조치 필요

■ 검토 및 선정 결과

- 균형위 검토, 부처별 검토, 국조실 종합검토를 거친 후 지자체 보완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청사업 168건 중 적격사업 149건, 부적격사업 19건으로 선정안 마련 후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사업 선정
- '20년에 선정된 289건보다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사업 건수가 '20년도에 비해 증가한 지역은 부산(1건), 충북(4건)이며, '20년도 대비 사업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북 등이 해당
- 총 국비 기준으로 균특포괄보조 예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이며, 일반보조사업 예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임

시·도별 선정 현황('20년, '21년 비교) (표 4-12와 동일)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년 (A)	28건 9.7%	15건 5.2%	5건 1.7%	14건 4.8%	16건 5.5%	11건 3.8%	7건 2.4%	2건 0.7%	44건 15.2%
'21년 (B)	12건 8.1%	16건 10.7%	1건 0.7%	10건 6.7%	5건 3.4%	2건 1.3%	2건 1.3%	1건 0.7%	18건 12.1%
증·감 (B-A)	△16건	1건	△4건	△4건	△11건	△9건	△5건	△1건	△26건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년 (A)	24건 8.3%	8건 2.8%	22건 7.6%	19건 6.6%	18건 6.2%	30건 10.4%	23건 8.0%	3건 1.0%	289건 100.0%
'21년 (B)	13건 8.7%	12건 8.1%	6건 4.0%	13건 8.7%	13건 8.7%	9건 6.0%	13건 8.7%	3건 2.0%	149건 100.0%
증·감 (B-A)	△11건	4건	△16건	△6건	△5건	△21건	△10건	0건	△140건

시설별 구성 현황 (단위 : 건) (표 4-12와 동일)

구 분	'20년도(A)		'21년도(B)		계 시설수
	시설수	비중	시설수	비중	
생활문화센터	146	20.7%	80	22.3%	226
국민체육센터	99	14.0%	45	12.6%	144
다함께돌봄센터	95	13.5%	44	12.3%	139
작은도서관	87	12.3%	40	11.2%	127
주거지주차장	75	10.6%	40	11.2%	115
공공도서관	73	10.4%	35	9.8%	108
가족센터	61	8.7%	26	7.3%	87
공동육아나눔터	28	4.0%	18	5.0%	46
국공립어린이집	29	4.1%	13	3.6%	42
주민건강센터	12	1.7%	10	2.8%	22
공립노인요양시설(신규)	-	-	3	0.8%	3
로컬푸드복합센터(신규)	-	-	3	0.8%	3
전통시장주차장(신규)	-	-	1	0.3%	1
계	705	100%	358	100%	1,063

■ 최종 선정된 복합화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도출

- 다수의 지자체가 신청한 상위 5개 유형은 '20년도와 동일하게 생활문화센터(22.3%)→국민체육센터(12.6%)→다함께돌봄센터(12.3%)→작은도서관(11.2%)→주거지주차장(11.2%)를 차지
- '21년도 사업에서 신규로 추가된 공립노인요양시설(3건), 로컬푸드복합센터(3건), 전통시장주차장(1건)은 신청 지자체가 소수에 불과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경우 12개소,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의 경우 3개소로 중점정책으로 추진한 점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결과
- 국유지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화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미선정 사업 중 상당수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부지확보 문제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차년도 사업 선정 시에도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선정된 사업 중 주변에 유사한 시설이 건립되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다수 있었으나,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유사시설 및 계획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은 다소 미흡

■ '21년도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지원

- '21년도 사업부터는 국조실 총괄로 모든 사업추진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협약체결 방식 또한 국조실 주관의 체계로 전환 필요
- 협약서 본문의 내용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사항으로 구분하여 명기
- 협약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차년도 이후 사업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표기하도록 개선

1.3 2022년도 복합화사업 개선방안 제시

■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사업 추진일정 조기 착수
 -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 및 주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주체와의 협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복합화 선정 착수 절차를 '21년도 사업에 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
 - 1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월 중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4월 말 사업신청서 제출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계획 유도
- 사업계획 내실화 유도
 -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중점정책 반영 및 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 여러 기능이 복합되는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 단계부터 총괄부서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유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활용 유도
- 입지 적정성 검토 강화
 - 복합화시설의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입지분석도구(툴킷)를 개발·배포하여 지자체에서 복합화사업 입지 선정 시 분석도구로 활용하도록 추진
 - 입지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복합화시설 도입 기능별 적정 입지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입지선정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사업 신청 및 평가체계

- 사업 실행여건 충족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필수 조건 설정
 - 국공유지, 학교부지, 사유지 등 사업부지 유형별 토지 소유주체와의 사전협의 추진
 - 지자체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전절차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
- 자체검토 강화
 - 자체검토서를 사업계획서 내용의 항목별 단순 결과 제시에서 권장사항을 포함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신청 전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을 자기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
 - '21년도 사업에 대한 보완권장사항을 참고로 제시하여 '22년도 사업계획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 사업계획서에 주요 시설별 면적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시설별 및 공용면적 규모, 주차장 규모, 부지의 허용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유도
- 주민참여 및 운영계획 내실화
 - 주민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할 특정 주체를 설정하고, 해당 주체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어떻게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사업계획서 양식 개선
 - 시설 운영비용의 추산, 상주 인원 규모 설정,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요구
- 타 국고보조사업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파악
 - 지자체 사업 또는 타 국고보조사업을 함께 복합화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파악을 위해, 상세한 사업내용 및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등을 명기하도록 사업계획서 서식 수정
 -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복합화사업 추진 지연 여부를 검토
 - 또한, 주요 기능이나 프로그램 등이 복합화시설과 중복 또는 차별화 방안도 검토

■ 중점정책 반영

-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진행 등을 위한 기간 및 자료 제공
 - 사업신청서 제출 전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관련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
 -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을 위한 사업부지 후보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자체가 사업대상지를 초기 단계에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 학교시설 복합화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복합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자체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강화
- 중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사업 가이드라인에 중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추가
 -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시 위탁개발방식, 학교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등에 대한 설명회 진행 및 상담부스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사전 이해 제고 및 반영 유도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중점정책 반영 여부 기재
 - 지역별 사업계획 총괄표 또는 개별 사업계획서에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 중점정책 반영 여부를 기재하도록 양식 개선

■ 선정 후 사후관리체계

◦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선정 후 연간 2차례(4월, 8월 등)의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사업을 조기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
- '20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표기하도록 하여 국조실 차원의 맞춤형 개선방안 모색

◦ 단계별 교육, 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사업 선정 후 공공건축 관련 사항, 생활SOC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거쳐 사업기획, 공공건축사업 절차, 설계공모 시행 등과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 시행
-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또는 사업관리용역 수행 주체에 헬프데스크 설치 또는 생활SOC 홈페이지에 Q&A 코너를 설치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의 창구 운영

■ 사업신청서 및 자체검토서 개정

◦ 사업총괄표 서식 관련

- 학교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공유지 활용 등 중점정책의 반영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선제적 고민 유도
-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면적을 각각 적도록 했던 것에서, 전체 복합화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면적을 적도록 개선

◦ 사업신청서 서식 관련

- 전체 복합화사업의 연차별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적도록 했던 것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를 각각 적도록 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자원조달 계획 수립 유도
- 개별 사업의 시설별 면적과 전체 면적,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기재하도록 하여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정 규모의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유도

◦ 자체검토서 서식 관련

- 단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항목별 결과 제시가 아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자기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향후 과제

■ 중장기 추진 방안

- '21년도에 3개년 계획이 종료되나, 통상적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됨을 고려할 때, 24년까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
- '21년도의 3개년 계획 종료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종합평가하고, 우수 사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이슈, 시사점 등을 정리할 필요
- 3개년 계획 종료 이후에도 복합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다 부처 국고보조사업을 복합화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지자체가 현재 설치된 생활SOC 시설의 현황과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생활SOC 확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추후 연구 과제

- '22년도의 생활SOC 3개년계획 종료에 맞추어 지난 3년간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필요
 -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국조실을 포함하여 각 부처, 균형위, 지자체,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사업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 및 한계를 정리
 - 추후 생활SOC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등 도출
- 지자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 마련
 - 시범 개발한 적정 입지분석 툴킷의 고도화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와 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재적소에 적정 규모의 생활SOC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제시
 - 주요 도입 기능별 복합화 유형, 시설 규모 등에 따른 건립 및 운영비 예산 책정 방식, 적정 사업 기간 산출 방식 등 복합화사업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참고문헌

■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10월 4일자 보도자료
국조실 생활SOC추진단(2020), “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1년사업) 149건 확정”, 9월 17일자

■ 기타자료

건축공간연구원(주)세아(2020), 생활SOC 공간분석 도구 사용자 매뉴얼(안),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관계부처 합동(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국조실 생활SOC추진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설명회 자료, 내부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방향, 내부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전심사 결과 및 의견(안), 제24차 보고자료(6월9일~11일)
국조실 생활SOC추진단(2020), “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안)”, 9월 17일자 회의자료

부 록

1. 2020년도 선정 사업 사전검토 의견서 경향 분석
2.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양식
3.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4.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서(안)
5.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개정(안)

1. 2020년도 선정 사업의 사전검토 의견서 경향 분석

1.1 사업관리 측면

복합화사업 부서 간 협의체 구성

- 본 사업은 2020년 생활SOC복합화 선정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부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용도폐지 및 철거 완료)에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이 복합하여 수용될 예정임
- 각 시설의 운영 및 관리부서가 상이하고, 시설별 세부 공간계획(규모, 프로그램 등) 또한 각 부서가 별도로 계획할 예정이므로, 사업 전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시, 부서 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도모가 필요
- 본 사업은 기존 교내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서로 다른 운영주체이나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두 영역 간 공간적, 기능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통한 복합공간 구현을 권장
- 본 사업은 동일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주거지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각 사업 담당자 간의 소통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라며, 부지 전체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단계별 개발 계획 등을 마련해야함
- 부지 내에 우선 조성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동선체계 수립이 요구됨
- 동일 부지 내에 두 시설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행정 절차(인허가, 준공, 사용승인 등)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인근으로 노후건축물 및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밀접하므로 신축공사 중 인근 시설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심지 내 지하층 공사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 적용 및 사업관리가 매우 중요
-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서(○○구청,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관련부서 등)와 협의·조정애 소요되는 기간, 관련 심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사업은 다양한 부서(도시건축과, 가족지원과, 경제교통과, 총무과)가 연계된 시설을 하나의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체육시설(○○시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시설(○○시 관련 부서) 등 운영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시기를 권장함

담당부서·전문가·운영자 간 협력

- 본 사업의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사업초기에 구성하여 운영하길 바람
- 사업 단계별 주무부서가 상이(○○시문화도서관사업소, ○○시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하므로 해당 시설의 품질 및 품격 제고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운영자, 건축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공모 준비를 포함하여 주요 의사결정 단계마다 적극 활용하길 바람
- 해당 시설의 품질 및 품격 제고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운영자, 유사시설 조성 및 운영전문가, 유관부서 관계자, 주민 등을 포함한 TF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공모 준비를 포함하여 주요 의사결정 단계마다 적극 활용하길 바람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분야별 전문가(건축, 복지시설, BF인증 등), 사용자 및 유사시설 운영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에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람
- 인근 지하주차장 조성계획과 연계한 통합적 설계안 도출이 필요하며, 관련 주체 및 설계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범위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건축기획·총괄건축가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전문적인 기관에 건축기획을 의뢰하여 공공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 필요
-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소) 등 성격이 다른 4개 시설이 통합되는 사업이므로, 건축기획 업무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 본 사업은 다양한 부서(도시건축과, 가족지원과, 경제교통과, 총무과)가 연계된 시설을 하나의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도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총괄건축가를 선임하고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람

기타

- 현 사업부지 내 기존시설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므로 철거공사 전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계획을 마련 필요
- 임시청사 확보와 일괄 이전이 어려울 경우 단계별 이전-철거-공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초기부터 면밀히 검토·준비가 필요
-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시설별 추진 및 운영주체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별 실내건축 및 특수시스템 적용 시 해당 설계-공사를 해당부서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관련 사업범위를 공모 지침서에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람

1.2 설계방향 측면

복합화시설 간 적절한 영역별 조닝 계획 및 동선 계획

-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보건지소가 복합 조성되는 사업이므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입체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주요 이용자 그룹 및 이용시간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역별 조닝(Zoning) 계획을 유도하시기 바람
- 본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및 생활문화센터가 복합 조성되는 사업이므로 주요 이용자 그룹 및 이용시간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역별 조닝(Zoning) 계획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군이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과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에 수용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의 계획 시 부지 내 기 조성된 ○○근로자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와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한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동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어린이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두 영역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복합시설 상호 간 인접 또는 이격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모 지침에 명시 필요
- 본 건축물은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지원센터 및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역별 이용자와 공간 특성이 다르므로 기능 분리 및 연계를 위한 조닝(Zoning)계획을 우선 고려하고, 필요 시 시설별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설계지침으로 제시하시기 바람
- 다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동 사용 가능한 공간은 중복 계획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기본계획구상 검토 결과, 지상층(1~3층)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
- 영유아, 노인 등 시설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와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방향을 고려한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교육 영역과 자료열람 및 생활문화 영역간의 소음발생에 의한 간섭이 우려됨
- 공간의 성격에 따른 조닝계획 및 상호 연계성을 설계 공모 지침에 제시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람

- 주차와 도서관 영역이 인접하므로 소음,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형태, 이용시간 및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접하거나 이격 배치가 필요한 실을 계획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노유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 대안 마련

- 본 사업은 여러 용도(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수련시설)를 복합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영역 간 공간적, 기능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통한 복합공간 구현을 권장
- 층수 및 층별 면적을 제한하기보다 복합시설 상호간 및 인접-이격 배치 방향을 지침으로 명시하여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함

- 본 시설은 주차장과 노유자시설의 복합시설이며 복층에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해있고 부지와 3m정도 고저차이가 있어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 이용자의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외부공간(경사로, 휴게공간)을 조성하시기 바람,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주변 보행환경 정비방안을 마련해야함

- 본 사업은 부산 남구청 구유지 내 북측 부지에 별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람
-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및 장애인주차구역에 고려할 때 기존의 서측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북측 도로에서 접근 가능한 최소한의 차량동선 확보방안을 마련 필요

- 시설로의 접근로 계획 시, 도로면의 연속성 및 유효폭 확보, 무단차 기울기(1/18이하) 경사로 등을 통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해야함

- 본 시설은 노유자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이므로 설계비를 최소 '제2종 중급'이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포함된 복합시설이므로,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 필요

- 시설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 안전과 비상시 피난-구조 활동을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시기 바람
- 장애인 셔틀버스와 비상차량 진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출입로와 오픈 스페이스를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지 전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조성되도록 유도해야함
- 특히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의 경계부에서 노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과 피난동선 등 노인·장애인·어린이의 동선과 행태를 고려한 건축계획이 필요

- 부지 내 동서간 약 8m의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지 전체에 대한 Barrier Free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하시기 바람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므로 접근로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실내외 동선 계획과 함께 색채 및 사인 계획에도 유의하길 바람

시설별 특화방안 마련

- 다양한 이용자 특성(군인, 노인, 영유아 등)과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특화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설 요건(인원, 소요면적, 필수시설 및 장비, 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설계공모 시 지침으로 제시하시기 바람

- 신청서 상 개략적인 특성별 공간구성 방향은 있으나 세부시설계획은 미흡
- 작은 도서관·국민체육센터 사무실의 경우, 주요 실별 수용인원·운영 프로그램에 맞는 단위 공간 규모·적정 설비환경·부속실 필요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함

- 층수·층별 면적을 제한하기 보다는 전체 연면적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건축물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수영장은 복지센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로 적정 층고와 운영 계획을 설계지침서에 기재해야함

- 본 사업은 개략적인 특성별 공간구성 방향은 있으나 세부시설계획은 미흡
- 주요 실별 구상 중인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명확한 수용인원, 운영 프로그램에 맞는 단위 공간 규모, 적정 설비환경, 부속실 필요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해야함

- 관련 운영 부서가 다양하므로 준공 이후 이용자 수요에 따라 실 용도를 변경하거나 추가 내부공사 시행이 예상
- 사업 초기에 운영자 및 이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및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 문화교육부분 및 다목적홀 등 성격이 다른 시설을 분리하여, 일부시설이 폐관 이후에도 타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필요

적절한 외부공간 구현

- 현 사업부지 내 대부분의 외부공간이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외에 외부공간을 조성하기에는 협소한 여건임
- 운동시설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쾌적한 외부공간(진입광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유사 시 대피 및 방재를 고려하여 인접 건축물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부지 전체 외부공간의 활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부지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인접하여 하나의 공공영역을 이루고 있는 블록으로 대지 내 다양한 세대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및 주민 휴식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이 중요
-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보행 친화적이고 주민 편의를 고려한 외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장

- 법정 건폐율(70%)에 해당하는 건축면적을 계획하고 있어 부지활용이 제한적
- 법정 규모(높이 32미터 이하)와 계획한 연면적 규모 내에서 지상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로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개방적인 편의시설 계획을 권장

- 시설이용자 편의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카페, 매점, 스포츠용품 대여 및 판매소 등) 도입을 권장하며 이용자 접근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공용 공간 및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계획 필요

-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쾌적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 주차대수를 재검토하고 인접하여 조성되는 노외주차장과 적극 연계·활용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 별동(別棟) 건축물 조성을 확정하기보다는 설계자가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하도록 설계공모지침을 작성하시기 바람

- 공원 전체의 통합된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구는 가급적 한곳에 설치하길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 외부공간은 조경계획을 특화 필요

리모델링 시 구조안전 및 시공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 대안 마련

- 리모델링 사업을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수요에 적합한 공간 조성을 위해 각 영역별 기능 및 수용공간을 구체적으로 검토 필요
- 구조안전진단을 토대로 철거, 대수선, 신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제시하시기 바람

- 구조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내부 시설 재배치 및 장비교체 등으로 인한 주요 구조부의 보강 필요 여부 검토 필요
-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장소뿐 아니라 이동경로에 대한 구조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의해야함

1.3 예산 측면

설계비 재산정

- 설계용역비를 상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설계공모비용, 설계의도구현 관련비용, 각종 인증관련 비용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본 시설은 지역의 거점커뮤니티 시설로서 품질제고를 위한 설계도서 수준을 검토하여 상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함
- 시설유형에 따른 현행 법령 및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비를 합리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설계용역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2종 상급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약 〇% 부족하게 책정되었음
- 기본 업무 이외에도 인증관련 추가업무에 대한 요율 등을 가산하여 적정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 각종 인증에 대한 인증 수수료 및 설계용역 준공이후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업무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공사비 재산정

- 기준공사비는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부족하고, 현재 법령 및 기준이 강화되어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재산정할 것을 권장함
- 기준 건축공사비는 유사사례와 대비하여 매우 부족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기 조성된 시설물외에 부지 내 소로, 건축물, 지장물, 수목 등의 철거공사비는 별도로 산정해야 함
- 리모델링 공사범위 및 내용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설계의도구현 관련 비용과 구조안전진단 등에 관련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공사비는 조달청의 유사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18.12.기준)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나, 본 시설의 준공시점을 고려해야함
- 2020년부터 의무화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 대비하여 제로에너지 건축 시공 사례를 조사하고 공사비 추가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함
- 유사시설 대비 공사비가 부족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함
- 2020년부터 공공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연면적 1,000㎡ 이상)되므로 인증취득 요건과 관련 비용 및 설계 업무 범위, 사업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건축공사비는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 공사비보다 부족하게 책정됨. 제로에너지 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 완공시점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 예산 산출근거가 부재하며 공사비 산정이 불명확하고(건축공사비, 시설비 구분. 설계용역비 산정 기준 오류) 과소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음
- 공사비 산정 근거(조달청 유사사례, 완공연도 2014~2017) 대비 현재 법령 및 기준이 강화되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부지 여건(해안부지, 산지에 인접, 고저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공용면적 구분 및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 증액

- 본 시설과 같이 복합용도이며 이용자가 다양한 경우 공용공간의 기능과 면적이 중요
- 실별 규모는 공용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획 및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 확보하시기 바람에 이를 위해 전체 시설면적 조정이나 사업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것을 권장함

1.4 스페이스 프로그램 측면

시설소요면적 구체화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사한 세부시설 재조정 등을 통해 시설소요면적(Space Program)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실별 소요면적 계획(Space Program)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현황과 직원 및 시설 이용자 전반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구체화해야 함
- 세부 실별 소요면적 계획(Space Program)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 간 유사한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설 규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
- 신청서 상 시설 소요면적 계획(Space Program)만으로는 본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 각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라 소요 공간 및 동선, 부속시설 등 요구조건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설계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개략적인 특성별 공간구성 방향은 있으나 세부시설계획은 미흡함
- 구상 중인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주요 실별 수용인원, 운영 프로그램에 맞는 단위 공간 규모, 적정 설비환경, 부속 실 필요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내용을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공용면적 확보

- 현재 공용면적(기계전기실 포함)은 전체 연면적의 7.7%로 과소함
- 본 시설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이용자 편의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설유형에 적합한 공용면적(35% 이상 권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용면적이 부족하게 책정됨
- 전체 연면적의 약 35% 이상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용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 대비 매우 부족하므로 적정 공용면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용면적을 충분히 확보(연면적의 35% 이상)하는 것을 권장

영역 구분 및 연계

- 문화영역 내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의 영역은 구분하고 동아리실-예능실(다목적실로 추정)-세미나실로 공간을 연계하는 것이 운영 관리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됨
- 시설 영역을 구분하고,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실을 검토하여 조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각 시설의 연계 또는 분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이어그램(Function Diagram)을 제시하여 설계자의 이해를 높일 것을 권장함

1.5 사업일정 측면

사업일정(설계·공사기간 등) 확보 및 관리

- 우수한 공공건축물의 계획 및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사업일정 계획 필요
- 설계기간은 발주기관 의견 반영, 각종 인·허가, 인증,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단계별 성과품 제출 및 승인을 고려하여 최소 ○개월 이상 확보하고, 공사기간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를 권장함
- 우수한 설계안 도출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기간을 충분히 산정하고, 단계별 성과품 작성, 각종 인증 취득 및 인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개월 이상 확보하기를 권장함
- 전체 사업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계공모기간은 여유가 있으나 설계기간이 현저히 부족하며,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최근 강화된 법령 및 기준(근로기준법, 각종 인증 및 심의, 심사 등)을 고려하여 최근 조성된 유사시설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사업일정을 확보하기를 권장함
- 전체 사업일정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할 필요. 공사기간은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대비 부족
- 설계기간은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계별 성과품의 제출 및 승인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개월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함
- 현재 계획 중인 설계기간은 설계자 선정 후 협의기간, 내부 의사결정과정, 단계별 성과품(도면 등)의 제출 및 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므로, 최소 ○개월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설계공모 안 기준 기본설계 정리, 관련 전문가 자문, 주민 참여설계 고려, 실시설계, 실시설계, 설계경제성 검토(발주처 요구 시), 인허가, 각종 인증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개월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를 권장함
- 신청서 상 계획된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 2019.3.1.)」에 따른 공사기간(약 24개월)과 비교하면 부족하게 책정되었으므로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재검토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람

2.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서식

1 복합화사업 총괄표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사업 총괄표

2020. 4. 00.

○○시·도

(단위: 백만 원, m²)

번호	시군구	복합화 사업명	신축/ 리모델링	시설사업내용*	총사업 비	국비	지방비	면적	비고
1				1. 어린이집 2. 주민건강센터 3. 작은도서관					불입 1
2									불입 2
3									불입 3
4									불입 4
5									
6									
7									
8									
9									
10									
11									

* 13종 복합화 대상사업 외에 타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자체 시설사업 모두 기재

2 **복합화사업 신청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 00시 0000 생활SOC복합화 사업 -

2020. 4. 00.

○○시·군·구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신축/리모델링* (* 증개축 포함)					
사업 위치	▸ ○○시 ○○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복합화 대상 시설	구분	시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보건사업, 금연사업 등		'21~'23
	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다함께돌봄센터		'21~'23
	다	작은영화관(자체)	영화관, 휴게공간		'21~'23
	라				
사업예산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B)		기타(C)
	백만 원	백만 원	시·도비	시·군·구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직급/직책)			연락처 / 이메일		

위와 같이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시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 ① 사업개요서, ② 자체검토서(증빙자료 포함), ③ 시설별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서

사업명		자치단체명						
사업개요	필요성	▶ ▶ ▶						
	주요내용	▶ ※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예시) ▶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소규모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건립 ▶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기존사업계획 연계 추진여부		▶ 기존 복합화단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내용 기재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기확보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시설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 원)						
		시설명	사업비			소관 부처명	지자체 담당부서	
			계	국비	지방비			
		계	8,670	4,169	4,501	-	○○시 (○○○○과)	
		건강생활 지원센터	2,500	1,099	1,40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시 (○○○○과)	
국민체육센터	6,170	3,070	3,1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시 (○○○○과)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__㎡, 건축면적 __㎡, 건축연면적 __㎡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__ 층, 연면적 __㎡)	
대상지 주소	○○시 ○○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 진	위치도	
	대상지(리모델링인 경우 기존시설) 전경	

3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생활SOC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
- 00시 0000 생활SOC 복합화사업 -

2020. 4. 00.

○○시 · 군 · 구

생활SOC복합화사업 자체검토 결과

사 업 명			
작 성 자	지자체 / 부서 / 직위·직급 / 성명 / 전화번호		
검증항목	세부 항목	검토결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기존시설 유무	[해당/미해당]
		행위제한 해당 여부	[해당/미해당]
		건폐율 총당률	_____ %
		용적률 총당률	_____ %
	재원 조달 가능성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즉시 착공 가능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비대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미결/비대상]	
사업의 중복성	유사시설 중복	유사 사업계획 중복	[해당/미해당]
		유사 기존시설 계획 중복	[해당/미해당]
입지선정의 적정성	이용수요 및 접근성	인구구성 특성 검토	[소외지역/ 용량부족지역]
		보행 접근성	[양호/보완필요]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보완필요]
	서비스 소외지역 해당	소외지역 여부	[해당/미해당]
		취약지역 여부	[해당/미해당]
주민참여· 운영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여부	[시행/미시행]
		운영 및 관리계획	시설관리 주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체		[통합/개별]

I. 사업의 실현가능성

1. 부지확보 현황

①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여부	[확보 / 부분확보 / 미확보]		필요 부지면적	_____ m ²
			부지확보 면적	_____ m ²
유형별 부지 확보	국·공유지	[공공임대(m ²) / 근린공원(m ²) / 유수지(m ²) / 기타 (m ²)]		
	학교부지	[기존학교(m ²) / 신설학교(m ²) / 폐교(m ²) / 기타(m ²)]		
	기존시설부지	(m ²)		
	사유지	(m ²)	기 타	(m ²)
	※ 유형별 확보(부분확보 포함)된 면적만을 작성하고, 사용 예정부지 확보 및 부분확보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확보 : 해당부지 소유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및 계약이 완료되어 즉시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 ※증빙자료 : (국·공유지, 학교부지) 임대 및 사용 협의문서, MOU체결 등, (사유지) 소유권 등기 사본, 토지매매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기존 시설부지) 임대 및 사용 협의문서 및 소유권 등기 등 2) 부분확보 : 대상부지 일부만 확보하였거나 사업 선정 직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 ※증빙자료 : (국·공유지, 학교부지) 임대·사용협의문서, MOU체결 등, (사유지) 매매계약서 등 3) 미확보 : 부지 확보 계획만을 가지고 있어 대상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즉시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			
부지확보 계획	※ 부지 부분확보 또는 미확보 시 작성 (확보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매입, 임대 및 협약 등 현재 진행 단계, 추진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예정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기존시설 ¹⁾ 유무	[해당/미해당]	기존시설 철거 등 필요 여부	[필요/불필요]	
기존시설 철거 등 계획	※ 기존시설 철거·리모델링 등 필요 시 작성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기존시설 명칭·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등), 철거 및 리모델링 범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기존시설 :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조성되는 부지 내에 기 조성된 건축물 등

② 부지 특성

지역·지구·구역 ¹⁾	○○○○ 지역 / ○○○○ 지구 / ○○○○ 구역		
행위제한 여부	[해당/미해당]		
행위제한 해당 시 대응방안	※ 행위제한 여부 해당 시 작성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건축물 용도, 조건·제한·예외사항 등 행위제한 해당 사항 기재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허용 건폐율	_____ %	허용 용적률	_____ %
예상 건폐율	_____ %	예상 용적률	_____ %
건폐율 총당률 ²⁾	_____ %	용적률 총당률 ³⁾	_____ %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ParcelRestrictListExtFrame.jsp>) 참조

2) 건폐율 총당률 : 예상 건폐율(예상 건축면적/부지면적) ÷ 허용 건폐율

3) 용적률 총당률 : 예상 용적률(예상 연면적/부지면적) ÷ 허용 용적률

2. 자원 조달 가능성(지방비, 타 국고보조사업비)

① 지자체사업 포함 여부 ※ 지자체 사업 포함 시 작성 (미포함 시 "공란"으로 표기)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지자체 사업 전체 사업비				_____ 백만 원
	지방비 자원조달 계획	사업명①					
연도		기확보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명②							
연도		기확보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시 작성 (미포함 시 "공란"으로 표기)

타 국고보조사업 ¹⁾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타 국고보조 전체 사업비				_____ 백만 원
	타 국고보조사업 재원조달 계획	사업명①					
연도		기확보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명②							
연도		기확보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1) 타 국고보조사업 : 생활SOC 복합화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국고보조를 통해 함께 건립하는 사업

3. 즉시 착공 가능성

① 행정절차 이행 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결정 예정 시기	'○○년 ○○월 (결정 시 "공란"으로 표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미결]	심사 완료(예정) 시기	'○○년 ○○월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사전절차 이행 실적	※ 기본계획 또는 건축기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행 등 사전절차(법정비 법정 절차)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②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p>※ 복합화사업 신청 전까지 이행한 기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을 기재 (아래 예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00.) ○○○ 사업 추진계획 방침 ○ ('18. 00.)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 ('19. 00.) 중기재정계획 반영 ○ ('19. 00.) 제○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 0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 ('20. 04.)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 ('20. 0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1.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1. 00.) 지방비 확보 완료 ○ ('21. 00.) 건축기획 완료 ○ ('21. 0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1. 00.) 건축 설계공모 완료 ○ ('22. 00.) 건축 설계 완료 ○ ('22. 00.) 건립공사 착공 ○ ('24. 00.)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	---

③ 그 밖의 민원 등 장애요인 및 대응계획

민원 등 장애요인	※ 사업 착공에 있어 민원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재
대응계획	※ 민원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기재

II. 사업의 중복성

1. 유사시설 중복

① 유사한 신규 사업계획 및 기존시설 유무

※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4km 내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유사한 시설 해당여부 검토

유사 사업 계획 중복 ¹⁾	해당 여부	[해당/미해당]	유사 사업명 및 주요 기능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
	유사 계획 확정 여부	[확정/신청중/미해당]	중복 기능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
	차별화·연계 방안 등	※ 유사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필요한 이유(차별화·연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유사 기존 시설 계획 중복 ²⁾	해당 여부	[해당/미해당]	유사 기존시설명 및 주요 기능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
	차별화·연계 방안 등	※ 기존 유사 시설이 있음에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필요한 이유(차별화·연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1) 동일부지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뉴딜,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지역개발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부처별 단일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2) 대상지 인근(반경4 km)에 유사한 기존 시설 또는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사업 추진 등 특이사항 및 추진 필요사유 기재

<지역개발사업 예시>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 *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13조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관광진흥법」제54조의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Ⅲ. 입지선정의 적정성

1. 이용수요 및 접근성

이용 수요	이용대상	※ 시설의 잠정적인 이용 대상에 대한 서술 ※ 시설별 계획 중 이용대상 자료 활용가능		
	해당 사업부지 선정이유	(예시) 주거지, 학교, 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확충 및 교육문화 공간 조성 - 반경 3Km 구간(차량 10분)내 다수의 이용자층 분포, 접근성 우수		
접근성	보행 접근성	[양호/보완필요]	현황	※ 주변 보행로 조성 유무, 횡단보도의 위치 등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보완필요]	현황	※ 지하철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장으로부터 00m 이내

2. 서비스 소외지역

구 분	내 용
서비스 소외지역여부	[소외지역/ 용량부족지역/ 기타()]
취약지역 여부 ¹⁾	[산업·고용위기,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기타()]

1) 관련부처 고시 근거 등에 근거하여 해당지자체가 표기하며 해당 증빙자료는 별첨

IV. 주민참여·운영계획의 적정성

1. 주민 참여

주민참여 여부	[시행/미시행]	형식	[설문조사/주민간담회/ 토론회/ 아이디어공모/ 사업공동기획 / 기타()]
의견 반영여부	[반영/미반영]	참여인원	000명
주요의견 반영 추진현황	※ 주민의견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제시 (예시) ○ ('19. 03)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19. 04)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건립희망 00%) ○ ('19. 10) 관계자 회의를 통한 반영여부 검토(반영)		

2. 운영 및 관리계획

시설관리 주체	[직영/ 위탁]	프로그램 운영관리 주체	[통합/ 개별]
위탁운영	※ 위탁운영 시 수탁자 결정 및 계획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개별 운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1) 사업별 '복합화시설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구성·운영 계획서' 등 증빙

(예시) 시설 관리운영 계획 - 국민체육센터 사례

관리운영 주체	○ 관리운영 주체에 대하여 현재 대학과 목포시와 협의 중
운영인력	○ 추후 관리 주체 결정 후 작성
시설 운영계획	○ 대학은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선을 확보하여 지역민과의 체육시설물 등의 공동 이용 - 수영장: 시간대별 시설이용 시간을 분리하여 공동이용 예시) 학생이용: 오전 11시 ~ 오후 15시 학생이용 주민이용: 오전 5시 ~ 오전 11시, 오전 15시 ~ 오후 10시 ※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장 주민에게 제공하여 공공요금 및 운영비 확보 -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학생 학습 외 시간을 활용 동호회 및 지역 생활 체육 단체 시설이용 요구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준에 맞춰 제공 - 창업보육시설: 청년창업 보육시설 제공 ※ 체육관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 건물로 건립하여 개방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공간 제공 - 주차장: 무료개방 ※ 2019. 9 개통 예정인 대학 인접 유달산 해양케이블카 관광객들에게 주차시설을 개방
프로그램 운영계획	○ 대학은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선을 확보하여 지역민과의 체육시설물 등의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V. 필요시 기재사항 <지자체 판단하에 1페이지 이내 작성>

1. 복합화사업의 기대효과

내부적 효과	※ 도입시설 간 기능 및 운영 프로그램 연계, 공간 활용도 제고, 예산 절감 등 복합화사업으로서의 내부적인 기대효과 기재
주변 및 지역 파급 효과	※ 복합화시설 건립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재

2. 우려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우려되는 문제점	※ 다 부서 관련 사업의 복합화로 인한 의사결정 난항, 시설 내 유사기능 중복, 시설 조성 후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 기재
문제점 해결방안	※ 생활SOC 복합화 전담부서 지정, TFT 운영, 건축 전문가 활용을 통한 사업기획 강화, 전문성을 갖춘 시설운영주체 선정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3.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1년 사업) 149건 확정

- 지역주민 수요 반영하여 이용편의 올리고, 부지 연계로 비용은 내리고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확산” 강조

□ 정부는 9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SOC)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의미

□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주민의 생활SOC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 생활SOC 시설들을 단일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 ‘19.10월,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선정

□ 국무조정실은 ’20년 3월,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 금년 5월, 전국 129개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축전문기관(건축공간연구원)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총 14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여성가족부 · 교육부 등

** (주요평가항목) 예산 · 부지 확보 가능성, 개별시설별 설계기준, 사업필요성 등

- 특히,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2년차를 맞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유형을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번 복합화사업 선정의 주요 특징 〉

- ①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12개를 선정

* 활용부지 유형('19/'20년) : 신설학교(5/2건), 기존학교(5/4건), 폐교(1/6건)

- ② LH-지자체 협의를 통해 과천시 행복더불어센터,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전주시 행복씨앗센터 3개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단지로 조성

- ③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11개를 선정

* 국유지에 생활SOC 영구시설물 축조 및 생활SOC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20.10월)

- ④ 생활SOC 대상시설을 확대(10종→13종)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폭을 넓힘

- ⑤ 지자체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개발을 위탁하는 공공위탁개발(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년내로 위·수탁계약 15건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

-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생활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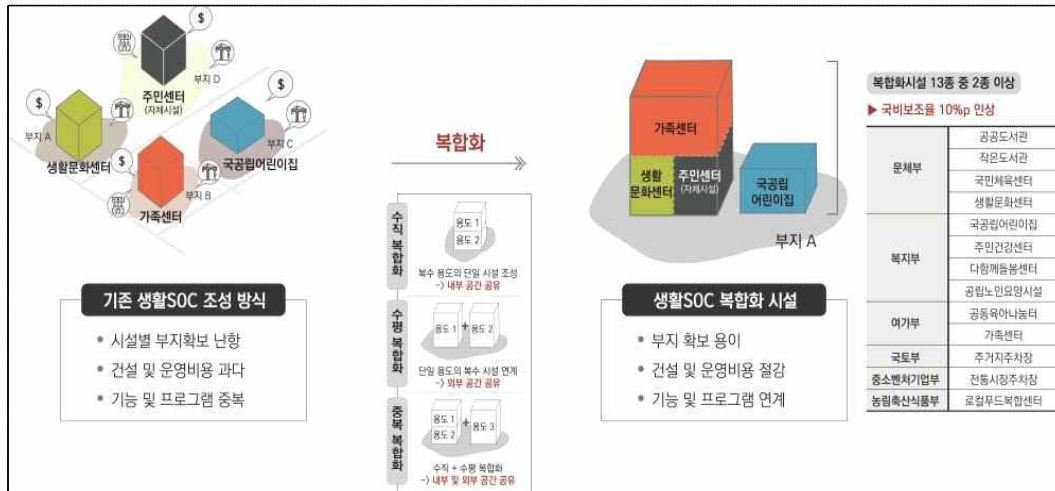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개념

□ (복합화사업의 정의)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사업

○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주민건강센터 등 13종이며, 시설별 국고보조율을 단일시설 대비 10%p 인상*하여 지원

* (예시) 주거지주차장의 국고보조율은 50%이나,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60% 지원

□ 복합화사업 개념도



□ 주요 복합화 사례

사업내용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308
규모	• 연면적 21,203㎡(지하1, 지상3)	규모	• 연면적 18,950㎡(지하1, 지상3)
외관		외관	
내용	• 공연장, 보건소, 문화원, 노인의 집, 여성의 집, 야외공연장, 스포츠센터, 인삼 교을도서관 등	내용	•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재원	• 총사업비 310억 원 (국비 97, 도비 17, 군비 175, 기타 21)	재원	• 총사업비 430억 원 (국비 118, 도비 35, 군비 277)

붙임 2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구성현황

(단위: 개, %)

구 분	국조실 생활SOC추진단도(A)		2021년도(B)		계
	시설수	비중	시설수	비중	시설수
생활문화센터	146	20.7%	80	22.3%	226
국민체육센터	99	14.0%	45	12.6%	144
다함께돌봄센터	95	13.5%	44	12.3%	139
작은도서관	87	12.3%	40	11.2%	127
주거지주차장	75	10.6%	40	11.2%	115
공공도서관	73	10.4%	35	9.8%	108
가족센터	61	8.7%	26	7.3%	87
공동육아나눔터	28	4.0%	18	5.0%	46
국공립어린이집	29	4.1%	13	3.6%	42
주민건강센터	12	1.7%	10	2.8%	22
공립노인요양시설 (신규)	-	-	3	0.8%	3
로컬푸드복합센터 (신규)	-	-	3	0.8%	3
전통시장주차장 (신규)	-	-	1	0.3%	1
계	705	100%	358	100%	1,063

〈 시설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붙임 3

복합화사업 선정 목록 (총 149개)

□ 서울(12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중구	신당사거리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기선정)	4,050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생활문화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기선정)	3,504
중랑구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7,400
도봉구	서울창동초등학교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565
노원구	노원구생활SOC -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1,689
은평구	응암정보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805
서대문구	서대문구 북가좌2동 복합청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서대문구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2,437
구로구	구로구 하늘마루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580
금천구	금천구 가족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1,857
서초구	복합복지타운	공립노인요양시설,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9,808
강동구	암사1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428

□ 부산(16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서구	서구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450
동구	수정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영도구	영도구 통삼2동사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62
부산진구	당감복합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950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남구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062
남구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1,062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63
북구	덕천도서관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050
북구	구포1동 행정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800
사하구	감천1동 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00
사하구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2,400
강서구	강서구 통합사회 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2,053
연제구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공도서관(기선정), 주거지주차장	3,960
연제구	‘(가칭) 토곡 문화의 숲’ 건립 생활SOC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802
사상구	삼락 생활SOC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기장군	정관 에듀파크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950

□ 대구(1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달서구	월배노인복합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3,300

□ 인천(10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중구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6,607
중구	(가칭) 하늘1층 학교시설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662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동구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127
남동구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12
남동구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1,532
서구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034
옹진군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학교시설복합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3,000
옹진군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학교시설복합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3,500
서구 (시직접)	검단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212
서구 (시직접)	가좌복합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323

□ 광주(5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동구	광주 동구 동명동 행정복지복합센터	주거지주차장, 주민건강센터	2,760
서구	광주 서구 송당경로당 생활SOC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92
남구	광주 남구 방림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438
북구	광주 북구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195
남구	사직골 생활문화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892

□ 대전(2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중구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062
서구	대전 서구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 울산(2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중구	공공실버주택 일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	1,669
북구	바다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463

□ 세종(1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세종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 경기(18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 드림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5,302
용인시	보정종합복지회관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7,845
용인시	동백종합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7,300
성남시	성남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1,377
성남시	성남시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화성시	남양체육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250
평택시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26
하남시	감일복합청사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335
하남시	감일복합커뮤니티(2단계)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하남시	(가칭)제2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2,351
양주시	양주시 덕정 경기꿈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4,497
이천시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200
구리시	갈매동 복합청사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1,490
안성시	행복어울림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의왕시	레슬레파크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과천시	과천시 행복더불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690
여주시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2,700
광주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 강원(13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원주시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원주시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기선정)	1,928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삼척시	교통주차타워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기선정)	2,872
삼척시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2,100
삼척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712
홍천군	남면권역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450
영월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정선군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철원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050
화천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3,900
양구군	행복나눔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인제군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925
양양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 충북(12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청주시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250
충주시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50
제천시	생생플러스	공공도서관, 주민건강센터	4,821
제천시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및 열린 주차장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527
옥천군	생활문화체육건강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7,300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5,850
영동군	황간행복문화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62
증평군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192
진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0
괴산군	송면 복합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312
괴산군	창안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음성군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 충남(6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청양군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계룡시	계룡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4,800
금산군	금산복합생활문화커뮤니티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1,231
예산군	예산 청년 문화, 복지 복합플랫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1,620
부여군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2,750
태안군	안면상상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주차장(기선정)	3,856

□ 전북(13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전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5,112
전주시	예술종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850
전주시	행복씨앗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0
군산시	가족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2,400
군산시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00
남원시	세대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950
남원시	복합형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진안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임실군	오수면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4,140
순창군	셜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1,312
부안군	부안청우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부안군	부안먹거리 힐빙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3,500

□ 전남(13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순천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6,13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736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복합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기선정)	3,907
곡성군	석곡학당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500
구례군	가족복합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기선정), 국민체육센터(기선정), 주거지주차장(기선정)	9,312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5,112
영암군	가족복합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가족센터, 공공도서관(기선정)	3,100
완도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진도군	노인요양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기선정)	4,632
신안군	신안 다목적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850

□ 경북(9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포항시	다원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050
김천시	엄마 좋은 학교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3,200
문경시	문화경서행복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110
의성군	다인면 온누리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100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청도군	청도드림 생활봉사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50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5,000
성주군	성주읍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봉화군	재산면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720
성주군	선남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 경남(13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창원	석전 주민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997
진주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2,593
진주	남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1,020
밀양	삼문동 복합청사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104
거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3,300
거제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양산	(가칭)증산중학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5,240
창녕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고성	고성읍 서부권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3,600
남해	남해 삼동다락 건립사업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1,539
하동	하동군 김양분교 폐교 활용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212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함양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312
거창	거창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1,852

□ 제주(3개)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제주시	애월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국민체육센터(기선정)	3,950
제주시	제주시민회관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9,614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붙임 4

학교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활용 사업 선정 현황

□ 학교시설 복합화

연번	구분	지역명	학교명	사업명	시설명	소관 부처	비고	
1	기존학교	서울 도봉구	창동초	창동초 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2		인천 옹진군	용현남초 자월분교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공도서관	문체부		
3		인천 옹진군	백령중고	백령중고 국민체육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공도서관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4		충북 괴산군	송면중	송면복합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작은도서관	문체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5	신설학교	인천 중구	하늘1중	하늘1중 복합화사업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작은도서관	문체부		
					가족센터	여가부		
					마을교육지원센터 등	자체		
6	경남 양산시	증산중	증산중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공도서관	문체부			
7	폐교	부산 북구	덕천여중 <폐교예정>	덕천도서관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문체부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8		충북 영동군	(舊)황간중	황간행복 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작은도서관	문체부		
9		충남 청양군	(舊)정산중	정산다목적 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통합돌봄센터	자체		
10		폐교	경북	(舊)재산중	재산면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연번	구분	지역명	학교명	사업명	시설명	소관 부처	비고
		봉화군		복합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재산면사무소	자체	
					다목적복지회관	자체	
11	경남 창녕군	(舊)영산고	영산국민체육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12	경남 하동군	(舊)노량초 김양분교	김양분교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작은도서관	문체부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체험형관광시설	자체		

□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연번	지역명	기본사업	사업명	시설명	소관 부처	복합화 유형
1	경기 과천시	유형통합 공공임대 (610호)	행복 더불어센터 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임대주택+생활SOC 수평복합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노인복지센터	자체	
2	경기 평택시	행복주택 (357호)	늘참 돌봄센터 복합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복지부	임대주택+생활SOC 중복복합(수평+수직)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3	전북 전주시	행복주택 (130호)	행복 씨앗센터 복합화사업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임대주택+생활SOC 수직복합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4. 2021년도 선정 생활SOC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서 표준(안)

제2021-0호

○○○○도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하 “복합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와 ○○시·○○군·○○군·○○군·○○군(이하 “지자체”라 한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 복합화사업”이 사업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협약서와 부속서(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협력한다.

1. 정부의 역할

가.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한다.

나.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시설 복합

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국유지 및 공공위탁개발 활용,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지자체의 역할

가. 지자체는 복합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혁신 공간으로 조성·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나. 지자체는 사업선정 조건에 제시된 보완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생활SOC 복합화사업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총괄부서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3.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사항

가. 정부와 지자체는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을 확보한다.

나.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에 사업별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절차로써 재정의 집행을 관리하되, 국무조정실과 ○○○도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초지자체의 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초지자체는 이에 협력한다.

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미세먼지와 황사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주변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등을 통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

라.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곳곳에서 모든 주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합화사업과 지역단위 지원사업(지역수요맞

춤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도시, 농촌], 어촌뉴딜 30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연계·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해지)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생활 SOC 정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사업계획서)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협약체결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2021년 1월 일

정 부		지자체(광역, 기초)	
국무조정실장	(서명)	○○○도지사	(서명)
기획재정부장관	(서명)	○○시장	(서명)
교육부장관	(서명)	○○군수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서명)	○○군수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명)	○○군수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명)	○○군수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서명)		
여성가족부장관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서명)		

○○○○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

(단위: 백만 원)

연번	시군구	사업명	복합대상시설	사업비			총괄 부서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개)							
1	○○시	○○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18,030	4,800	13,230	
2	○○군	○○복합생활문화커뮤니티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10,188	1,231	8,957	
3	○○군	○○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26,716	2,750	23,966	
4	○○군	○○ 청년 문화, 복지 복합플랫폼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3,353	1,620	1,733	
5	○○군	○○ 다목적 복지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8,168	2,100	6,068	
6	○○군	○○상상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주차장(기선정)	8,258	3,856	4,402	

1. ○○군 ○○다목적복지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사업위치	○○○도 ○○군 ○○면 ○○리 55 일원 구)○○중학교						
규모	연면적 4,600㎡(지상3층)						
주요 사업내용	구분	시 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가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프로그램실, 운동사업실), 주민사랑방		2021~2022		
	나	통합돌봄센터	통합상담소, 영유아 놀이공간, 초등 돌봄공간, 노인 돌봄공간, 교육장		2021~2022		
	다	생활문화센터	주민공동체공간, 주민자율 공간(동아리 활동공간,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2021~2022		
	라	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탈의실, 샤워실, 관리실 등		2021~2022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시설명	사업비	연도별			부처명	지자체 담당부서
			계	'21년	'22년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2,95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군 (보건의료원)
		국비	916				
		지방비	2,036				
	생활문화센터	계	2,9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군 (문화체육관광과)
		국비	720				
		지방비	2,232				
	체육센터	계	2,8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군 (문화체육관광과)
국비		1,000					
지방비		1,800					
계	계	8,704			-	<총괄부서> ○○군 (복지정책과)	
	국비	2,636					
	지방비	6,068					
주요 사업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01.) 생활SOC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복합화사업 관리 ○ ('21. 03.) ○○○도 ○○교육지원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 ('21. 09.) 설계 완료 ○ ('21. 10.) 건립공사 착공 ○ ('22. 12.)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시설별 특수사항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 ○○○도 균형발전사업(예정)으로 통합돌봄센터 조성 ○ 보완사항 및 조치계획(사업선정 조건 등 이행사항) - (보완사항) 기본설계 시 타 국고보조사업과 생활SOC 세부사업계획과의 차별화 및 연계 - (조치계획) ○○○ 						

5.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서식 수정(안)

1 복합화사업 총괄표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사업 총괄표

2021. 00. 00.

○○시·도

(단위: 백만원, m²)

번호	시군구	복합화 사업명	중요정책 반영여부*	시설사업내용**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연면적
1				1. 어린이집 2. 주민건강센터 3. 작은도서관 4. 타 국고보조사업 5. 지자체사업				
2								
3								
4								
5								
6								
7								

* 중요정책 반영여부: ①학교복합화, ②공공임대주택 복합화, ③국유지 활용 중 해당 사항 명기

** 13종 복합화 대상사업 외에 타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자체 시설사업 모두 기재

2 **복합화사업 신청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서
- 00시 0000 생활SOC복합화 사업 -

2021. 00. 00.

○○시 · 군 · 구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신축/리모델링* (* 증개축 포함)					
사업 위치	▸ ○○시 ○○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복합화 대상 시설	구 분	시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재활보건의사업, 금연사업 등	'22~'23	
	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다함께돌봄센터	'22~'23	
	다	작은영화관(자체)	영화관, 휴게공간	'22~'23	
	라				
사업예산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B)		기타(C)
	백만원	백만원	시·도비 백만원	시군구비 백만원	백만원
자치단체명			총괄부서		
담당자 (직급/직책)			연락처 / 이메일		

위와 같이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시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 ① 사업개요서, ② 자체검토서(증빙자료 포함), ③ 시설별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서

사업명		자치단체명						
사업개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예시) ▶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소규모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건립 ▶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개발 추진방식		▶ 공공기관 위탁개발, 자체 개발 등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등 서술(위탁 개발의 경우, 위탁기관 및 협의결과 등 명시)						
기존사업계획 연계 추진여부		▶ 기존 복합화단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내용 기재						
(단위: 백만원)								
총 소요예산	구분	기 확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지방비	국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단위: 백만원)								
시설별 예산내역	시설명	사업비	연도별			소관 부처명	지자체 담당부서	
			계	' 22년	' 23년			' 24년
	주민건강센터 (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2,95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군 (보건의료원)
		국비	916					
		지방비	2,036					
	생활문화센터	계	2,9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군 (문화체육 관광과)
		국비	720					
		지방비	2,232					
	체육센터	계	2,8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군 (문화체육 관광과)
		국비	1,000					
지방비		1,800						
계	계	8,704				-	<총괄부서> ○○군 (복지정책과)	
	국비	2,636						
	지방비	6,068						
※ 예산 내역은 복합화사업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작성								

사업 규모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근거 등
	00시설	00실			
		소계			
	00시설	00실			
		소계			
	00시설	00실			
		소계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기계·전기실, 창고 등				
주차공간	지하 등 실내 주차장				
합 계					-
※ 각 시설별로 주요시설 면적과 전체 면적을 기입 ※ 공용공간은 전체 시설면적의 30% 이상 확보를 권장하며, 주차공간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 (실내 주차장 개략 면적 : 주차대수×35㎡/대)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__㎡, 건축면적 __㎡, 건축연면적 __㎡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 (__ 층, 연면적 __㎡)				
대상지 주소	○○시 ○○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 진	위치도				
	대상지(리모델링인 경우 기존시설) 전경				
	(Blank space for photos)				

3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생활SOC 복합화사업 자체검토서
- 00시 0000 생활SOC 복합화사업 -

2021. 00. 00.

○○시 · 군 · 구

생활 SOC복합화사업 자체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YES	NO	
사업의 실현가능 성	부지확보 여부	70% 이상의 부지확보율을 달성하였는가?	✓	
		사유지가 있는 경우,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는가? <i>(※ 내부방침 결정, 의회보고, 예산편성 등)</i>	✓	
		부지 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시설이 없거나 철거 등을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해당 부지의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하여 시설 건립을 위한 행위제한 사항이 없거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건폐율 총당율은 90% 미만인가?	✓	
		용적률 총당률은 90% 미만인가?	✓	
	재원 조달 가능성	지자체 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는가? <i>(※ 방침결정, 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반영, 의회보고 등)</i> <i>(※ 지자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YES로 체크)</i>	✓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선정이 확정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선정 확정이 가능한가? <i>(※ 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YES로 체크)</i>	✓	
		즉시 착공 가능성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결정 완료가 가능한가?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되었거나 '22년 상반기 내 완료 가능한가?	✓	
		'22년 내 설계용역 착수가 가능한가?	✓	
	입지선정 의 적정성	유사 사업계획	부지 주변에 유사 사업계획이 없거나, 있는 경우 차별화 및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입지 적정성		생활SOC 분석 툫킷 필수 적용시설이 없거나, 있는 경우 제공된 입지분석틀을 활용하여 입지의 효율성(형평성)을 검토하였는가?	✓	
		생활SOC 분석 툫킷 필수 적용 이외시설이 없거나, 있는 경우 반경 5km 이내 유사 시설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접근성		보행 접근성은 양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거버넌스 및 운영계획 의 적정성	주민 참여	핵심적인 주민참여 주체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추진체계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전문성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등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운영 및 관리계획	시설 건립 후 시설별 운영주체, 주민 협의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는가?	✓	
시설운영비를 추산하고 운영비 확보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I. 사업의 실현가능성

1. 부지확보 현황

① 부지확보 여부

부지확보 여부	[확보 / 부분확보 / 미확보]		필요 부지면적	_____ m ²
			부지확보 면적(비율)	_____ m ² (_____ %)
			미확보 필지수	
유형별 부지 확보 ¹⁾	지자체 부지			_____ m ² (_____ %)
	국·공유지	[국유지 / 타 지자체 공유지]		_____ m ² (_____ %)
	학교부지	[기존학교 / 신설학교 / 폐교]		_____ m ² (_____ %)
	공공임대주택			_____ m ² (_____ %)
	사유지	_____ m ² (_____ %)	기 타	_____ m ² (_____ %)
	※ 유형별 확보(부분확보 포함)된 면적만을 작성하고, 사용 예정부지 확보 및 부분확보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확보 : 해당부지 소유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및 계약이 완료되어 즉시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 ※증빙자료 : (국·공유지, 학교부지) 임대 및 사용 협의문서, MOU체결 등, (사유지) 소유권 등기 사본, 토지매매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기존 시설부지) 임대 및 사용 협의문서 및 소유권 등기 등 2) 부분확보 : 대상부지 일부만 확보(70% 이상 100% 미만 확보)하였거나 사업 선정 직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건물 신축이 가능한 상태 ※증빙자료 : (국·공유지, 학교부지) 임대·사용협의문서, MOU체결 등, (사유지) 매매계약서 등 3) 미확보 : 확보한 부지가 전체 필요부지의 70% 미만이거나, 미확보 부지가 상속 등 협의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부지 확보 계획만을 가지고 있어 대상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즉시 착공이 불가한 상태			
부지확보 계획	※ 부지 부분확보 또는 미확보 시 작성 (확보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매입, 임대 및 협약 등 현재 진행 단계, 추진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예정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기존시설 ¹⁾ 유무	[해당/미해당]	기존시설 철거 등 필요 여부	[필요/불필요]	
기존시설 철거 등 계획	※ 기존시설 철거·리모델링 등 필요 시 작성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기존시설 명칭·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등), 철거 및 리모델링 범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기존시설 :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조성되는 부지 내에 기 조성된 건축물 등

② 부지 특성

지역·지구·구역 ¹⁾	○○○○ 지역 / ○○○○ 지구 / ○○○○ 구역		
행위제한 여부	[해당/미해당]		
행위제한 해당 시 대응방안	※ 행위제한 여부 해당 시 작성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한 건축물 용도, 조건제한·예외사항 등 행위제한 해당사항 기재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은 3-①에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허용 건폐율	_____ %	허용 용적률	_____ %
예상 건폐율	_____ %	예상 용적률	_____ %
건폐율 총당률 ²⁾	_____ %	용적률 총당률 ³⁾	_____ %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ParcelRestrictListExtFrame.jsp>) 참조

2) 건폐율 총당률 : 예상 건폐율(예상 건축면적/부지면적) ÷ 허용 건폐율
 (예상 건폐율 40%(예상 건축면적 400㎡, 부지면적 1,000㎡), 허용 건폐율 50%인 A 시설의 건폐율 총당률 = 80%)

3) 용적률 총당률 : 예상 용적률(예상 연면적/부지면적) ÷ 허용 용적률
 (예상 용적률 200%(예상 연면적 5,000㎡, 부지면적 2,500㎡) 허용 용적률 250%인 B 시설의 용적률 총당률 = 80%)

2. 재원 조달 가능성(지방비, 타 국고보조사업비)

① 지자체사업 포함 여부 ※ 지자체 사업 포함 시 작성 (미포함 시 "공란"으로 표기)

지자체 사업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지자체 사업 전체 사업비				_____ 백만원
	세부 내용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설명) ¹⁾	사업명 ^①					
연도		기 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전절차 이행 ²⁾		내부방침	중기재정계획 반영	의회보고	타당성조사	예산편성	
		○	○	○			
사업 내용		※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사업명 ^②							
연도		기 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부방침	중기재정계획반영	의회보고	타당성조사	예산편성
		○	○	○		
사업 내용	※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 1) 지자체 사업을 3개 이상 포함할 경우, 해당 칸을 추가하여 작성
- 2) 완료된 사항에 ○ 표기

②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여부 ※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시 작성 (미포함 시 “공란”으로 표기) 하며, 사업계획서 등 증빙

타 국고보조사업 ¹⁾ 포함 여부	[포함/미포함]	소관 부처				
타 국고보조사업 선정 여부	[선정/미선정]	타 국고보조사업 전체 사업비 _____ 백만원				
세부 내용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설명)	사업명①					
	연도	기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 내용	※ 타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 범위 등)				
	사업명②					
	연도	기확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 내용	※ 타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작성 (주요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 범위 등)				

- 1) 타 국고보조사업 : 생활SOC 복합화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국고보조를 통해 함께 건립하는 사업

3. 즉시 착공 가능성

① 행정절차 이행 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결정 예정 시기	'○○년 ○○월 (결정 시 "공란"으로 표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미결]	심사 완료(예정) 시기	'○○년 ○○월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사전절차 이행 실적	※ 기본계획 또는 건축기획 수립 타당성조사 시행 등 사전절차(법정비 법정 절차)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②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p>※ 복합화사업 신청 전까지 이행한 기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을 기재 (아래 예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00.) ○○○ 사업 추진계획 방침 ○ ('19. 00.)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 ('20. 00.)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 00.) 제○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1. 0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 ('21. 04.)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 ('21. 0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 ('22.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2. 00.) 지방비 확보 완료 ○ ('22. 00.) 건축기획 완료 ○ ('22. 0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2. 00.) 건축 설계공모 완료 ○ ('23. 00.) 건축 설계 완료 ○ ('23. 00.) 건립공사 착공 ○ ('25. 00.)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
---------	---

③ 그 밖의 민원 등 장애요인 및 대응계획

민원 등 장애요인	※ 사업 착공에 있어 민원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재
대응계획	※ 민원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기재

II. 입지선정의 적정성

1. 유사 사업계획 중복 여부

※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5km 내 확정 또는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 해당여부 검토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업내용 별첨)

유사 사업 계획 중복	해당 여부	[해당/미해당]	유사 사업명 및 주요 기능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
	유사계획 확정 여부	[확정/신청중/미해당]	중복 기능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
	차별화·연계 방안 등	※ 유사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생활SOC 복합화사업과의 차별화 또는 연계방 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지역개발사업 예시>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 *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13조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 「관광진흥법」제54조의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2. 입지 적정성 분석

① 생활SOC 분석 툴킷 필수 적용시설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가 포함된 경우





분석 결과 종합	시설유형	국민 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 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해당여부	○					
	효율성 분석 결과	1~5 등급					

	형평성 분석 결과 ¹⁾	1~5 등급					
보완대책 및	<p>※ 효율성 분석 결과 및 형평성 분석 결과가 모두 3등급 이하인 경우 작성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p> <p>※ 입지 선정의 불가피성 및 보완대책을 상세히 기술 (효율성 분석 결과가 5등급일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불가)</p>						
분석결과-1 ¹⁾							분석대상시설
							국민체육센터
							분석방식
							[효율성 / 형평성]
							입지적정등급 (5등급 기준)
							○ 등급
							 복합화 시설 후보  기존 시설 위치 등급도  1  2  3  4  5
분석결과-2 ¹⁾							분석대상시설
							공공도서관
							분석방식
							[효율성 / 형평성]
							입지적정등급 (5등급 기준)
							○ 등급
							 복합화 시설 후보  기존 시설 위치 등급도  1  2  3  4  5

- 1) 형평성 분석은 효율성 분석 결과가 3~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효율성 분석 결과가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 실시)
- 2) 복합화 시설 부지, 기존 시설 위치, 등급도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개별시설별로** 제출

② 생활SOC 분석 툃킷 필수 적용 이외 시설

※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포함된 경우

분석 결과 종합	시설유형	작은 도서관	생활 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공동육아 나눔터	공립노인 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 복합센터
	해당여부	○						
	유사 시설 수							
보완대책 등	※ 반경 5km 이내 기존 또는 추진 중인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작성 (미해당 시 "공란"으로 표기) ※ 유사시설이 있음에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필요한 이유(차별화연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분석결과- 1 ¹⁾								유사시설-1
								시설명
								시설주소
								유사시설-2
								시설명
								시설주소
								 복합화 시설 후보지  기존 시설 위치
분석결과- 2 ¹⁾								유사시설-1
								시설명
								시설주소
								유사시설-2
								시설명
								시설주소
								 복합화 시설 후보지  기존 시설 위치

1) 후보지 인근(반경 5km 이내)에 기존 또는 추진 중인 유사시설 여부를 개별시설별로 제출 (후보지를 중심으로 2km, 5km의 동심원으로 표기)

3. 이용수요 및 접근성

주 이용대상		※ 시설의 잠정적인 이용 대상에 대한 서술 ※ 시설별 계획 중 이용대상 자료 활용가능		
접근성	보행 접근성	[양호/보완필요]	현황	※ 주변 보행로 조성 유무, 횡단보도의 위치 등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보완필요]	현황	※ 지하철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장으로부터 00m 이내
	보완계획	※ 접근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도로 확폭,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정류장신성 등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IV. 거버넌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 거버넌스

주민 참여	핵심 참여주체	※ 시설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주로 참여하는 주민주체 명기 (부녀회·노인회 등 기존 지역조직 활용 또는 주민참여단 구성 등)		
	지원주체	※ 주민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 역량강화, 공간계획 반영 등을 수행할 지원주체 및 역할 명기 (지자체 내 총괄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등)		
	단계별 참여방식	기획 단계	※ 도입시설·입지 검토 등 기획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실적 및 향후 계획	
		설계 단계	※ 워크숍·설명회 개최 등 설계단계에서의 주민참여 및 의견반영 계획 기술	
		운영 단계	※ 프로그램 발굴 및 평가, 공간 직접 운영 등 운영단계에서의 주민참여 계획 기술	

	총괄 부서	[부서명]	해당 총괄부서 선정 사유	
추진 체계	관련 부서	※ 도입 시설별 주무부서, 건축 관련 부서·기관 등		
	유관 기관	※ 도입 시설별 관련 단체 등		
	전문성 확보 방안	※ 총괄·공공건축가 활용, 건축 관련 부서·기관 지원 등 (지원주체 및 역할, 활용방안 등을 기술)		
	수요파악 등 사전준비 실적	※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한 관련 주체와의 협의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사항을 명기 (학교시설 복합화,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의 경우 기존 시설 관련 주체와의 협의내용 포함)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계획	※ 사업 선정 후 기획, 설계, 시공, 운영과정에서의 관련주체와의 협의 및 의사결정 등을 위한 추진계획 기술		
	추진 체계도	※ 사업기획부터 준공까지의 사업 추진체계를 도식화 (총괄부서·협력부서·유관기관, 주민 및 지역조직, 전문가 등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식)		

2. 운영계획

전체 시설관리 방식	[직영/위탁]	전체 시설관리 주체	
도입 시설별 운영 주체	※ 도입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주체 명기		
주민 협의체 및 유관 기관	※ 전체 시설 또는 도입 시설별 관련 주민협의체 및 유관 기관 명기		
타 지자체와의 공동이용	※ 인접한 타 지자체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 기재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관련 지자체간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내용 제출		
학생-지역주민 공동이용	※ 인근 학교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 기재 (미해당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관련 교육청(또는 학교)과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내용 또는 운영방안 제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체계도	※ 복합화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체계를 도식화 (관리주체·운영주체·주민조직·유관기관 등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식)		
연간 소요 시설 관리·운영비 및 운영인력	시설명	운영비용	운영인력
	00 시설	_____ 원	_____ 명
	00 시설	_____ 원	_____ 명
	00 시설	_____ 원	_____ 명
	공용부문	_____ 원	_____ 명
합계	_____ 원	_____ 명	
운영 예산 집행 및 확보계획	※ 시설 관리·운영 소요 비용(운영인력 인건비 포함)을 고려한 운영예산 집행 및 확보계획 제시 (시설 이용료 징구, 수익시설·사업 등 운영비 절감 방안 포함)		